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22. 9.



2022 조세특례 심층평가(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2022.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이환웅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강동익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전주용 동국대학교 교수

2022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김 재 진

요 약

1. 도입 배경 및 제도 개요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 도입
 - 1965년부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세율 10%)로 운영되었던 제도가 당기순이익 기준 과세로 변경(1998. 12. 28.)되고 이후 일부 항목의 세무조정 추가(2000. 12. 29., 2013. 1. 1.) 등 제도 변화를 거쳐 현 제도로 발전
 - 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2단계 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감경하는 구조를 갖고 있음
 - 우선 (i) 세무조정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조정 관련 회계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ii)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낮춤

2. 타당성 분석

- 전병목·류덕현(2017) 및 전병목·권성준(2020)은 조세특례대상 조합법인의 설립 취지나 실질적 사업내용 등이 관련 법률 규정에서 기술한 내용에만 의거할 경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제시
 - 이들은 또한 개별 조합법인 설립법을 보더라도 상호부조가 아닌 공익사업 수행이 조합법인의 주된 설립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
- 반면, 조합법인은 영리성 사업에 마음대로 진입할 수 없고, 개별 설립법에서 규정된 분야에서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 공익성을 강제받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음

- 현재 신협, 새마을금고 등 다수 조합법인은 돌봄이나 교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 교육 및 지도 사업, 산책길 정비 등의 소규모 인프라 개선 등과 같은 공공재 공급 등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사실
- 다만, 주로 교육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 중 “공익성을 인정받고 비용처리가 되는 사업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가?” 또한 중요한 문제
 - 일반 기업과는 달리, 교육사업 등 협동조합의 공익성 사업들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가 되며, 이는 2단계로 이루어지는 조합법인 과세특례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임에도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배당과 대비되며,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무엇보다도 지원 대상으로서의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경제적으로는 조합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조합원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며 이는 특히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향후 조합 활동에 있어서 큰 문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 조합의 설립취지만을 고려한다면 준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은 사실 비조합원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이 보다 타당함
 - 그러나, 비조합원 대상 사업 부분이 1/2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 제약하에서는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등의 문제로 인하여 조합원 수가 감소할 경우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으며, 준조합원의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조합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
- 한편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 수준은, 국내 다른 공익단체와의 비교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조합원에 대한 지원 수준은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에서 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활동결과에 따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때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함
 -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세율 적용 이외에도 당기순이익 과세를 통해 세무 조정비용을 줄여주는 2단계 방식으로 조합법인 자체를 지원
 - 조합원에 대한 지원 수준은 개별 조합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 명확한 비교는 어려움

- 외국은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형태이므로, 법인세율 수준의 지원(즉 법인단계 세부담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이 이루어짐
- 반면 우리나라는 낮은 법인세율 적용으로 법인세 부담이 남아 있으며, 배당 및 이자에 대해 일정 수준까지 개인소득세 부담을 면제해 주고 있는 형태

□ 따라서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목적으로 조세특례제도가 운영된다면, 조합원 외 대상 사업에서 얻는 이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를 적용하고,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 수준을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한 타 기관에 대한 지원과 비슷하게 유지할 필요

- 비조합원 대상 사업 크기를 1/2로 제한한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이로 인한 문제점(인구 감소로 인한 조합 지속 불가능성 문제를 준조합원 확대를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타협한 방안
- 비조합원은 물론 준조합원 대상 사업의 경우도 조합법인의 설립취지를 감안한다면 일반 영리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일반기업에 준하여 회계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
- 또한, 현재의 조합법인 법인세 부과방식은 혜택이 유사 규모의 기업과 대비하면 역진적(즉, 조합법인이 클수록 유사규모 기업 대비 받는 혜택의 크기도 증가)으로 제공되는 만큼, 이를 반영하는 조정이라는 점에서 타당

□ 보다 장기적으로는 (세무)회계 분리를 통하여 현행 순이익 과세 기본에서 중소기업 등과 유사한 과세 기준을 산출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성에 대하여 제고할 동기를 부여할 필요

- 다만, 회계 분리가 어려우며 이루어진다고 해서 수행비용(complicance cost)에 비해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공익사업 비용 전액이 아닌 적정 비율(가령 90%)에 대해서만 비용 처리를 인정하는 방식을 도입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을 제안

□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에 대한 지원 목적이 더 크다면 직접적이며 정책 효과를 유도하기에 더 바람직한,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으로 단순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현 조합법인 법인세 감면을 통한 조합원 지원은 조합의 이용실적 배당금 결정 관행 및 방식(이용금액별 vs 납입금액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 필요하다면 비조합원에 대한 조세혜택을 이 부분에서 제공할 수도 있음

3. 효과성 분석

- 본 분석에서는 전병목·류덕현(2017)과 유사하게 조합법인들의 활동이 공익적¹⁾이라는 전제하에 공익적 활동의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Input(자본)을 성과지표로 정의함
 - 따라서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지원이 지원받은 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시켰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효과성 평가의 1차목표로 함
 - 이러한 접근방식은 조합법인의 활동이 공익적이라는 전제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전제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완적으로 조합법인의 성과 변화가 조합원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자 함
 - 단 정량적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합법인의 경영성과 개선 등의 변화가 조합원의 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최종 정책 대상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조합법인의 경영성과 변화로 인한 조합원에 끼친 혜택에 대한 분석을 수행
- 본 분석에서는 법인 고유한 특성이 과세특례 효과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을 사용하였으며 과세특례의 세율 인상 이벤트가 조합법인의 성과에 끼친 영향을 분석함
 - 전병목·권성준(2020)도 관측가능하지 않는 특성이 효과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에 기반한 이벤트 스터디 분석을 보조적으로 수행
 - 단, 비조합법인이 효과추정을 위한 비교대상(통제집단)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편의없는 식별을 위한 전제조건인 공통추세 가정이 성립하지 않았을 개연성이 존재함

1) 공익성은 타당성 분석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의됨

- 본 연구는 전병목·권성준(2020)과 달리 조합법인 중 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조합법인을 비교대상으로 활용하여 세율 인상에 따른 법인 성과를 분석함

가. 세율 인상이 조합법인의 성과에 미친 효과

- 2015년부터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세율이 기존 9% 단일세율에서 과세표준 20억원을 초과하는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12%로 인상하는 2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함
 -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세율 인상이 조합법인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조합법인에 제공되는 과세특례가 조합법인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고자 함
- 본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합법인 중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조합법인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세율 인상에 따른 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 본 분석에서 가장 선호하는 모형에서는 3년(2012~2014년) 평균 과세표준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조합법인을 통제집단으로, 3년 평균 과세표준금액이 25억원 이상인 조합법인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함
 - 모형에 따라 광역 고정효과 및 법인유형 고정효과를 추가로 통제함
- (추정결과1: 수입금액의 변화) 추정 결과, 과세표준 2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악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음에도 추정된 추정치 -0.04 를 해석하자면 2014년 법인세율 인상은 수입금액을 4%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 가능
 - 처치집단의 2014년 평균수입금액이 약 525억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법인세 인상에 따른 2016년 수입금액의 감소는 21억원에 불과

<표 1> 법인세율 인상이 성과지표에 끼친 영향

	주 결과			플라시보 결과		
	2014년과 2016년 사이의 변화			2012년과 2014년 사이의 변화		
	(1)	(2)	(3)	(4)	(5)	(6)
가. 수입금액의 변화						
처치 여부	-0.04	-0.04	-0.04	-0.04	-0.04	-0.04
표준오차	(0.07)	(0.07)	(0.07)	(0.08)	(0.08)	(0.08)
관측치	2634	2634	2634	2737	2737	2737
나.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변화						
처치 여부	0.24	0.12	-0.21	-0.11	-0.13	-0.38
표준오차	(0.35)	(0.35)	(0.36)	(0.33)	(0.33)	(0.35)
관측치	2630	2630	2630	2732	2732	2732
다. 산출세액의 변화						
처치 여부	-0.09	-0.12	-0.09	-0.39*	-0.35*	-0.31
표준오차	(0.22)	(0.22)	(0.23)	(0.20)	(0.21)	(0.22)
관측치	2069	2069	2069	2121	2121	2121
처치 여부	Y	Y	Y	Y	Y	Y
지역 고정효과		Y	Y		Y	Y
법인유형 고정효과			Y			Y

주: 통계적 유의성은 다음과 같음. *** 1%, ** 5%, * 10%
 자료: 국세청 마이크로조사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 (추정결과2: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변화)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법인세 인상에 따른 조합법인의 성과 변화를 추정한 결과, 모형에 따라 당기순손익의 변화는 최소 -0.21에서 최대 0.24로 추정되었으나 모든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았음
- (추정결과3: 산출세액의 변화) 법인세 인상에 따른 조합법인의 세수부담의 증가는 법인세율의 변화에 따른 효과와 당기순손익의 변화에 따른 효과로 분해해서 생각할 수 있음
 - 법인세율의 변화에 따른 산출세액의 증가 가능성은 당기순손익의 변화에 따라 실제로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 있음
 -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에 따라 산출세액의 변화는 최소 -0.12에서 최대 -0.09로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나. 조합법인의 성과 변화가 조합원에게 미치는 효과 분석

- (설문조사) 조합법인의 경영성과 개선이 조합원의 복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한 조합법인과 조합원의 인식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함
- 조사결과, 조합법인과 조합원 모두 조합법인의 매출 증대가 혜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만약 조합법인 조세특례제도가 조합법인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조합원의 혜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함
 - 또한 조합 설립 및 운영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1, 2순위로 선택하게 한 후 응답을 종합한 결과, 조합 담당자의 경우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72.0%), ‘조합원 혜택의 강화(경영성과와 별개)’(68.0%), ‘비용 절감 및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30.0%), ‘영업이익 등의 분배 비중 및 금액 증대’(24.0%) 순으로 응답함
 - 조합원에게 조합이 설립 및 운영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1, 2순위로 선택하게 한 후 응답을 종합한 결과, ‘조합원 혜택의 강화(경영성과와 별개)’(65.3%),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62.3%), ‘비용 절감 및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43.7%) 순으로 응답함
 - 즉, 조합원의 경우 경영성과와 별개로 조합원 혜택의 강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 만약 매출액의 증대가 자연스럽게 조합원의 혜택 강화로 이어진다면 매출액 증대를 조합의 설립목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우선시되는 것으로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이러한 응답결과는 매출액 증대가 자연스레 조합원의 혜택의 증대로 이어진다는 앞선 응답결과와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응답을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실증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은 조합법인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²⁾ 조세특례제도가 조합원들의 복리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2) 물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폐지에 따른 조합법인의 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닌 법인세인하 정도의 변화가 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 그러므로 만약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에 대한 지원 목적이 더 크다면 적절한 혜택 제공이 가능한,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 등으로 단순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4.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에 대한 지원 목적이 더 크다면 직접적이며 정책효과를 유도하기에 더 바람직한,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으로 단순화할 필요
- 만약 현재와 같이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한다면,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 투명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음
 - 조합원 외 대상 사업에서 얻는 이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를 적용하고,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 수준을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한 타 기관에 대한 지원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세무회계 분리를 통하여 현행 순이익 과세 기본에서 중소기업 등과 유사한 과세 기준을 산출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성에 대하여 제고할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만약, 단기적으로 당기순이익 과세 폐지가 어렵다면 차선택으로 다음 두 가지 방향의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음
 - 세무조정 항목들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회계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자산 평가이익의 익금불산입 항목의 편입을 고려할 수 있음
 -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 관련 지원의 축소 혹은 배제
 - 중소기업 등 다른 법인과의 과세 형평성의 고려가 필요
 - 현 세율구조하에서 큰 규모의 조합법인은 작은 법인과 비교해서 세율 인하 혜택이 역진적으로 증가함[그림 III-2]
 - 실증분석 결과 과세표준 20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조합법인에 대한 세율 인상이 법인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음

목 차

I. 서론	15
II. 제도 운영 현황	21
1.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23
가. 제도 개요	23
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연혁	26
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현황	28
2. 해외 사례	56
가. 미국	56
나. 일본	57
다. 영국	58
라. 스페인	58
마. 독일	59
바. 프랑스	60
사. 이탈리아	61
III. 타당성 분석	81
1.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83
가.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구조	83
나.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및 규모	87
2. 연구 목적 및 방법	87
3. 선행연구 검토	88
4. 정책목적 및 대상자 설정의 타당성	89
가. 법률적 검토	91
나. 경제적 검토	92

다. 조합법인별 공익적 목적 수행 여부 및 구성원 자격요건과 지원 대상의 연계 정도 평가	93
라. 정리	97
5. 정책수단 적절성	98
가. 공익적 활동 지원수단	98
나. 조합원에 대한 지원수단	99
6. 지원 수준의 적절성	101
가. 공익적 활동 및 조합원 지원수단	101
나. 정리 및 제언	102
7.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103
8. 정리 및 제언	105
IV. 효과성 분석	107
1. 세울 인상이 조합법인의 성과에 미친 효과	111
가. 식별전략	111
나. 분석표본	113
다. 분석결과	116
라. 설문조사 결과와의 비교	123
2. 조합법인의 성과 변화가 조합원에게 미치는 효과 분석	125
가. 조사개요	125
나. 조사결과	127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133
1. 타당성 분석	135
2. 효과성 분석	137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139
참고문헌	141
부록: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143

표 목 차

<표 II-1> 일반법인과 조합법인의 법인세 세율	23
<표 II-2>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24
<표 II-3> 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25
<표 II-4> 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분	25
<표 II-5>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연혁	27
<표 II-6>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28
<표 II-7>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수	29
<표 II-8>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분포	31
<표 II-9>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분포	33
<표 II-10>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36
<표 II-11>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수입금액	37
<표 II-12>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수입금액	39
<표 II-13> 과세특례 조합법인 중 결손법인 수와 비중	41
<표 II-14>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	43
<표 II-15>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44
<표 II-16>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당기순손익	46
<표 II-17>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2019년 기준) ...	48
<표 II-18>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감면금액(추정)	49
<표 II-19>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감면금액(추정)	51
<표 II-20>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감면금액(추정)	53
<표 II-21>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감면금액(추정)	54
<표 II-22> OECD 회원국들의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비교	62
<표 IV-1> 분석표본의 주요 통제변수 기초통계량(2014년 기준)	115
<표 IV-2> 법인세율 인상이 성과지표에 끼친 영향	116
<표 IV-3> 법인세율 인상이 성과지표에 끼친 영향: 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로 한정	121

<표 IV-4> 응답자 특성: 조합	126
<표 IV-5> 응답자 특성: 조합원	126
<표 IV-6> 경영성과와 수혜 혜택 간의 연관성: 조합법인 유형별	129

그림 목 차

[그림 III-1] 조합법인 과세금액 산출 및 신고 절차	84
[그림 III-2] 과세표준금액에 따른 과세특례의 크기	86
[그림 IV-1] 법인세 인상이 성과지표에 미친 효과의 연도별 변화	119
[그림 VI-2] 과세표준구간 정의에 따른 추정치의 강건성 검정	122
[그림 VI-3] 과세특례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합법인 담당자	123
[그림 VI-4] 과세특례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합원	124
[그림 VI-5] 경영성과와 수혜 혜택 간의 연관성	128
[그림 VI-6] 조합의 설립목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	130

I. 서론



I. 서론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 도입
 - 동 제도는 1965년부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세율 10%)로 운영되었던 제도가 당기순이익 기준 과세로 변경(1998. 12. 28.)되고 이후 일부 항목의 세무조정 추가(2000. 12. 29., 2013. 1. 1.) 등 제도 변화를 거쳐 현 제도로 발전
 - 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

-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합법인들의 납세협력비용과 세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영리법인에 비해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조합법인들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공익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 조합법인의 목적 및 조직화 정도가 영리법인에 비해 취약하며,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어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조합법인의 활동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
 -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특정 조합법인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접대비 등만을 조정한 금액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지원

- 구체적으로 조합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까지 당해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 8개 항목의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을 도출
 - 법인세액은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수익사업 관련 기부금·접대비 손금불산입액 등 8개 항목 세무조정) × (9%, 12%)
 - 세무조정 항목은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는 9%, 초과분은 12% 세율 적용
 - 일반법인의 법인세율 체계는 과세표준 2억원 이하/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3,000억원 초과를 기준으로 10%/20%/ 22%/25%로 구성

- 일반법인에 비해 세율을 적게는 1%p(과표 2억원 이하)에서 8%p(과표 20억원 ~200억원), 최대 13%p(과표 3천억원 초과)까지 우대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8개 유형으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으로 구성

- 유형별로는 금융사업 관련으로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농수산임업 관련으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업연초조합이 포함
- 일반 생산활동 단체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있으며 소비자 단체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존재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의해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의무심층평가 대상

- 조세특례금액이 2021년 3,394억원, 2022년 3,693억원으로 전망되어 의무심층평가 기준인 300억원을 초과하며, 지원액이 큰 제도로 평가 및 개선의 필요성이 있음

□ 본 연구는 조세특례의 타당성 및 효과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운영 제도의 필요성 및 과정의 적절성을 분석하고 제도 개선방안을 포함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우선 제도 운영 현황 및 유사한 해외사례에 대한 검토를 수행함
- 타당성 분석에서는 본 제도의 정책목적을 바탕으로 정부 역할의 적절성, 지원 대상의 적절성, 지원 내용과 방식의 타당성, 제도 간 유사·중복 여부 등을 분석하고자 함
- 특히, 기존의 연구 결과들이 동 조세특례의 여러 문제점들을 제기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법인의 공익성에 대한 배려로 인하여 제도가 유지된 바 있어 타당성 분석을 수행함에 있어 조합법인의 공익성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반영하여 동 제도의 타당성 평가를 수행함

- 효과성 분석에서는 본 제도의 활용도, 정책목표 달성도, 경제적 효과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 제도가 지원 대상인 조합법인의 경영성과에 미친 효과를 분석하였으며, 아울러 이러한 조합법인의 성과 변화가 최종 정책 대상자인 조합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사함

- 위와 같은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향후 방향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를 수행하고자 하며, 정책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의 비효율성 및 문제점과 더불어 잠재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부작용들에 대하여 검토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함

Ⅱ. 제도 운영 현황



II. 제도 운영 현황

1. 제도 개요 및 운영 현황

가. 제도 개요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농·어민 및 서민을 위한 복지사업 등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재원 마련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두 가지 측면에서 조합법인의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
 - 결산재무재표상의 당기순이익을 법인세 과세표준으로 함으로써 복잡한 세무조정 과정으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납세행정 부담을 완화
 - 일반법인에 비해 조합법인에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세 부담을 낮추어 줌
 - 기본 법인세율 10%/20%(2억원~200억원)/22%(200억원~3,000억원)/25% 대신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규모에 따라 9%/12%(20억원 초과) 누진세율 적용

<표 II -1> 일반법인과 조합법인의 법인세 세율

일반법인(A)		조합법인(B)		조합법인 우대 폭(A-B)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우대 폭
~ 2억원	10%	~ 20억원	9%	~ 2억원	1%p
2억원 초과 ~ 200억원	20%			2억원 초과 ~ 200억	8~11%p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22%	20억원 초과	12%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10%p
3,000억원 초과	25%			3,000억원 초과	13%p

자료: 저자 작성

- 법인세 과세특례 지원대상 조합법인은 다음과 같음³⁾

3)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어촌계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 포함)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

□ 당기순이익 과세를 적용하는 조합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당기순이익에 다음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산출⁴⁾

$$\text{당기순이익 과세} = (\text{법인세차감전 당기순이익} + \text{기부금} \cdot \text{접대비 손금불산입액}^*) \times (9\%/12\%)*$$

* 2016년까지 합병하는 경우 2년간 과세표준 40억원 초과 : 12%

- 채무보증 구상채권과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대한 대손금 및 대손충당금전입액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19조의2 제2항 및 제34조 제2항)
- 기부금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4조): 당해 조합법인 등의 설립에 관한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에 직접 수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은 시부인 대상이 되는 기부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손금사항
 - 규정되지 않은 기부금 및 손금한도를 초과한 지정기부금과 법정기부금에 대해 손금불산입

<표 II -2>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

구분	손금산입 한도액
법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지정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주: 기준소득금액은 「법인세법」 제44조, 제46조 및 제46조의5에 따른 양도손익은 제외하고 제24조 제1호에 따른 기부금과 제3항 제1호에 따른 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
 자료: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2호

4)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9조

- 접대비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5조):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으로서 지출증빙을 갖춘 일정 한도 이내의 접대비만 손금산입
 - 접대비 손금한도는 기본한도와 수입금액별 한도를 합한 금액으로, 합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않음

<표 II -3> 법인의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구분	수입금액	적용률
기본한도	-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 사업월수 / 12
수입금액별 한도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500억원	3,000만원 + (수입금액 - 100억원) × 0.2%
	500억원 초과	11,000만원 + (수입금액 - 500억원) × 0.03%

주: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 기본한도의 50% 적용
 자료: 「법인세법」 제25조 제4항

<표 II -4> 접대비와 기부금의 구분

사업과의 관련성	업무관련성	처리방법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자에게 기증	업무관련성 무관	접대비
	있음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에게 기증	없음	기부금

자료: 「법인세법 기본통칙」 제24조 제1항

- 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6조): 「법인세법」상 과다경비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여비, 교육·훈련비, 공동경비 등을 말하며 해당 비용 중 부당하거나 과다하게 지급한 금액은 손금불산입
- 업무무관비용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7조):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산의 취득·관리하는 비용, 그 외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 금액은 손금불산입
-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취득·유지를 위

하여 지출하는 비용을 의미하며,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른 비용중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만 손금산입

-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28조): 세법상 지급이자는 손금산입 항목이지만 취득원가의 적정한 산정, 과도한 차입금 방지 등을 위해 다음의 이자를 손금불산입
 -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이자, 지급받는 자가 불분명한 채권·증권의 이자 또는 할인액, 건설자금이자, 업무와 무관한 자산 및 가지급금에 관한 지급이자 등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지급이자
-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법인세법」 제33조): 퇴직급여충당금은 임원 또는 직원이 실제로 퇴직한 경우에 지급하여야 할 퇴직급여상당액을 사전에 비용으로 배분하여 이를 계상하는 충당부채를 의미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지급한 총급여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

나.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연혁

-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전부개정을 통해 공공법인이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체제로 편입되고, 조합법인에 대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
 - 초기 적용대상은 주로 1차산업 종사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하되,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신협 및 새마을금고를 포괄하고 적용세율 10% 단일세율로 당기순이익 기준과세 시행
 - 이후 2001년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추가되었고, 2016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공동사업법인이 추가됨
 - 당기순이익 과세제도에서 세무조정 항목을 점진적으로 추가하였는데, 2000년 기부금과 접대비에 대한 손금산입 한도를 적용하고, 2013년 6개 항목을 추가 적용하여 현재 8개 항목이 세무조정 항목으로 지정됨

<표 II -5>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연혁

개정일	주요 변경사항
1998년 이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2년 공공법인 비과세 → 법인세 5% 과세 적용 - 1989년 공공법인 3억원 이하 10%, 3억원 초과 5% 과세 적용 - 1991년 공공법인 3억원 이하 17%, 3억원 초과 25% 과세 적용 - 1994년 공공법인 3억원 이하 18%, 3억원 초과 25% 과세 적용 - 1995년 공공법인 1억원 이하 18%, 1억원 초과 25% 과세 적용 - 1996년 공공법인 1억원 이하 16%, 1억원 초과 25% 과세 적용
1998.12.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법인 일반적인 법인세 과세체계로 편입, 조합법인에 대해서만 기업 회계기준에 의한 당기순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함 · 단일 세율: 12% · 대상 조합법인: 신협 및 새마을금고, 농협, 축협, 수협, 중기협동조합, 임업협동조합, 연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인삼협동조합 ※ 별도의 세무조정 없음
2000.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방법 보완: 일부 항목 세무조정(기부금·접대비 한도초과액)
2001.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례대상 확대: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추가
2006.12.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연장: 2006년 12월 31일 → 2009년 12월 31일 - 수협 구조개선을 위한 특례 추가 · 단위수협이 제공받은 재무구조개선자금의 이자수입에 대하여, 해당 이자수입을 비용으로 계상할 때까지 과세이연
2008.12.2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연장: 2009년 12월 31일 → 2012년 12월 31일 - 세율 인하: 12% → 9%
2013.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연장: 2012년 12월 31일 → 2014년 12월 31일 - 과세방법 보완: 세무조정 대상 확대(기부금·접대비+업무무관 경비·과다 경비 등 6개 항목)
2014.12.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연장: 2014년 12월 31일 → 2017년 12월 31일 - 당기순이익 20억원 초과분 세율 인상: 9% → 12%
2015.12.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합병기업에 대한 적용례 추가 · 12%의 누진세율 적용구간 기준금액을 2016.12.31.이전에 조합법인간 합병하는 경우 20억원에서 40억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2016.1.1. 이후 합병하는 경우부터 적용)
2016.12.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공동사업법인 추가
2017.12.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연장: 2017년 12월 31일 → 2020년 12월 31일
2020.12.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적용기한 연장: 2020년 12월 31일 → 2022년 12월 31일

자료: 전병목·류덕현(2017)을 참조하여 저자 작성

다.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현황⁵⁾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2020년 3,271억원으로 이전에 비해 다소 축소되었으나 이후 증가할 것으로 전망

〈표 II -6〉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조세지출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전망)	2022 (전망)
법인세	2,627	3,418	3,250	2,275	2,288	1,616	2,360	2,451	2,964	3,636	3,271	3,394	3,693
계	2,627	3,418	3,250	2,275	2,288	1,616	2,360	2,451	2,964	3,636	3,271	3,394	3,693

자료: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있는 조합법인의 수는 과세연도 2019년 신고기준으로 2,945개
 - 이 중 새마을금고 법인 수가 919개, 31.2% 비중으로 가장 큼
 - 뒤이어 신협과 농협이 각각 29.4%(865개)와 21.3%(628개)의 비중을 차지
 - 수협, 소비자생협의 비중은 1% 미만으로 매우 낮은 수준
 -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하는 기타 조합 법인은 463개로 15.7% 비중

-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는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 추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는 2013년 4,558개에서 2016년 4,397개로 감소하였으며, 2017년 3,184개에서 2019년 2,945개로 감소
 - 2013년 대비 2016년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는 197개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1.2% 감소함
 - 2017년 대비 2019년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는 239개 감소하였으며, 연평균 3.8% 감소함

5) 본 보고서에서는 귀속기준으로 통계자료를 작성하여 신고기준으로 작성된 자료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신고기준으로 작성 시, 각 신고연도별로 2개년 이상의 귀속연도별 자료가 관측되는 법인들이 존재하여 이러한 차이가 발생함

- 2016년 이전 자료는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2017년 이후 자료는 법인세 신고 기준으로 산출되어 직접비교에는 한계가 있음
-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의 감소 추세는 대부분의 조합법인 유형에서 발생
 - 2018년 대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유형들로는 수협, 소비자생활협동조합으로 각각 50.0%, 22.9% 감소하였으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의 감소폭은 각각 2.3%, 0.3%, 4.6%로 상대적으로 작은 수준. 단, 산림조합만 11.1% 증가함
 - 법인 수 기준으로는 새마을금고가 2018년 대비 44개 감소하여 전체 감소량 92개의 47.8%를 차지함
- 기타 조합법인으로 분류된 조합법인 중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법인의 수는 2018년 전년 대비 121개 증가하였고, 2019년에는 23개 감소함

<표 II -7>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 수

(단위: 개,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4,558 (100.0)	4,560 (100.0)	4,502 (100.0)	4,397 (100.0)	3,184 (100.0)	3,037 (100.0)	2,945 (100.0)
농협	779 (17.1)	739 (16.2)	689 (15.3)	671 (15.3)	704 (22.1)	643 (21.2)	628 (21.3)
수협	21 (0.5)	6 (0.1)	6 (0.1)	6 (0.1)	6 (0.2)	6 (0.2)	3 (0.1)
신협	907 (19.9)	891 (19.5)	886 (19.7)	880 (20.0)	869 (27.3)	868 (28.6)	865 (29.4)
새마을금고	1,084 (23.8)	1,170 (25.7)	1,131 (25.1)	1,094 (24.9)	1,152 (36.2)	963 (31.7)	919 (31.2)
산림조합	70 (1.5)	52 (1.1)	52 (1.2)	37 (0.8)	44 (1.4)	36 (1.2)	40 (1.4)
소비자생활협	58 (1.3)	42 (0.9)	35 (0.8)	38 (0.9)	44 (1.4)	35 (1.2)	27 (0.9)
기타 조합법인	1,639 (36.0)	1,660 (36.4)	1,703 (37.8)	1,671 (38.0)	365 (11.5)	486 (16.0)	463 (15.7)

주: 1. () 안은 연도별 비중을 의미
 2.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3. 2016년 이전 자료는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2017년 이후 자료는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수입금액 규모별 과세특례 적용 조합법인의 분포를 살펴보면 2019년 기준 20억원 이하의 영세조합법인은 28.8%, 20~100억원 이하 조합법인은 41.9%,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은 29.3% 차지
 - 농협과 수협의 경우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 비중이 가장 높음
 - 2018년 기준 농협은 91.95%, 수협은 100% 수준
 -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은 수입금액 20~100억원 이하 법인 비중이 가장 높음
 - 산림조합의 경우 수입금액 20~100억원 이하 법인이 87.5%를 차지하였고 100억원 초과 법인이 12.5% 비중 차지
 -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경우 수입금액 20~100억원 이하 법인의 비중이 약 50~60%대 수준이고, 0~20억원 이하 법인의 비중이 20~30%대 수준
 - 소비자생협의 경우 수입금액 20억원 이하 법인이 48.1%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20~100억원, 100억원 초과는 약 26%로 비슷한 수준
 - 기타 조합법인은 수입금액 20억원 이하 조합법인이 73.4%,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 17.9%, 20~100억원 이하 조합법인 8.6% 비중을 차지함

- 전년 대비 20억원 이하 과세특례 영세조합법인의 수는 130개, 20~100억원 이하 조합법인은 11개 감소하여 각각 13.3%, 0.9% 감소함. 100억원 초과 과세특례 중·대규모 조합법인의 수는 49개 증가(전년 대비 6.0% 증가)하여 전체 중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
 - 이러한 변화는 수협과 새마을금고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남
 - 신협은 전년 대비 20억원 이하 과세특례 영세조합법인 수 7.2% 감소, 20~100억원 이하 조합법인은 0.4% 증가하였으며, 100억원 초과 과세특례 중·대규모 조합법인의 수는 21.3% 증가
 - 새마을금고는 전년 대비 20억원 이하 과세특례 영세조합법인 수 24.7% 감소, 20~100억원 이하 조합법인 수는 2018년과 같았고, 100억원 초과 과세특례 중·대규모 조합법인의 수는 30.4% 증가
 - 농협과 기타 조합법인은 수입규모가 100억원 이하인 조합법인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고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 수는 증가함
 - 농협은 20억원 이하, 20~100억원 이하 조합법인 수가 각각 전년 대비 27.8% (18개 → 13개), 24.0%(50개 → 38개) 감소했고,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 수는 0.3% 증가(575개 → 577개)

- 기타 조합법인은 20억원 이하, 20~100억원 이하 조합법인 수가 각각 전년 대비 8.6%(372개 → 340개), 4.8%(42개 → 40개) 감소했고,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 수는 15.3% 증가(72개 → 83개)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모든 수입규모에서 조합법인 수가 감소함
- 산림조합은 20~100억원 이하,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 수가 전년 대비 모두 증가하여 전체 조합법인 수도 11.1% 증가

<표 II -8>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분포

(단위: 개,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계	4,558	4,560	4,502	4,397	3,184	3,037	2,945
	0~20억 이하	1,652 (36.2)	1,471 (32.3)	1,503 (33.4)	1,460 (33.2)	1,006 (31.6)	979 (32.2)	849 (28.8)
	20~100억 이하	1,591 (34.9)	1,771 (38.8)	1,693 (37.6)	1,641 (37.3)	1,357 (42.6)	1,245 (41.0)	1,234 (41.9)
	100억 초과	1,314 (28.8)	1,317 (28.9)	1,306 (29.0)	1,296 (29.5)	821 (25.8)	813 (26.8)	862 (29.3)
농협	계	779	739	689	671	704	643	628
	0~20억 이하	14 (1.8)	13 (1.8)	17 (2.5)	8 (1.2)	10 (1.4)	18 (2.8)	13 (2.1)
	20~100억 이하	73 (9.4)	85 (11.5)	58 (8.4)	73 (10.9)	62 (8.8)	50 (7.8)	38 (6.1)
	100억 초과	692 (88.8)	641 (86.7)	614 (89.1)	590 (87.9)	632 (89.8)	575 (89.4)	577 (91.9)
수협	계	21	6	6	6	6	6	3
	0~20억 이하	-	-	-	-	-	-	-
	20~100억 이하	5 (23.8)	2 (33.3)	-	-	-	-	-
	100억 초과	16 (76.2)	4 (66.7)	6 (100.0)	6 (100.0)	6 (100.0)	6 (100.0)	3 (100.0)
신협	계	907	891	886	880	869	868	865
	0~20억 이하	346 (38.1)	347 (38.9)	352 (39.7)	355 (40.3)	340 (39.1)	307 (35.4)	285 (32.9)
	20~100억 이하	517 (57.0)	504 (56.6)	486 (54.9)	473 (53.8)	468 (53.9)	481 (55.4)	483 (55.8)
	100억 초과	44 (4.9)	40 (4.5)	48 (5.4)	52 (5.9)	61 (7.0)	80 (9.2)	97 (11.2)

<표 II -8>의 계속

(단위: 개,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새마을금고	계	1,084	1,170	1,131	1,094	1,152	963	919
	0~20억 이하	475 (43.8)	328 (28.0)	350 (30.9)	370 (33.8)	343 (29.8)	263 (27.3)	198 (21.5)
	20~100억 이하	556 (51.3)	773 (66.1)	718 (63.5)	672 (61.4)	742 (64.4)	631 (65.5)	631 (68.7)
	100억 초과	53 (4.9)	69 (5.9)	63 (5.6)	52 (4.8)	67 (5.8)	69 (7.2)	90 (9.8)
산림조합	계	70	52	52	37	44	36	40
	0~20억 이하	1 (1.4)	1 (1.9)	-	-	-	1 (2.8)	-
	20~100억 이하	60 (85.7)	44 (84.6)	47 (90.4)	33 (89.2)	41 (93.2)	32 (88.9)	35 (87.5)
	100억 초과	9 (12.9)	7 (13.5)	5 (9.6)	4 (10.8)	3 (6.8)	3 (8.3)	5 (12.5)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계	58	42	35	38	44	35	27
	0~20억 이하	33 (56.9)	16 (38.1)	13 (37.1)	19 (50.0)	25 (56.8)	18 (51.4)	13 (48.1)
	20~100억 이하	19 (32.8)	19 (45.2)	17 (48.6)	12 (31.6)	12 (27.3)	9 (25.7)	7 (25.9)
	100억 초과	6 (10.3)	7 (16.7)	5 (14.3)	7 (18.4)	7 (15.9)	8 (22.9)	7 (25.9)
기타 조합법인	계	1,639	1,660	1,703	1,671	365	486	463
	0~20억 이하	783 (47.8)	766 (46.1)	771 (45.3)	708 (42.4)	288 (78.9)	372 (76.5)	340 (73.4)
	20~100억 이하	361 (22.0)	344 (20.7)	367 (21.6)	378 (22.6)	32 (8.8)	42 (8.6)	40 (8.6)
	100억 초과	494 (30.1)	549 (33.1)	565 (33.2)	585 (35.0)	45 (12.3)	72 (14.8)	83 (17.9)

주: 1. () 안은 연도별 비중을 의미

2.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3. 2016년 이전 자료는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2017년 이후 자료는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분포를 살펴보면 과세표준이 0~20억원 이하인 조합법인이 전체 조합법인 수의 77.2%로 소규모 법인이 대부분

○ 조합법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과세표준 구간은 2~20억원 이하 구간이며, 비중은 2017년 51.1%에서 2019년 48.0%로 감소하는 추세

-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기타 조합법인을 제외한 모든 조합법인 유형에서 과세표준 2~2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비중은 가장 높은 수준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과세표준이 0원 미만이 50% 이상이며, 나머지 법인도 과세표준 2억원 이하에 분포하여 상대적으로 영세조합법인의 비중이 높음
- 기타 조합법인은 0~2억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 해당하는 조합법인 비중이 64%로 가장 많음
- 3단계 누진세율이 영세 조합법인의 세금 경감 등을 위해 2015년 당기순이익에 따른 2단계 과세체제로 정비되어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영세 조합법인의 적용세율이 낮아짐(2억원 이하 10% → 9%, 20억원 이하 20% → 9%)
 - 과세표준 0~20억원에 해당하는 조합법인 비율은 2017년 80.7%, 2018년 79.9%, 2019년 77.2%로 소폭 감소하는 추세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비중은 2017년 8.8%, 2018년 10.5%, 2019년 10.6%로 소폭 상승하는 추세
- 과세표준이 0 미만인 조합법인의 숫자는 감소 추세를 보여주지만, 2017년 이후 10% 전후로 등락을 보이며, 2019년 기준 전체 조합법인 중 12.2% 비중을 차지함
 - 음(-)의 과세표준을 가진 조합법인 비중은 소비자생활협이 55.6%로 가장 높았고, 2017년 이후 비중이 상승하는 추세
 - 신탁, 새마을금고의 결손 조합법인 비중이 2018년 감소 후 2019년 반등하여 상승하였고, 산림조합과 소비자생활협의 결손 조합법인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 과세표준이 200억원을 초과하는 조합법인의 수는 매년 3~6개로 미미한 수준

〈표 II -9〉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분포

(단위: 개,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계	4,558	4,560	4,502	4,397	3,184	3,037	2,945
	0 미만	709 (15.6)	582 (12.8)	633 (14.1)	592 (13.5)	333 (10.5)	292 (9.6)	358 (12.2)
	0~2억 이하	1,445 (31.7)	1,409 (30.9)	1,409 (31.3)	1,442 (32.8)	944 (29.6)	885 (29.1)	859 (29.2)
	2~20억 이하	2,124 (46.6)	2,262 (49.6)	2,133 (47.4)	2,022 (46.0)	1,627 (51.1)	1,542 (50.8)	1,415 (48.0)
	20~200억 이하	278 (6.1)	306 (6.7)	326 (7.24)	339 (7.7)	277 (8.7)	313 (10.3)	307 (10.4)
	200억 초과	2 (0.0)	1 (0.0)	1 (0.0)	2 (0.1)	3 (0.1)	5 (0.2)	6 (0.2)

<표 II -9>의 계속

(단위: 개,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농협	계	779	739	689	671	704	643	628
	0 미만	24 (3.1)	23 (3.1)	10 (1.5)	17 (2.5)	11 (1.6)	13 (2.0)	15 (2.4)
	0~2억 이하	45 (5.8)	54 (7.3)	46 (6.7)	39 (5.8)	37 (5.3)	28 (4.4)	30 (4.8)
	2~20억 이하	576 (73.9)	538 (72.8)	494 (71.7)	473 (70.5)	486 (69.0)	418 (65.0)	408 (65.0)
	20~200억 이하	134 (17.2)	124 (16.8)	138 (20.0)	141 (21.0)	169 (24.0)	181 (28.1)	174 (27.7)
	200억 초과	-	-	1 (0.2)	1 (0.2)	1 (0.1)	3 (0.5)	1 (0.2)
수협	계	21	6	6	6	6	6	3
	0 미만	2 (9.5)	-	-	1 (16.7)	-	-	1 (33.3)
	0~2억 이하	1 (4.8)	2 (33.3)	1 (16.7)	2 (33.3)	1 (16.7)	-	-
	2~20억 이하	14 (66.7)	4 (66.7)	2 (33.3)	2 (33.3)	3 (50.0)	3 (50.0)	2 (66.7)
	20~200억 이하	4 (19.1)	-	3 (50.0)	1 (16.7)	2 (33.3)	3 (50.0)	-
	200억 초과	-	-	-	-	-	-	-
신협	계	907	891	886	880	869	868	865
	0 미만	182 (20.1)	117 (13.1)	109 (12.3)	122 (13.9)	95 (10.9)	68 (7.8)	116 (13.4)
	0~2억 이하	355 (39.1)	386 (43.3)	356 (40.2)	360 (40.9)	340 (39.1)	281 (32.4)	310 (35.8)
	2~20억 이하	361 (39.8)	374 (42.0)	404 (45.6)	372 (42.3)	394 (45.3)	471 (54.3)	384 (44.4)
	20~200억 이하	9 (1.0)	14 (1.6)	17 (1.9)	26 (2.9)	40 (4.6)	48 (5.5)	55 (6.4)
	200억 초과	-	-	-	-	-	-	-
새마을금고	계	1,084	1,170	1,131	1,094	1,152	963	919
	0 미만	170 (15.7)	106 (9.1)	162 (14.3)	152 (13.9)	103 (8.9)	75 (7.8)	99 (10.8)
	0~2억 이하	305 (28.1)	310 (26.5)	333 (29.4)	385 (35.2)	310 (26.9)	225 (23.4)	204 (22.2)
	2~20억 이하	569 (52.5)	698 (59.7)	594 (52.5)	525 (48.0)	687 (59.6)	599 (62.2)	561 (61.0)
	20~200억 이하	40 (3.7)	56 (4.8)	42 (3.7)	32 (2.9)	51 (4.4)	64 (6.6)	55 (6.0)
	200억 초과	-	-	-	-	1 (0.1)	-	-

<표 II -9>의 계속

(단위: 개,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산림조합	계	70	52	52	37	44	36	40
	0 미만	16 (22.9)	7 (13.5)	8 (15.4)	3 (8.1)	4 (9.1)	7 (19.4)	8 (20.0)
	0~2억 이하	23 (32.9)	12 (23.1)	10 (19.2)	10 (27.0)	9 (20.5)	9 (25.0)	5 (12.5)
	2~20억 이하	31 (44.3)	33 (63.5)	34 (65.4)	24 (64.9)	31 (70.5)	20 (55.6)	25 (62.5)
	20~200억 이하	-	-	-	-	-	-	2 (5.0)
	200억 초과	-	-	-	-	-	-	-
소비자생활	계	58	42	35	38	44	35	27
	0 미만	20 (34.5)	15 (35.7)	15 (42.9)	17 (44.7)	21 (47.7)	19 (54.3)	15 (55.6)
	0~2억 이하	30 (51.7)	17 (40.5)	17 (48.6)	20 (52.6)	19 (43.2)	15 (42.9)	12 (44.4)
	2~20억 이하	7 (12.1)	10 (23.8)	3 (8.6)	1 (2.6)	4 (9.1)	1 (2.9)	-
	20~200억 이하	1 (1.72)	-	-	-	-	-	-
	200억 초과	-	-	-	-	-	-	-
기타 조합법인	계	1,639	1,660	1,703	1,671	365	486	463
	0 미만	295 (18.0)	314 (18.9)	329 (19.3)	280 (16.8)	99 (27.1)	110 (22.6)	104 (22.5)
	0~2억 이하	686 (41.9)	628 (37.8)	646 (37.9)	626 (37.5)	228 (62.5)	327 (67.3)	298 (64.4)
	2~20억 이하	566 (34.5)	605 (36.5)	602 (35.4)	625 (37.4)	22 (6.0)	30 (6.2)	35 (7.6)
	20~200억 이하	90 (5.5)	112 (6.8)	126 (7.4)	139 (8.3)	15 (4.1)	17 (3.5)	21 (4.5)
	200억 초과	2 (0.1)	1 (0.1)	-	1 (0.1)	1 (0.3)	2 (0.4)	5 (1.1)

주: 1. () 안은 연도별 비중을 의미

2.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3. 2016년 이전 자료는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2017년 이후 자료는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은 2013년에서 2016년 연간 1.3% 감소하는 추세였으나, 2017년 42.2조원에서 2019년 51.4조원으로 수입금액이 연평균 10.4% 증가함

- 조합법인 유형 중 농협의 수입금액 규모가 가장 크며, 수입금액 규모는 2017년 28.5조원에서 2019년 31조원으로 늘었으며 전체의 60.4% 비중을 차지함
 - 농협의 수입금액 규모는 2017년에 비해 2.5조원 증가했으나 비중은 7.1%p 감소
- 농협 다음으로 큰 규모와 비중은 기타 조합법인, 새마을금고, 신협 순으로 나타남
 - 기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는 2017년 4.8조원에서 2019년 10.7조원으로 상승하였고, 비중도 11.3%에서 20.8%로 증가하여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증가 중 상당부분을 차지함
 - 새마을금고의 경우 수입금액의 규모와 비중이 2017년 4.7조원, 11.2%에서 2019년 4.7조원으로 수입금액은 동일하나 전체 조합법인 수입금액이 증가하여 비중은 9.28%로 감소함
 - 신협의 수입금액 규모와 비중은 2017년 3.5조원, 8.2%에서 2019년 4.3조원, 8.42%로 증가
- 수협, 산림조합, 소비자생협은 수입금액 비중이 전체의 1% 미만 수입금액 규모와 비중이 미미함

<표 II -10>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단위: 조원,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57.8 (100.0)	58.0 (100.0)	56.3 (100.0)	55.6 (100.0)	42.2 (100.0)	50.9 (100.0)	51.4 (100.0)
농협	26.7 (46.1)	24.3 (41.9)	23.4 (41.5)	22.1 (39.8)	28.5 (67.5)	30.3 (59.7)	31.0 (60.4)
수협	0.8 (1.3)	0.1 (0.2)	0.3 (0.5)	0.2 (0.4)	0.3 (0.7)	0.3 (0.6)	0.2 (0.3)
신협	3.3 (5.7)	3.3 (5.6)	3.3 (5.8)	3.2 (5.8)	3.5 (8.2)	3.9 (7.7)	4.3 (8.4)
새마을금고	3.5 (6.1)	4.7 (8.1)	4.4 (7.8)	4.1 (7.4)	4.7 (11.2)	4.3 (8.5)	4.7 (9.2)
산림조합	0.5 (0.8)	0.4 (0.6)	0.3 (0.6)	0.2 (0.4)	0.3 (0.7)	0.2 (0.5)	0.3 (0.6)
소비자생협	0.4 (0.6)	0.4 (0.7)	0.2 (0.3)	0.4 (0.7)	0.2 (0.5)	0.2 (0.4)	0.2 (0.3)
기타 조합법인	22.7 (39.3)	24.9 (42.9)	24.5 (43.5)	25.2 (45.4)	4.8 (11.3)	11.6 (22.7)	10.7 (20.8)

주: 1. () 안은 연도별 비중을 의미

2.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3. 2016년 이전 자료는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2017년 이후 자료는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2017년 132.7억원, 2018년 167.5억원, 2019년 174.4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
 - 평균 수입금액의 변화추이는 수입금액 규모별로 서로 다른 양상
 - 수입금액 0~2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2017년 8.2억원, 2018년 7.4억원, 2019년 7.2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
 - 수입금액 20~10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은 2017년 44.2억원, 2018년 45.5억원, 2019년 47.4억원으로 증가하는 추세
 -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경우, 2017년 431억원이던 평균 수입금액 규모가 2018년 547억원으로 증가하였다가 2019년 521억원으로 감소함

-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을 조합법인 유형별로 살펴보면 2017년 대비 2019년 평균 수입금액은 모든 조합법인 유형에서 증가
 - 평균 수입금액이 400억원 이상으로 높은 조합법인 유형으로는 <표 II-9>의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 비중이 높았던 농협과 수협
 - 농협과 수협의 평균 수입금액은 매년 400억원 이상을 기록하며, 수협은 2019년 평균 수입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함
 - 다음으로는 기타 조합법인의 평균 수입금액이 2018년에 전년 대비 100억원가량 증가한 238억원이며, 2019년 평균 수입금액은 231억원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상대적으로 영세조합법인의 비중이 높고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의 비중이 낮은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평균 수입금액 규모는 40~50억원대 수준

<표 II -11>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수입금액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계	126.9	127.3	125.2	126.4	132.7	167.5	174.4
	0~20억 이하	5.8	6.9	7.3	7.7	8.2	7.4	7.2
	20~100억 이하	46.7	45.7	45.6	45.6	44.2	45.5	47.4
	100억 초과	376.3	371.4	363.9	362.5	431.4	547.1	521.0
농협	계	342.5	328.8	339.7	330.0	404.8	472.0	493.9
	0~20억 이하	3.8	2.9	4.8	5.4	7.4	8.8	8.6
	20~100억 이하	79.9	77.6	74.4	76.1	78.0	76.9	75.5
	100억 초과	377.1	368.7	374.0	365.8	443.2	520.8	532.4

<표 II -11>의 계속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협	계	358.2	205.2	433.4	402.9	459.9	466.9	529.5
	0~20억 이하	-	-	-	-	-	-	-
	20~100억 이하	60.6	54.4	-	-	-	-	-
	100억 초과	451.2	280.6	433.4	402.9	459.9	466.9	529.5
신협	계	36.2	36.6	36.9	36.5	39.9	45.0	50.1
	0~20억 이하	10.0	9.9	10.0	9.7	9.8	9.2	9.1
	20~100억 이하	43.5	42.3	41.6	40.6	42.2	43.1	45.4
	100억 초과	156.2	195.7	186.0	181.2	190.5	193.6	194.1
새마을금고	계	32.5	40.1	38.8	37.8	41.1	44.6	51.2
	0~20억 이하	5.7	10.8	11.1	11.9	12.0	11.7	11.8
	20~100억 이하	41.3	41.5	41.9	41.3	41.6	43.6	46.2
	100억 초과	179.9	164.6	157.3	176.5	184.7	179.7	172.9
산림조합	계	69.6	67.6	66.4	66.5	67.2	68.3	72.2
	0~20억 이하	0.0	0.9	-	-	-	19.0	-
	20~100억 이하	62.9	62.4	60.3	60.1	61.4	62.8	63.8
	100억 초과	121.7	109.8	123.0	119.4	146.6	143.1	130.7
소비자생활협	계	63.1	94.0	51.3	103.3	44.4	61.1	59.2
	0~20억 이하	6.8	6.9	8.9	5.7	5.5	6.0	5.4
	20~100억 이하	45.3	51.0	48.2	56.5	51.9	51.7	49.3
	100억 초과	429.5	409.7	171.9	448.7	170.7	195.7	169.0
기타 조합법인	계	138.8	150.2	143.9	150.9	130.6	238.0	231.0
	0~20억 이하	4.0	4.0	4.4	4.6	2.1	2.7	2.8
	20~100억 이하	50.2	49.8	51.6	51.8	43.5	47.7	47.4
	100억 초과	417.3	416.9	394.3	391.9	1,015.5	1,564.8	1,254.1

주: 1.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2. 2016년 이전 자료는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2017년 이후 자료는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평균 수입금액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살펴보면 대체로 등락을 보이거나 2017년 대비 2019년 평균 수입금액은 대부분의 구간에서 증가
 -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입금액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농협의 경우 2019년 과세표준이 음(-)이 아닌 구간에서 2017년 대비 평균 수입금액의 규모가 모두 증가

- 다른 조합법인 유형의 경우 일부 과세표준 구간에서 2017년 대비 2019년 평균 수입금액의 규모가 증가
 - 신협은 과세표준 200억 이하 모든 구간에서 평균 수입금액 규모가 증가하였으며, 20~200억 이하 구간에서 평균 수입금액이 2017년 166.8억원에서 2019년 191.5억원으로 증가
 - 새마을금고는 과세표준 200억 초과 구간을 제외한 모든 구간에서 평균 수입금액이 증가
 - 기타 조합법인은 과세표준 2~20억원 이하 구간에서 2017년 대비 2019년 평균 수입금액이 20배 이상 증가

□ 농협과 수협의 평균 수입금액은 대부분의 과세표준 구간에서 다른 조합법인 유형들보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표 II -12>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수입금액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계	126.9	127.3	125.2	126.4	132.7	167.5	174.4
	0 미만	37.2	43.4	34.1	36.3	200.6	72.5	200.5
	0~2억 이하	27.5	31.3	26.6	28.0	23.1	90.3	95.2
	2~20억 이하	145.4	136.4	135.2	138.0	108.6	106.7	123.5
	20~200억 이하	658.4	604.7	651.4	618.3	542.1	688.9	544.2
	200억 초과	10,215.1	17,453.0	3,741.6	2,612.4	2,305.2	5,475.8	3,040.0
농협	계	342.5	328.8	339.7	330.0	404.8	472.0	493.9
	0 미만	255.4	230.3	187.5	153.5	4,563.3	122.7	4,031.5
	0~2억 이하	126.8	129.2	133.6	133.1	110.4	67.8	125.9
	2~20억 이하	267.2	256.7	242.3	250.6	242.8	250.2	276.9
	20~200억 이하	754.7	746.4	743.4	646.5	643.0	959.9	739.8
	200억 초과	-	-	3,741.6	3,918.3	4,071.8	7,214.8	4,196.6
수협	계	358.2	205.2	433.4	402.9	459.9	466.9	529.5
	0 미만	140.1	-	-	126.5	-	-	232.8
	0~2억 이하	32.8	118.9	200.4	266.7	200.8	-	-
	2~20억 이하	300.5	248.3	255.8	720.7	453.4	230.3	677.9
	20~200억 이하	750.9	-	629.5	316.1	599.1	703.4	-
	200억 초과	-	-	-	-	-	-	-

<표 II -12>의 계속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신협	계	36.2	36.6	36.9	36.5	39.9	45.0	50.1
	0 미만	28.8	23.0	18.8	20.2	14.5	16.6	26.5
	0~2억 이하	19.7	19.5	17.4	18.4	17.6	14.5	21.0
	2~20억 이하	53.1	53.1	52.9	49.9	52.4	52.2	60.5
	20~200억 이하	158.3	180.5	178.0	171.0	166.8	193.7	191.5
	200억 초과	-	-	-	-	-	-	-
새마을금고	계	32.5	40.1	38.8	37.8	41.1	44.6	51.2
	0 미만	20.7	23.5	20.1	25.4	21.4	23.1	27.8
	0~2억 이하	17.9	18.4	20.1	20.1	18.9	17.0	19.4
	2~20억 이하	35.7	43.1	45.5	46.3	43.0	43.9	52.5
	20~200억 이하	147.7	155.4	163.8	168.4	173.6	174.2	198.6
	200억 초과	-	-	-	-	881.6	-	-
산림조합	계	69.6	67.6	66.4	66.5	67.2	68.3	72.2
	0 미만	56.8	49.9	51.2	48.3	57.1	44.7	51.5
	0~2억 이하	57.4	55.6	56.8	49.8	59.8	65.7	65.8
	2~20억 이하	85.2	75.7	72.7	75.7	70.7	77.7	77.0
	20~200억 이하	-	-	-	-	-	-	110.9
	200억 초과	-	-	-	-	-	-	-
소비자생활협	계	63.1	94.0	51.3	103.3	44.4	61.1	59.2
	0 미만	9.9	31.6	56.1	26.1	30.0	58.5	62.4
	0~2억 이하	25.3	41.3	45.4	167.8	60.9	43.3	55.1
	2~20억 이하	173.7	277.2	60.4	126.1	41.8	379.1	-
	20~200억 이하	1,488.0	-	-	-	-	-	-
	200억 초과	-	-	-	-	-	-	-
기타 조합법인	계	138.8	150.2	143.9	150.9	130.6	238.0	231.0
	0 미만	34.2	44.5	40.0	42.3	122.9	139.0	37.3
	0~2억 이하	28.4	35.6	26.2	26.3	17.4	210.7	223.3
	2~20억 이하	189.5	188.6	194.4	182.7	219.6	214.7	165.3
	20~200억 이하	778.8	725.4	777.7	779.2	1,650.9	1,136.0	793.7
	200억 초과	10,215.1	17,453.0	-	1,306.5	1,962.1	2,867.4	2,808.7

주: 1.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2. 2016년 이전 자료는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2017년 이후 자료는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당기순이익을 실현하지 못한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와 비중은 2013~2017년 감소 추세였으나, 2017년 대비 2019년 결손법인 비중이 4.7%p 증가
 - 결손법인 수는 2017년 전체 조합법인의 10.5%인 334개이었으나 2019년 전체 법인의 15.2%인 447개로 증가
 - 농협은 2019년 기준 결손법인의 비중이 1.6%로 가장 낮은 수준
 - 농협의 적자법인 비중은 2017년 1.3%, 2018년 2.0%, 2019년 1.6%로 1~2% 수준을 유지
 - 수협은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법인만 유지하고 조합 수를 줄인 결과 2014~2018년 결손기업이 없었으나 2019년 1개 발생
 - 신협과 새마을금고의 적자법인 비중은 2017년 이후 10% 전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소비자생협은 결손법인 수는 감소하였으나 조합법인 수가 감소하여 결손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대비 2019년 5.6%p 증가
 - 소비자생협의 결손법인 비중은 매년 50%대로 가장 높으며, 직접 비교는 어려우나 과거 2013~2016년에도 결손법인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였음
 - 기타 조합법인의 결손법인 수 및 비중은 2017년부터 증가하는 추세
 - 결손법인 수는 2017년 기타 조합법인의 28.5%인 104개이었으나 2019년 기타 조합법인의 43.0%인 199개로 증가

〈표 II -13〉 과세특례 조합법인 중 결손법인 수와 비중

(단위: 개,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725 (15.9)	587 (12.9)	644 (14.3)	593 (13.5)	334 (10.5)	327 (10.8)	447 (15.2)
농협	27 (3.5)	21 (2.8)	9 (1.3)	17 (2.5)	9 (1.3)	13 (2.0)	10 (1.6)
수협	2 (9.5)	0 (0.0)	0 (0.0)	0 (0.0)	0 (0.0)	0 (0.0)	1 (33.3)
신협	185 (20.4)	117 (13.1)	102 (11.5)	110 (12.5)	94 (10.8)	63 (7.3)	118 (13.6)
새마을금고	184 (17.0)	112 (9.6)	168 (14.9)	160 (14.6)	102 (8.9)	76 (7.9)	98 (10.7)
산림조합	7 (10.0)	6 (11.5)	8 (15.4)	3 (8.1)	3 (6.8)	7 (19.4)	6 (15.0)

<표 II -13>의 계속

(단위: 개,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소비자생협	20 (34.5)	14 (33.3)	15 (42.9)	17 (44.7)	22 (50.0)	20 (57.1)	15 (55.6)
기타 조합법인	300 (18.3)	317 (19.1)	342 (20.1)	286 (17.1)	104 (28.5)	148 (30.5)	199 (43.0)

주: 1. () 안은 각 조합법인의 전체 법인 수 대비 결손법인의 비중을 의미함
 2.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3. 2016년 이전 자료는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2017년 이후 자료는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과세특례 조합법인 중 흑자를 기록한 법인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2017년 3.2조원에서 2019년 3.7조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
 - 당기순이익 비중은 농협, 기타 조합법인, 새마을금고, 신협 순으로 높음
 - 당기순이익 규모가 가장 큰 유형은 농협으로 당기순이익은 2017년 1.6조원에서 증가하여 2019년 2조원 수준에 이르며 연평균 11.9% 증가함
 - 기타 조합의 당기순이익 규모는 지속적인 성장추세를 보여주면서 2017년 4,502억원 수준에서 2019년 6,178억원 수준으로 증가
 - 2017년 새마을금고의 당기순이익은 6,675억원이나 2019년 5,712억원으로 점차 감소하는 추세
 - 신협의 당기순이익은 4~5천억원대 범위에서 등락하는 양상이나 당기순이익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 산림조합, 소비자생협, 수협은 당기순이익 규모 및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며 2017년 대비 2019년 산림조합의 당기순이익은 증가, 수협과 소비자생협은 감소함
 - 산림조합의 당기순이익은 2017년 138억원에서 2019년 153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당기순이익 규모는 전체의 1.4%로 비슷한 수준
 - 수협과 소비자생협은 당기순이익 규모 및 비중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수준이나 2017년 대비 당기순이익 규모가 60% 이상 감소함

<표 II -14>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23,623 (100.0)	25,771 (100.0)	26,158 (100.0)	27,191 (100.0)	31,670 (100.0)	35,257 (100.0)	36,908 (100.0)
농협	8,747 (37.0)	8,466 (32.8)	8,996 (34.4)	9,416 (34.6)	16,071 (22.1)	19,473 (21.2)	20,124 (21.3)
수협	194 (0.8)	26 (0.1)	104 (0.4)	88 (0.3)	146 (0.2)	163 (0.2)	19 (0.1)
신협	2,379 (10.1)	2,649 (10.3)	2,999 (11.5)	3,345 (12.3)	4,118 (27.3)	5,048 (28.6)	4,719 (29.4)
새마을금고	4,565 (19.3)	6,187 (24.0)	4,994 (19.1)	4,215 (15.5)	6,675 (36.2)	6,155 (31.7)	5,712 (31.2)
산림조합	167 (0.7)	161 (0.6)	175 (0.7)	105 (0.4)	138 (1.4)	96 (1.2)	153 (1.4)
소비자생활협	63 (0.3)	41 (0.2)	19 (0.1)	7 (0.0)	20 (1.4)	7 (1.2)	2 (0.9%)
기타 조합법인	7,507 (31.8)	8,242 (32.0)	8,871 (33.9)	10,015 (36.8)	4,502 (11.5)	4,315 (16.0)	6,178 (15.7)

주: 1. () 안은 연도별 비중을 의미하며, 후자 조합법인을 기준으로 작성

2.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3. 2016년 이전 자료는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2017년 이후 자료는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후자를 기록한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7년 11억원 수준에서 2019년 15억원 수준으로 연평균 16.6% 증가 추세
 -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증가하는 추세로 평균 당기순이익의 증가는 주로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대규모 조합법인의 수익성 개선에서 기인
 - 100억원 초과 대규모 조합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7년 30억원 수준에서 2019년 38억원 수준으로 증가
 - 수입금액 20~10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7년 4.9억원에서 2019년 5.1억원으로 소폭 증가
 - 수입금액 0~20억원 영세조합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7년 2억원에서 2019년 1.4억원으로 감소하는 추세

- 평균 당기순이익은 수협과 소비자생협을 제외한 모든 조합법인 유형에서 증가 추세
- 2019년 농협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33억원으로 2017년 대비 약 1.4배 가까이 성장
 - 농협은 대부분 조합법인이 수입금액 100억원 이상의 대규모 법인들로 이들 대규모 법인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7년 25억원 수준에서 2019년 35억원 수준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
 - 다음으로는 수협이 2019년 평균 당기순이익 9.6억원으로 2017년 24.3억원 대비 40% 수준으로 감소
 - 수협은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조합법인 수가 많지 않아 개별 조합의 수익에 따라 평균이 많이 변함
 - 과세특례 조합법인 수는 2017년 6개, 2018년 6개, 2019년 3개
 - 2019년 기준 신협, 새마을금고의 평균 당기순이익은 각각 6.3억원, 7억원으로 2017년 대비 약 19%, 15% 성장
 - 소비자생협은 가장 실적이 저조한 조합법인 유형으로 평균 당기순이익은 2017년 0.9억원 수준에서 2019년 0.2억원으로 감소
 - 2019년 수협과 소비자생협의 경우 모든 수입금액 규모에서 평균 당기순이익 규모가 2017년 대비 감소함

<표 II -15>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당기순이익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계	6.16	6.49	6.78	7.15	11.19	13.46	15.23
	0~20억 이하	1.92	1.41	1.15	1.07	2.04	1.57	1.40
	20~100억 이하	3.63	4.33	4.18	4.04	4.87	5.56	5.07
	100억 초과	12.97	13.66	14.62	15.99	29.85	35.67	38.10
농협	계	11.63	11.79	13.23	14.40	23.12	30.96	32.72
	0~20억 이하	1.68	1.90	2.67	0.83	0.51	1.13	0.78
	20~100억 이하	3.28	3.81	3.25	3.46	3.88	3.90	3.82
	100억 초과	12.68	13.01	14.46	15.84	25.33	33.98	35.05
수협	계	10.21	4.28	17.37	14.63	24.26	27.18	9.63
	0~20억 이하	-	-	-	-	-	-	-
	20~100억 이하	2.22	2.47	-	-	-	-	-
	100억 초과	12.35	5.19	17.37	14.63	24.26	27.18	9.63

<표 II -15>의 계속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신협	계	3.29	3.42	3.82	4.34	5.31	6.27	6.32
	0~20억 이하	1.29	1.17	1.22	1.22	1.22	1.36	1.30
	20~100억 이하	3.76	3.82	4.05	4.39	4.79	5.30	4.91
	100억 초과	11.08	14.97	17.07	21.33	27.39	28.03	24.78
새마을금고	계	5.07	5.85	5.19	4.51	6.36	6.94	6.96
	0~20억 이하	3.55	2.04	1.54	1.53	1.95	1.64	1.59
	20~100억 이하	4.35	5.35	4.87	4.42	5.21	6.03	5.43
	100억 초과	23.65	26.91	22.96	23.10	37.03	31.82	26.22
산림조합	계	2.66	3.49	3.97	3.10	3.38	3.30	4.50
	0~20억 이하	-	0.81	-	-	-	-	-
	20~100억 이하	2.16	2.65	3.36	2.78	3.19	2.96	3.79
	100억 초과	5.64	8.48	8.70	5.48	5.76	6.31	8.63
소비자생활협	계	1.66	1.47	0.96	0.34	0.93	0.47	0.17
	0~20억 이하	0.24	0.35	0.57	0.10	0.58	0.22	0.13
	20~100억 이하	0.78	1.63	1.01	0.57	1.42	0.53	0.22
	100억 초과	7.80	2.59	2.25	0.32	0.80	1.47	0.21
기타 조합법인	계	5.61	6.14	6.52	7.23	18.76	17.40	32.01
	0~20억 이하	1.19	1.20	0.88	0.74	3.59	1.89	1.45
	20~100억 이하	2.81	3.16	3.30	3.22	2.74	5.82	3.74
	100억 초과	12.67	12.88	13.68	15.28	105.29	75.78	140.64

주: 1. 흑자 조합법인을 기준으로 작성
 2.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3. 2016년 이전 자료는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2017년 이후 자료는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적자 조합법인을 포함한 평균 당기순손익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개선되는 모습
 - 평균 당기순손익 규모는 2017년 9.4억원 수준에서 2018년 11억원, 2019년 11.3억원 수준으로 증가
 - 과세표준이 0 미만인 조합법인의 경우 당기순손익이 2017년 11억원 수준에서 2018년 -4.6억원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19년 20억원으로 증가하여 경영 상황 개선

- 2017년부터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에서는 평균 당기순손익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이나, 수협, 소비자생협, 기타 조합법인에서는 평균 당기순손익이 감소함
 - 2017년 대비 2019년 평균 당기순손익이 증가한 조합법인 중 농협이 40% 성장하여 가장 많이 증가
 - 결손 조합법인의 비중이 높은 소비자생협은 당기순손익이 가장 낮았으며, 2018년부터 당기순손익이 적자로 돌아서며 2019년 평균 당기순손익이 -0.4억원으로 실적이 악화되는 추세
 - 평균 당기순손익의 개선은 과세표준 0~2억원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2017년 0.8억원에서 2019년 2.5억원으로 2배 이상 성장함

<표 II -16>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당기순손익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계	4.47	5.09	5.29	5.75	9.44	10.95	11.25
	0 미만	-4.57	-4.24	-3.66	-3.16	11.34	-4.57	20.29
	0~2억 이하	0.63	0.65	0.66	0.66	0.76	1.36	2.49
	2~20억 이하	5.95	6.12	6.19	6.39	7.08	6.59	6.80
	20~200억 이하	34.06	35.05	35.99	37.87	47.11	66.92	43.98
	200억 초과	284.22	222.97	250.10	238.60	326.48	455.22	101.04
농협	계	10.72	11.10	12.95	13.93	22.76	30.10	31.84
	0 미만	-16.19	-11.28	-7.63	-4.13	474.35	-8.94	583.40
	0~2억 이하	0.79	0.99	0.89	1.02	1.02	1.06	0.92
	2~20억 이하	6.98	7.10	7.05	7.88	7.92	8.34	8.10
	20~200억 이하	34.94	37.05	37.86	38.13	39.57	76.53	44.23
	200억 초과	-	-	250.10	277.06	230.10	701.44	216.40
수협	계	9.18	4.28	17.37	14.63	24.26	27.18	5.41
	0 미만	-0.68	-	-	1.92	-	-	-3.05
	0~2억 이하	0.04	0.30	0.19	4.19	0.91	-	-
	2~20억 이하	6.77	6.27	4.70	21.30	17.24	6.25	9.63
	20~200억 이하	24.80	-	31.54	34.91	46.46	48.10	-
	200억 초과	-	-	-	-	-	-	-

<표 II -16>의 계속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신협	계	1.63	2.29	2.87	2.92	4.26	5.50	4.85
	0 미만	-4.93	-5.22	-4.10	-6.27	-4.29	-3.96	-4.43
	0~2억 이하	0.75	0.78	0.78	0.83	0.79	0.80	0.86
	2~20억 이하	5.12	5.19	5.36	5.67	5.98	6.10	6.15
	20~200억 이하	29.14	28.73	32.26	35.87	37.22	40.57	37.90
	200억 초과	-	-	-	-	-	-	-
새마을금고	계	3.35	4.75	3.97	3.44	5.49	6.03	5.89
	0 미만	-5.43	-5.86	-3.07	-2.92	-3.33	-4.45	-3.04
	0~2억 이하	0.80	0.97	0.81	0.82	1.00	0.87	0.90
	2~20억 이하	5.34	5.75	5.73	5.37	5.58	5.99	6.37
	20~200억 이하	31.80	33.81	31.41	33.42	34.77	36.85	35.56
	200억 초과	-	-	-	-	749.30	-	-
산림조합	계	1.39	2.62	2.83	2.50	2.94	2.32	3.46
	0 미만	-4.11	-3.14	-3.48	-4.34	-2.06	-1.47	-1.69
	0~2억 이하	1.24	1.06	1.17	0.93	1.28	1.00	1.01
	2~20억 이하	4.34	4.41	4.79	4.00	4.07	4.24	4.18
	20~200억 이하	-	-	-	-	-	-	21.32
	200억 초과	-	-	-	-	-	-	-
소비자생활협	계	0.93	0.85	0.21	-0.23	0.23	-0.21	-0.35
	0 미만	-0.46	-0.36	-0.79	-0.93	-0.48	-0.75	-0.78
	0~2억 이하	0.42	0.69	0.56	0.31	0.38	0.27	0.17
	2~20억 이하	3.81	2.94	3.20	0.64	3.26	2.93	-
	20~200억 이하	23.89	-	-	-	-	-	-
	200억 초과	-	-	-	-	-	-	-
기타 조합법인	계	4.00	4.35	4.45	5.65	10.16	6.33	7.28
	0 미만	-3.22	-3.02	-3.81	-2.02	-6.78	-5.37	-6.21
	0~2억 이하	0.48	0.37	0.50	0.44	0.36	2.27	5.54
	2~20억 이하	6.13	6.41	6.60	6.61	58.65	3.58	7.24
	20~200억 이하	34.78	34.24	36.09	39.04	200.56	155.51	82.04
	200억 초과	284.22	222.97	-	200.14	0.03	85.88	77.97

주: 1.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2. 2016년 이전 자료는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2017년 이후 자료는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2019년 기준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평균 실효세율은 11.0% 수준이고 당기순이익 규모와 누진세율구조로 인해 조합법인 유형 및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차이
 - 당기순이익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농협과 기타 조합법인의 평균 실효세율은 10.2%와 19.4%로 다른 유형들보다 높은 수준이고 당기순이익 규모가 가장 작은 산림조합과 소비자생협의 평균 실효세율은 9.1%, 9.0%로 가장 낮음
 - 수입금액 규모별로 평균 실효세율을 살펴보면 수입금액 2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경우 10.3%, 100억원 초과인 경우 11.6%로 나타남
 - 이러한 실효세율 격차는 과세표준 20억원을 기준으로 2단계 누진세율(9%/12%)이 적용되기 때문

<표 II -17>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실효세율(2019년 기준)

(단위: %)

구분	전체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	산림	생협	기타
전체	11.0	10.2	9.0	9.5	9.3	9.1	9.0	19.4
0~20억 이하	10.3	9.0	-	9.0	8.9	-	9.3	17.2
20~100억 이하	8.9	8.9	-	8.9	8.9	9.1	9.0	11.6
100억 초과	11.6	10.3	9.0	10.1	9.9	9.0	9.0	19.5

주: 1. 평균 실효세율은 총부담세액 대비 과세표준을 의미
 2.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3. 2016년 이전 자료는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2017년 이후 자료는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에 의한 조세특례규모를 살펴보기 실제 산출세액에서 현재 과세표준 수준에 정상 법인세율을 적용했을 경우의 산출세액을 차감한 값을 감면금액으로 정의하여 조세특례규모를 추정⁶⁾
 - 이는 저율과세 효과만 추정하는 것으로 당기순이익 기준 과세 효과는 제외
 - 당기순이익에 대한 세무조정사항, 이월공제 등이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감면금액과 차이가 존재
 - 세무조정사항, 이월공제 등을 통일된 방법으로 예측 또는 전망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

6) 전병목·류덕현(2017) pp. 36~38에서 사용한 방법론을 차용

- 조합법인 과세특례에 의한 감면금액 총액은 2017년 2,081억원에서 2018년 2,450억원으로 증가했으나, 2019년 2,271억원으로 전년 대비 감소함
 - 2017년 대비 2019년 감면금액 증가는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대규모 조합법인의 감면금액 증가 영향이 가장 큼
 - 수입금액 20~100억원 이하 조합법인의 추정 감면금액은 2017년 484억원에서 2018년 520억원으로 증가했고, 2019년 443억원으로 감소
 - 같은 기간 수입금액 20억원 이하 영세조합법인의 감면금액 추정규모는 2017년 53억원에서 2018년 40억원, 2019년 31억원 수준으로 매년 감소하는 추세
 - 추정 감면금액 규모는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순으로 높음
 - 농협의 추정 감면금액은 2018년에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나 2019년 하락하여 2017년 대비 2019년 56억원 증가
 - 새마을금고 추정 감면금액은 2017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로 2017년 556억원에서 매년 감소하여 2019년 488억원에 이르러 68억원 감소
 - 신협은 농협과 비슷한 추이로 2017년 334억원에서 2018년 415억원으로 증가하였으나 2019년 388억원으로 감소
 - 조합법인 수가 적은 소비자생협, 수협의 감면금액 추정규모는 2억원 미만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2017년 이후 감소하는 추세

<표 II -18>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감면금액(추정)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계	2,118.1	2,299.1	2,355.8	2,447.8	2,081.1	2,450.0	2,270.9
	0~20억 이하	157.4	84.9	62.0	51.4	53.0	39.6	30.8
	20~100억 이하	364.2	539.3	482.6	449.0	484.4	520.1	443.1
	100억 초과	1,596.4	1,674.9	1,811.2	1,947.5	1,543.8	1,890.3	1,796.9
농협	계	839.6	803.9	863.0	898.9	1,047.2	1,307.2	1,103.4
	0~20억 이하	1.1	1.3	4.0	0.1	0.1	0.5	0.1
	20~100억 이하	13.9	20.1	10.6	15.6	16.6	13.6	9.4
	100억 초과	824.6	782.4	848.4	883.2	1,030.6	1,293.1	1,094.0
수협	계	21.2	2.7	11.8	4.9	13.9	15.1	1.9
	0~20억 이하	-	-	-	-	-	-	-
	20~100억 이하	0.6	0.3	-	-	-	-	-
	100억 초과	20.6	2.3	11.8	4.9	13.9	15.1	1.9

<표 II -18>의 계속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신협	계	177.1	196.3	228.3	259.3	334.0	415.1	387.8
	0~20억 이하	14.5	12.9	14.6	14.8	13.5	16.0	12.7
	20~100억 이하	117.2	126.6	134.9	140.4	164.4	193.5	166.3
	100억 초과	45.4	56.9	78.8	104.2	156.1	205.6	208.8
새마을금고	계	378.7	517.8	413.8	336.0	556.1	515.7	488.4
	0~20억 이하	100.9	30.4	19.2	20.3	26.4	15.7	11.2
	20~100억 이하	166.3	315.3	253.3	208.4	292.2	299.4	256.3
	100억 초과	111.5	172.1	141.3	107.3	237.5	200.7	220.9
산림조합	계	9.8	12.4	13.0	7.9	11.2	8.3	12.8
	0~20억 이하	0.0	0.0	-	-	-	0.0	-
	20~100억 이하	5.7	6.8	9.2	6.2	9.7	6.5	8.7
	100억 초과	4.1	5.6	3.7	1.7	1.5	1.8	4.2
소비자생활협	계	4.5	1.9	0.6	0.5	1.0	0.4	0.0
	0~20억 이하	0.0	0.0	0.1	0.0	0.3	0.0	0.0
	20~100억 이하	0.4	1.1	0.1	0.0	0.7	0.0	0.0
	100억 초과	4.0	0.8	0.4	0.5	0.0	0.4	0.0
기타 조합법인	계	687.1	764.0	825.3	940.3	117.7	188.2	276.6
	0~20억 이하	40.9	40.3	24.2	16.1	12.7	7.5	6.9
	20~100억 이하	60.2	69.0	74.4	78.4	0.8	7.1	2.5
	100억 초과	586.0	654.8	726.7	845.7	104.2	173.7	267.2

주: 1. 감면금액=(일반법인 가정 시 산출세액-과세특례 산출세액)
 2. 일반법인 가정 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정상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하며, 과세특례 산출세액은 신고세액을 이용
 3.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4. 2016년 이전 자료는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2017년 이후 자료는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과세표준 구간별로 추정한 감면금액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의 조합법인이 분포하는 과세표준 20~200억원, 2~20억원 구간에서 감면금액 규모가 큼
- 2019년 기준 각각 1,276원과 834억원으로 추정
 - 과세표준 20~200억원 구간에서 추정 감면금액은 2018년 증가 후 2019년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체 추정 감면금액의 추세를 견인함

<표 II -19>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감면금액(추정)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계	2,118.1	2,299.1	2,355.8	2,447.8	2,081.1	2,450.0	2,270.9
	0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2억 이하	11.0	10.8	10.0	10.7	7.4	5.5	5.5
	2~20억 이하	1,094.6	1,188.0	1,134.8	1,108.6	886.0	884.1	833.8
	20~200억 이하	959.0	1,078.2	1,189.6	1,285.3	1,078.8	1,321.5	1,276.1
	200억 초과	53.5	22.1	21.4	43.3	108.9	238.9	155.5
농협	계	839.6	803.9	863.0	898.9	1,047.2	1,307.2	1,103.4
	0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2억 이하	0.5	0.5	0.4	0.4	0.4	0.3	0.3
	2~20억 이하	359.6	336.2	310.9	328.8	351.4	326.9	307.2
	20~200억 이하	479.6	467.2	530.3	545.5	675.8	779.9	777.4
	200억 초과	-	-	21.4	24.2	19.6	200.1	18.5
수협	계	21.2	2.7	11.8	4.9	13.9	15.1	1.9
	0 미만	0.0	-	-	0.0	-	-	0.0
	0~2억 이하	0.0	0.0	0.0	0.0	0.0		
	2~20억 이하	10.2	2.7	1.1	1.6	5.0	2.0	1.9
	20~200억 이하	11.0	-	10.8	3.3	8.8	13.1	-
	200억 초과	-	-	-	-	-	-	-
신협	계	177.1	196.3	228.3	259.3	334.0	415.1	387.8
	0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2억 이하	3.3	3.4	3.0	3.2	3.0	2.4	2.7
	2~20억 이하	148.4	153.3	173.4	169.1	192.3	235.0	193.5
	20~200억 이하	25.4	39.6	51.9	87.0	138.8	177.7	191.6
	200억 초과	-	-	-	-	-	-	-
새마을금고	계	378.7	517.8	413.8	336.0	556.1	515.7	488.4
	0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2억 이하	3.1	3.4	3.1	3.7	3.3	2.3	2.1
	2~20억 이하	253.4	337.8	283.4	231.1	312.2	293.2	302.1
	20~200억 이하	122.2	176.6	127.4	101.2	169.1	220.2	184.2
	200억 초과	-	-	-	-	71.6	-	-
산림조합	계	9.8	12.4	13.0	7.9	11.2	8.3	12.8
	0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2억 이하	0.2	0.1	0.1	0.1	0.1	0.1	0.1
	2~20억 이하	9.6	12.3	12.9	7.8	11.1	8.2	8.4
	20~200억 이하	-	-	-	-	-	-	4.4
	200억 초과	-	-	-	-	-	-	-

<표 II -19>의 계속

(단위: 억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소비자생협	계	4.5	1.9	0.6	0.5	1.0	0.4	0.0
	0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2억 이하	0.1	0.1	0.1	0.1	0.1	0.0	0.0
	2~20억 이하	1.9	1.8	0.5	0.4	0.9	0.3	-
	20~200억 이하	2.4	-	-	-	-	-	-
	200억 초과	-	-	-	-	-	-	-
기타 조합법인	계	687.1	764.0	825.3	940.3	117.7	188.2	276.6
	0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2억 이하	3.8	3.2	3.3	3.1	0.5	0.4	0.3
	2~20억 이하	311.4	344.0	352.7	369.8	13.2	18.5	20.8
	20~200억 이하	318.4	394.8	469.3	548.3	86.2	130.6	118.5
	200억 초과	53.5	22.1	-	19.1	17.7	38.8	137.0

주: 1. 감면금액=(일반법인 가정시 산출세액-과세특례 산출세액)
 2. 일반법인 가정 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정상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하며, 과세특례 산출세액은 신고세액을 이용
 3.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4. 2016년 이전 자료는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2017년 이후 자료는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평균 감면금액은 2017년 6,500만원에서 2019년 7,700만원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
 - 이는 수입금액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평균 감면금액이 2017년 1.9억원에서 2019년 2.1억원으로 증가하는 데서 기인
 - 2019년 기준 평균 감면금액은 농협이 1.7억원 수준으로 가장 높고 소비자생협은 10만원 수준으로 가장 낮음
 - 농협 다음으로는 수협, 기타 조합법인, 새마을금고가 약 5~6천만원대, 신협과 산림조합은 3~4천만대 수준
 - 농협과 기타 조합법인에서 2017년 대비 2019년 평균 감면금액이 2,700만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했으며, 100억원 초과 조합법인에서 평균 감면금액이 크게 증가
 - 신협의 경우 2017년 약 3,800만원에서 2019년 4,500백만원으로 증가하였으며, 소비자생협은 평균 감면금액이 2백만원에서 10만원으로 감소하여 2017년 대비 6% 수준으로 가장 큰 비율로 감소함

<표 II -20>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수입금액 규모별 평균 감면금액(추정)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계	46.5	50.1	52.2	55.6	65.4	80.7	77.1
	0~20억 이하	9.5	5.7	4.1	3.5	5.3	4.0	3.6
	20~100억 이하	22.9	30.5	28.5	27.3	35.7	41.8	35.9
	100억 초과	121.5	127.2	138.7	150.5	188.0	232.5	208.5
농협	계	107.8	108.8	125.3	134.0	148.7	203.3	175.7
	0~20억 이하	8.2	10.0	23.3	1.8	0.6	2.8	0.5
	20~100억 이하	19.0	23.7	18.3	21.3	26.7	27.1	24.7
	100억 초과	119.2	122.1	138.2	149.7	163.1	224.9	189.6
수협	계	101.0	44.9	197.2	81.9	231.2	251.8	63.3
	0~20억 이하	-	-	-	-	-	-	-
	20~100억 이하	11.3	17.2	-	-	-	-	-
	100억 초과	129.0	58.7	197.2	81.9	231.2	251.8	63.3
신협	계	19.5	22.0	25.8	29.5	38.4	47.8	44.8
	0~20억 이하	4.2	3.7	4.1	4.2	4.0	5.2	4.4
	20~100억 이하	22.7	25.1	27.8	29.7	35.1	40.2	34.4
	100억 초과	103.2	142.1	164.2	200.3	255.9	257.0	215.3
새마을금고	계	34.9	44.3	36.5	30.6	48.3	53.6	53.1
	0~20억 이하	21.2	9.3	5.4	5.4	7.7	6.0	5.6
	20~100억 이하	29.9	40.8	35.3	30.9	39.4	47.5	40.6
	100억 초과	210.4	249.5	224.3	214.5	354.5	290.8	245.4
산림조합	계	14.0	23.9	24.9	21.3	25.4	22.9	32.1
	0~20억 이하	0.0	0.0	-	-	-	0.0	-
	20~100억 이하	9.5	15.5	19.6	18.6	23.6	20.2	24.7
	100억 초과	45.9	80.4	74.8	43.5	50.3	59.7	83.6
소비자생활협	계	7.7	4.6	1.7	1.4	2.2	1.1	0.1
	0~20억 이하	0.1	0.2	0.5	0.1	1.1	0.1	0.0
	20~100억 이하	2.2	5.9	0.7	0.4	5.5	0.3	0.2
	100억 초과	67.1	11.0	8.1	6.8	0.4	4.4	0.2
기타 조합법인	계	41.9	45.2	48.3	56.1	32.3	38.7	59.7
	0~20억 이하	5.2	5.1	3.1	2.3	4.4	2.0	2.0
	20~100억 이하	16.7	20.0	20.2	20.8	2.6	16.9	6.2
	100억 초과	118.6	119.3	128.6	144.6	231.5	241.2	321.9

주: 1. 감면금액=(일반법인 가정시 산출세액-과세특례 산출세액)/조합법인 수
 2. 일반법인 가정 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정상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하며, 과세특례 산출세액은 신고세액을 이용
 3.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4. 2016년 이전 자료는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2017년 이후 자료는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 평균 감면금액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추정한 결과, 과세표준 2~200억원 조합법인들의 2019년 평균 감면금액은 2017년 대비 증가했으나, 200억 초과 조합법인은 2017년 대비 감소함
 - 과세표준 2~20억원, 20~200억원 구간에서 2019년 평균 감면금액은 2017년 대비 약 450만원, 2,600만원 증가하여 증가폭은 각각 8%, 7% 증가
 - 단, 두 구간 모두 2018년 평균 감면금액이 증가하였으나 2019년에는 전년 대비 감소함
 - 과세표준 0~2억 이하 구간의 평균 감면금액은 모든 조합법인 유형에서 큰 증가나 감소가 없이 일정한 추이를 나타냄
 - 과세표준 2~20억원 구간은 연간 평균 감면금액이 5천만원대에서 소폭 증가하고 있으나, 수협은 평균 감면금액이 감소함
 - 과세표준 2~20억원 구간 수협의 평균 감면금액은 2017년 1.7억원에서 2019년 9천만원으로 44% 감소
 - 과세표준 20~200억원 구간에서는 평균 감면금액이 2017년 3억원대에서 2018년부터 4억원대로 증가하여 2019년에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함
 - 증가폭은 산림조합과 농협에서 가장 컸으며 2017년 대비 2019년 평균 감면금액이 각각 약 2억원, 5천만원 증가함
 - 과세표준 200억원 초과 구간에서는 2019년 평균 감면금액이 2017년 대비 10억원 이상 감소함

<표 II -21>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별 평균 감면금액(추정)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전체	계	46.5	50.1	52.2	55.6	65.4	80.7	77.1
	0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2억 이하	0.8	0.8	0.7	0.7	0.8	0.6	0.6
	2~20억 이하	51.5	52.5	53.3	54.9	54.5	57.3	58.9
	20~200억 이하	344.9	353.5	364.9	380.3	389.5	422.2	415.7
	200억 초과	2,677.5	2,214.5	2,143.6	2,165.3	3,630.3	4,778.3	2,591.4
농협	계	107.8	108.8	125.3	134.0	148.7	203.3	175.7
	0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2억 이하	1.0	1.0	0.9	1.0	1.0	1.1	0.9
	2~20억 이하	62.4	62.5	62.9	69.7	72.3	78.2	75.3
	20~200억 이하	357.9	376.7	384.3	386.9	399.9	430.9	446.8
	200억 초과			2,143.6	2,417.3	1,961.1	6,670.3	1,845.3

<표 II -21>의 계속

(단위: 백만원)

과세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수협	계	101.0	44.9	197.2	81.9	231.2	251.8	63.3
	0 미만	0.0	-	-	0.0	-	-	0.0
	0~2억 이하	0.0	0.7	0.2	1.4	0.9	-	-
	2~20억 이하	73.1	67.0	53.6	81.2	168.1	67.4	94.9
	20~200억 이하	274.3	-	358.5	326.1	440.9	436.3	-
	200억 초과	-	-	-	-	-	-	-
신협	계	19.5	22.0	25.8	29.5	38.4	47.8	44.8
	0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2억 이하	0.9	0.9	0.8	0.9	0.9	0.8	0.9
	2~20억 이하	41.1	41.0	42.9	45.6	48.8	49.9	50.4
	20~200억 이하	282.7	283.1	305.3	334.8	347.0	370.3	348.3
	200억 초과	-	-	-	-	-	-	-
새마을금고	계	34.9	44.3	36.5	30.6	48.3	53.6	53.1
	0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2억 이하	1.0	1.1	0.9	1.0	1.1	1.0	1.0
	2~20억 이하	44.5	48.4	47.9	44.0	45.4	49.0	53.8
	20~200억 이하	305.4	321.2	303.3	316.3	331.6	344.1	334.9
	200억 초과	-	-	-	-	7158.6	-	-
산림조합	계	14.0	23.9	24.9	21.3	25.4	22.9	32.1
	0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2억 이하	0.8	1.1	1.0	1.1	1.1	1.1	1.1
	2~20억 이하	31.0	37.3	37.8	32.4	35.7	40.8	33.6
	20~200억 이하	-	-	-	-	-	-	219.5
	200억 초과	-	-	-	-	-	-	-
소비자생활협	계	7.7	4.6	1.7	1.4	2.2	1.1	0.1
	0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2억 이하	0.5	0.8	0.6	0.5	0.4	0.3	0.3
	2~20억 이하	27.3	17.9	16.3	44.2	22.3	34.9	-
	20~200억 이하	242.9	-	-	-	-	-	-
	200억 초과	-	-	-	-	-	-	-
기타 조합법인	계	41.9	45.2	48.3	56.1	32.3	38.7	59.7
	0 미만	0.0	0.0	0.0	0.0	0.0	0.0	0.0
	0~2억 이하	0.6	0.5	0.5	0.5	0.2	0.1	0.1
	2~20억 이하	55.0	56.8	58.6	59.3	60.2	61.5	59.3
	20~200억 이하	353.7	352.5	372.5	397.3	575.0	768.1	564.3
	200억 초과	2,677.5	2,214.5	-	1,913.4	1,771.2	1,940.3	2,740.6

주: 1. 감면금액=(일반법인 가정시 산출세액·과세특례 산출세액)/조합법인 수
 2. 일반법인 가정 시 산출세액은 과세표준에 정상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추정하며, 과세특례 산출세액은 신고세액을 이용
 3. 기타 조합법인은 산학협력단, 영농조합, 영어조합, 의료법인, 정비사업조합, 학교법인을 포함
 4. 2016년 이전 자료는 사업자등록 기준이며, 2017년 이후 자료는 법인세 신고기준으로 산출됨
 자료: 국세청 미시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작성

2. 해외 사례7)

가. 미국

- 미국의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는 조합법인 또는 조합원 중 1회만 과세하는 것이 원칙으로(single tax principle) 기본적으로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하며 조합원에 대한 예외조항 운용

- 이용고 배당은 조합원이 해당 조합과 수행한 거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배당하는 순이익을 의미하며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 시 손금산입을 허용
 - 이에 따라 일정한 요건을 만족하는 이익분배, 즉 이용실적 배당은 손금산입하여 조합의 과세소득에 포함하지 않고 활동조합원의 소득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으로 소유주 단계에서만 소득세 과세
 - 이는 협동조합 단계에서 법인세 과세를 면제함으로써 협동조합 결성을 통한 조합원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효과
 - 손금산입이라는 세제혜택을 받는 이용실적배당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8)
 - 활동조합원이 이용한 해당 조합의 서비스 양이나 가치에 따라 배분금액이 결정되어야 함
 - 사전 약정에 의하여 분배금액이 결정되어야 함(해당 조합이 해당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받기 전에 결정)
 - 해당 조합이 활동조합원에 대한 사업결과 발생한 순이익에 의하여 배분금액이 결정되어야 함

- 단위당 자본적립 배당(per unit retain allocation)은 조합원이 조합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이용실적 배당금과 유사하게 손금산입
 - 자본적립 배당금은 조합이 조합원의 상품을 대리하여 판매한 후에 상품량에 따라 자본 배당하는 방식으로, 회원들이 조합을 통하여 출하하는 금액이나 물량에 따라 판매금액의 일부를 공제하여 이를 해당 조합에 단위당 자본 적립금으로 유보하는 것

7) 전병목·권성준(2020)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자 수정

8) 김완석·심태섭(2012)

- 결국 협동조합 단계에서 조합원 배당의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조합원의 개인소득세로 과세
 - 다만 농업관련 협동조합의 경우, 국가 또는 비조합원거래 이익을 배당할 때도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출자금 또는 자본금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도 손금산입을 허용

나. 일본

- 일본은 협동조합에 대하여 일반법인보다 낮은 법인세 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특례를 시행 중⁹⁾
 - 2022년 기준 일반법인에 대해서는 지방세를 포함하여 30%의 법인세율을 적용하나, 협동조합에 대해서는 19%의 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조합 활동을 지원
 -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이 10억엔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22% 세율을 적용함
 -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연도 총수입금액 중 물품공급사업¹⁰⁾에 관계되는 수입금액이 50%를 초과, 조합원 수가 50만명 이상, 물품공급사업자 중 점포에서 이루어진 수입금액이 1,000억엔 이상이어야 함
 - 일반 중소기업의 경우 800만엔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19%로 과세하고 있으므로 협동조합에 대한 저율과세는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체제와 동일한 형태
- 협동조합의 이용고 배당은 손금에 산입하며, 손금산입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결산 확정 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것으로 결의하는 다음 각호의 금액은 그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손금에 산입¹¹⁾
 -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 대하여 그 자가 사업연도 중에 취득한 물건의 수량, 가액 기타 그 협동조합 등의 사업을 이용한 분량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
 - 조합원 기타 구성원에 대하여 그 자가 사업연도 중에 그 협동조합 등의 사업에 종사한 정도에 따라 분배하는 금액

9) 「조세특별조치법」 제68조 및 「법인세법」 제66조

10) 해당 협동조합 등 조합원 기타 이용자에게 물품을 공급하는 사업

11) 「법인세법」 제60조의 2

- 협동조합의 유보소득에 대한 특별공제는 조합 중 출자금이 1억엔(소비생활협동조합과 소비생활협동조합 연합회는 1천만엔) 이하인 것의 유보소득에 대하여 특별공제를 허용¹²⁾

다. 영국

- 영국은 협동조합 개념이 처음 발생한 국가로 15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조합설립에 대한 특별한 제약이 없으나, 비법인 형태의 조직으로 법인세법을 적용받음¹³⁾
 - 협동조합에 대한 저율과세, 당기순이익과세와 같은 특례는 허용하지 않음
 - 다만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협동조합의 사업은 세무 목적상 이익창출행위로 간주하지 않으므로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구체적으로 조합원과 조합법인 사이의 거래량 또는 금액에 따른 이용실적 배당, 할인, 리베이트 등은 손금으로 산입
 - 예를 들어 Cooperative housing association의 회원이 협동조합에 지불한 월세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자는 세무상 무시되며, 조합이 보유하던 고정자산의 처분이익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 결국 영국도 협동조합에 대해 세무상 특례는 조합원과의 거래만 허용되며 그 방법은 이용실적 배당, 할인, 리베이트 등으로 손금산입을 통해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 다만 조합원의 출자금에 대한 배당에 대해서는 세법상 특례를 제공하지 않음

라. 스페인¹⁴⁾

- 스페인은 헌법에 ‘공권력은 각종 방식으로 기업참여를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적절한 입법에 의하여 협동조합을 조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음¹⁵⁾
 - 또한 스페인에는 일반협동조합과 신용협동조합에 관한 법률로서 「국가협동조합법(State Co-operative Act)」, 법3/1987과 법2/1999가 있으며, 이밖에 5개의 자치

12) 「조세특별조치법」 제61조

13) 김완석·심태섭(2012)

14) 손원익·송은주·홍성열(2013)

15) 스페인 헌법 제129조 제2a항

지역(Andalucía, Cataluña, Valencia, País Vasco, Navarra)에서 협동조합법을 자체적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¹⁶⁾

- 스페인 협동조합은 법인세법에 근거하여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대표적으로 협동조합 본연의 사업을 통해 얻은 이익 또는 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율 20%를 적용하며, 특별보호를 받는 노동자협동조합, 농협, 어업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50% 환급해주어 실질법인세율은 10%
 - 협동조합이 40%의 지분을 소유한 자회사에 대해서도 협동조합과 동일한 세율을 적용함. 단, 자회사의 수익이 협동조합과 관련이 없거나 비조합원과의 거래에서 발생했을 경우 표준세율 적용
 - 조합원 출자지분에 대한 이자가 조합 내부에 자본으로 적립될 경우 세금 공제를 받으나 조합원에게 지급된 배당금에 대해서는 15%의 과세가 부과됨

마. 독일

- 독일은 「산업 및 경제 협동조합에 관한 법¹⁷⁾」에 따라 자율적으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Cooperative Societies Act of 1889」에 의해 협동조합 일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비조합원과의 거래, 투자자본에 대한 보상, 해산 시 자산청산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각 협동조합의 정관에 따르도록 규정
- 이용고 배당을 제외한 협동조합에 대한 세무상 처리는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하나, 특정 영역에서 활동하는 조합이 일정 요건을 갖추는 경우 면세¹⁸⁾
 - 산업협동조합과 연합체가 주택을 건축 또는 취득하고 조합원에게 임대계약에 근거하거나 협동조합적 이용계약에 근거하여 사용하게 하거나 양도한 경우, 해당 협동조합의 수익이 90% 이상 해당 활동에서 발생한 경우 법인세 면제
 - 농업 및 임업 사업시설 및 자산의 공동사용, 농업 및 임업 관련 서비스, 조합원이

16) 김수환(2009)

17) Gesetz betreffend die Erwerbs und Wirtschaftsgenossenschaften.

18) 김완석·심태섭(2012), p. 26.

생산한 농업 및 임업 제품의 가공 등 농림업 관련 협동조합의 수익이 90% 이상 해당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우 법인세 면세

- 각 조합의 정관에 따라 이용고 배당은 가능하며, 조합원에 대한 이용고 배당은 손금산입함
 - 다만 이용실적 배당은 조합원과 협동조합 사이의 거래로 발생한 이익을 한도로 손금산입

바. 프랑스

- 1947년 법(the law of 1947)은 협동조합의 목적을 회원들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거나,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상품 및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거나, 회원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
 - 프랑스는 모든 협동조합에 적용되는 일반법인 협동조합공통법과 조합 종류별로 규율하는 특별법이 서로 보완적인 관계로 존재함
- 프랑스는 협동조합에 관한 특별법이 존재하지 않으며, 협동조합에 대한 과세는 기본적으로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적용하며 조합원에 대한 예외조항 운용
- 프랑스의 협동조합의 수익은 기본적으로 과세대상이며 예외적으로 일부 조합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과세를 면제함
 - 일반투자자의 비율이 50% 미만이고 비조합원과의 거래 비중이 과세대상 매출액의 20%를 넘지 않는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법인세가 면제되며, 공공주택조합은 비영리법인 성격을 지닌 협동조합으로 과세가 면제됨
 - 이 외의 경우에는 일반법인 과세체계를 따르고 개인회사의 경우 개인소득과세 체계를 따름
- 조합원이 최대 주주인 소비자조합과 금융조합의 경우 이용고 배당을 손금산입하여 법인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출자금 배당에 대해서는 손금 불공제
 - 비조합원과의 거래가 허용된 경우라도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거래에 의해 발생한 이익만을 이용실적에 따라 조합원에게만 배분 가능

사. 이탈리아

- 이탈리아의 협동조합은 1854년부터 시작되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1947년에 헌법¹⁹⁾에서 협동조합의 역할과 활동에 대한 근거를 규정함
 - ‘공화국은 사적인 이윤 목적이 없는 협동조합의 사회적 목적을 인정하며, 법이 정한 가장 적절한 수단으로 협동조합의 성장을 촉진하고, 법률의 특별한 통제로 협동조합의 성격과 목적을 보장해야 한다’고 명시²⁰⁾

- 협동조합은 상호조합(mutual associations)으로 간주하며, 사회적 협동조합은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며 두 유형은 엄격히 구분되어 활동을 병행하는 것은 금지됨
 -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운영되며 생산적 목표를 추구하는 ‘A유형’은 기업적 성격을 보이며, 취약계층을 노동시장에 유입시키기 위한 ‘B유형’은 소속 직원의 30% 이상이 취약계층 노동자로 이루어져야 함

- 이용고 배당을 제외한 협동조합에 대한 세무상 처리는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적용
 - 이용고 배당은 이용실적에 따른 환급(refund)으로 규정하며, 손금산입함
 - 환급과 구분되는 배당은 기타조합만 출자금 지분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으며 세제상 혜택은 없음

19) 이탈리아 「헌법」 제45조

20) 성연옥·배성필(2020), p. 148, 재인용.

〈표 II -22〉 OECD 회원국들의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 비교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 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호주 (Australia)	30.0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래의 목적을 위한 회사 중 매해 사업의 90%를 조합원들과 거래하는 경우 조합법인으로 인정 - 조합원들의 소비와 필요에 따른 재화의 구입 - 조합원들에 의해 생산된 재화의 판매 - 조합원들의 생산품을 저장, 판촉, 포장 및 가공 - 조합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제공 - 조합원들의 주거 또는 주거와 사업에 대한 필요한 자금의 상호신용을 위해 조합원들로부터의 예금 및 대출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에 따라 조합원들에게 지급된 리베이트 또는 보너스를 손금산입 (section120(1) of the ITAA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와 배당 지급 가능하며 손금산입 (section120(1) of the ITAA 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외의 사항은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따름
오스트리아 (Austria)	25.0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 관련 특별법은 없으며 1873년 제정(2008년 최근 개정)된 일반법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나 의무규정은 거의 없고 대부분 개별 조합의 정관에 의해 자치적으로 규제 - 따라서 이용고 배당 등 일부 사항을 제외하고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 체계를 적용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 배당금액이 조합원과의 거래 금액의 1% 이내 이고 해당 사업연도 초에 이용고 배당에 대한 사전 공지가 조합원들에게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따라 가능한 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표 II -22〉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 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벨기에 (Belgium)	25.0	2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 근거법은 company code of 1990 이며 가변적 자본과 회원을 가진 회사로 규정 - 세법상 조합법인은 전체 조합법인 25,000개 중 400개에 불과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정관에 따라 기능하나 세제상의 혜택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산일 현재 순자산 기액이 자본금보다 적은 경우 불가하며, 가 능하더라도 세제상의 혜택은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 National Cooperative Council과 조합법인 으로서 준수해야 할 요건에 대한 협약 체결한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p>1) 출자금에 대한 이자 (이자율 6% 한도)의 배당소득 으로 재분류 금지</p> <p>2) 원천세의 면제</p> <p>3) 법인세 감면</p> <p>4) 조합원에 대한 할 인금액에 대한 비 과세 등의 혜택이 부여됨</p>

〈표 II -22〉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 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캐나다 (Canada)	15.0	26.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음의 목적 중 하나 이상을 위해 연방법 또는 지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 성상의 근본적 변화가 없는 1차 상품을 조합원으로부터 공급받는 경우 - 원료, 기자재 또는 조합원을 위한 생활용품을 구매 공급 - 조합원을 위한 서비스 수행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 배당 이전에 고객들과의 계약시 이용고 배당의 기능성을 제시한 경우에 한하여 손금 산입 허용되나, 모든 납세자(협동조합을 포함)에게 허용되는 공통사항 - 비회원고객에게도 이용고 배당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고객과 비회원 고객 사이의 배당의 차이가 나면 손금한도를 회원 고객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과 비 회원 고객에게 지급한 이용고 배당의 합계로 계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 자체의 수익사업이 있는 경우, 처음 50만 달러의 소득까지는 여타 중소기업의 세율인 11%를 적용 - 배당처분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 연방정부의 감면세율 적용을 받지 못하며 이익을 배당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없음 	

〈표 II -22〉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 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칠레 (Chile)	10.0	10.0	- 노동법(the article 47 of the LGC)을 따르는 이윤공유 목적의 협동조합을 제외하고 Decree 502(1978년 제정, 2002년 개정)에 의해 협동조합을 규정 - 이러한 협동조합은 이윤을 추구할 수 없음	없음	아니오	- 이용고 배당은 손금산입	- 출자금 또는 할당저축에 대한 이자지급은 손금산입	- 조합법인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창출할 수 없으므로 비과세이지만, 조합법인으로부터 받은 조합원들의 이자 및 배당은 소득세 과세대상임
체코 (Czech Republic)	19.0	19.0	- 조합원들의 경제적, 사회적 또는 기타 다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결성된 사업체(sec. 221, par. 1, CommercialCode)이며 주택조합과 저축 및 신용조합에 대한 특별법만 존재하고 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은 각 조합의 정관에 위임 - 신용조합은 허용되거나 재보험 및 은행 업무는 협동조합이 진입할 수 없음	없음	아니오	-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덴마크 (Denmark)	22.0	22.0	- 조합법인의 일반적 정의는 Consolidate Act on Certain Commercial Undertakings(No651 of 15.6.2006)에 의해 규정되나 세부 사항은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위임	없음 (기타 사항 참조)	아니오	기타사항 참조	기타사항 참조	- 일반적으로 협동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기준을 적용

〈표 II -22〉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포함	지방 포함				이용고 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 다만 아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 협동조합의 순가치의 4~6%를 적용하여 과세대상 소득을 결정하고 이에 14.3%의 세율로 법인세를 과세 조건1) - 최소 10명의 조합원들이 구매자 또는 공급자로서 조합법인의 사업에 참여 조건2) -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통한 매출액이 전체 매출액의 25%를 초과하지 않음

〈표 II -22〉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포함	지방 포함				이용고 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에스토니아 (Estonia)	20.0	20.0	- 조합법인의 일반적 규정은 the general law on commercial association of 2001에 따르며 특별법으로는 신용 조합과 건물 및 아파트 조합에 관한 법이 있음 - 일반법에서 조합의 해산 전까지는 배분할 수 없는 법적 강제 적립금, 이용고 배당, 투자금에 대한 보상 까지 규정하고 있음	없음	아니오	- 일반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 일반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조건3) - 이윤에서 출자 또는 투자금 비율에 따라 지급(중앙은행의 정상이자율을 초과할 수 없음)하고 남은 잉여를 이용고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하거나 재투자 위해 유보

〈표 II -22〉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 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핀란드 (Finland)	20.0	20.0	- 협동조합 일반법(the general law on Cooperatives of 2001)에 의해 협동 조합 관련 강제 적립금, 이용고 배당, 투자금에 대한 이자보상 등 세부 사항까지 규정	없음	아니오	- 일반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각 조합법인의 합병인의 정관에 따라 가능하며 손금 산입	- 일반법에 규정된 범위 안에서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계상의 특례는 없고 일반법인과 동일하거나 일부 조합(낙농 및 가축조합)의 경우 일반 법정보다 더 엄격	- 이용고에 따른 배당 이외에 여타 사항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프랑스 (France)	25.8	25.8	- 1947년 법(the law of 1947)은 조합법인의 주요 목적을 회원들을 위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거나, 제품의 품질을 제고하거나, 회원들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함으로 규정 - 농업이나 공예품분야의 조합에 관한 다수의 특별규정이 있어서 법 체계가 복잡 - 특별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한, 비조합원이 해당 조합의 혜택을 누릴 수 없도록 제한	없음	아니오	- 비조합원과의 거래가 허용된 경우라도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거래에 의해 발생된 이익만을 이용고에 따라 조합원에게만 배분가능하며 조합원이 최대주주인 소비자조합과 금융조합의 경우 손금 산입	- 경제부에서 고시한 평균 회사채수익률을 한도로 출자금에 대한 이자형태로 지급 가능하나, 세계상의 특례는 없음	- 일반 투자자의 비율이 50% 미만이고, 비조합원과의 거래비중이 과세대상 매출액의 20%를 넘지 않는 농업 협동조합의 경우에 법인세 면제 - 이 외의 사항은 일반법인 과세체계를 따르고 개인회사의 형태를 띠는 경우, 개인소득과 세계계를 따름

〈표 II -22〉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 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독일 (Germany)	15.8	29.8	- Cooperative Societies Act of 1889 (최근개정 2006)에 의해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사항을 정하고 있으나, 비조합원과의 거래, 투자자본에 대한 보상, 해산 시 자산청산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각 조합법인의 정관에 따름	없음	아니오	- 정관에 따라 가능하고 손금산입하나, 조합원과 조합법인 사이의 거래에 의해 발생된 이익을 한도로 손금산입	-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 이용고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 특례 이외에 여타 사항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 다만, 농업 및 임업 장비의 공동사용, 농업 및 임업관련 서비스, 조합원이 생산한 농업 및 임업제품의 가공 등의 활동에 중사하는 협동조합의 수익 90% 이상이 해당 활동에서 발생하는 경우 면세
그리스 (Greece)	22.0	22.0	- 민법과 특별법에 의해 조합법인의 형성 및 운영을 관장하나 그리스에서 협동조합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통상적인 조직체로 볼 수 없음 - 대표적 조합법인은 민법상의 조합법인과 지방법에 따른 조합법인으로 구분	없음	아니오	- 지방법에 따른 조합법인의 잉여 (surplus, 조합원과 거래로부터 발생)에 대한 이용고 배당이 가능하나, 세제상의 특례는 없음	- 지방조합법인 잉여 배당이 가능하며 이익 (profits, 비조합원과의 거래로부터 발생)은 투자자에 유리한 경우 가능 - 민법상의 조합법인	- 지방조합법인에 대한 감면사항을 제외하고 조합법인은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 지방조합법인의 감면사항은

〈표 II -22〉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포함	지방 포함				이용고 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헝가리 (Hungary)	9.0	9.0	- 민법에 근거한 7인 이상의 회원을 가진 법인으로서 회원의 사업을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조합 법인의 회원은 자연인과 법인일 수 있으나 법인회원의 수는 자연인 회원의 수를 넘을 수 없음	없음	아니오	- 민법상 조합법인 이익(profits, 비조합원과의 거래로부터 발생)을 이 용고에 따라 조합 원에게 배당 가능	- 이익의 50%를 배분 가능	1) 유보한 잉여에 대한 법인세 면제, 2) 몇몇 거래에 대한 인지세 면제, 3) 자본축적에 대한 비과세, 4) 다양한 경우의 VAT비과세
						- 이용고 배당은 가능하나 손금산입 특례는 없음	-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계상의 특례는 없음	- 자연인 회원과 그 가족들에게 사회적 부조, 문화적 도움 등을 지원하기 위해 조합법인은 fellowship fund에 이익금의 일정부분을 적립할 수 있고 이익금의 6.5%를 한도로 적립금은 면세

〈표 II -22〉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 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아일랜드 (Ireland)	12.5	12.5	- Industrial and Provident Societies Act 1893-1978에 따라 등록된 협동조합 및 Credit Union Act 1997에 의한 신용협동조합 - 그러나 협동조합의 요건, 업종 등에 대한 규정은 없음	없음	아니오	- 이용고에 따라 지급되는 할인, 리베이트, 배당, 보너스 등은 손금산입	- 정관에 따라 가능하나, 세계상의 특례는 없음	- 출자금에 대한 이자지급은 과세대상 소득에서 공제 - 주 거주자가 아일랜드 이외의 지역인 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에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음
이탈리아 (Italy)	24.0	27.8	- 재화와 용역을 공급하기 위한 상호 공동의 목적을 위해 가변적 자본을 가진 공동체(societies)로서 비조합 원과의 거래가 특정수준 이하로 제한되는 MMC(mainly mutual cooperatives)와 그러한 제약이 없는 기타 조합(other cooperatives)으로 구분됨	없음	아니오	- 이용고에 따라 환급(Refund)할 수 있으며, 손금으로 산입 - 환급은 배당과 구분	- 기타조합의 경우에 해서 출자금 지분에 따라 배당할 수 있지만 세계상의 특례는 없음	- 이외의 사항은 협동조합들은 기본적으로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일본 (Japan)	23.2	29.7	- corporation tax law Sch. 3에 열거된 조합법인과 연합회(예, 농업협동조합과 연합회, 중소기업협동조합 연합회)	19	아니오	- 조합법인 이용고에 따른 배당 손금산입 허용		- 중소기업의 경우 최소 8백만엔까지의 소득은 19%로 과세하므로 조합법인의 저율과세 세율은 기준조세 체계 안에 있음

〈표 II -22〉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증상	지방 포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기타 사항
						이용고 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룩셈부르크 (Luxembourg)	18.2		18.2 - 협동조합 설립근거법은 the law on commercial companies of 1915이며 기본적인 사항 이 외의 적립금, 이용고 배당 등의 구체적 사항들은 조합법인의 정관에 위임	없음	아니오	- 정관에 따라 가능 하지만, 세계상의 특례는 없음	- 일반법인과 동일	-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법인 설립일 이후 10년을 경과하는 날을 포함한 사업연도까지 그 소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유보할 경우 유보금액의 32%까지는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으로 산입
	24.9		24.9 - 협동조합 설립근거법은 the law on commercial companies of 1915이며 기본적인 사항 이 외의 적립금, 이용고 배당 등의 구체적 사항들은 조합법인의 정관에 위임	없음	아니오	- 정관에 따라 가능 하지만, 세계상의 특례는 없음	- 일반법인과 동일	-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비영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고유목적사업에 대해 비과세 - 농협관련 조합의 경우 조합원들의 농임업 농장과 기계의 공동사용과 농산품의 판매 또는 가공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한해서만 비과세

〈표 II -22〉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 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멕시코 (Mexico)	30.0	30.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동조합일반법(Ley General de Sociedades Cooperativas)과 상업회사 일반법(Ley General de Sociedades Mercantiles)에 의해 협동조합이 설립 - 기본적으로 공유된 노동과 서비스로부터 생산된 제품의 상업화, 유통, 저장 및 수송을 위해 개인들의 의해 조직된 사업체로 규정 	없음 (기타 사항 참조)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 배당 손금 산입 허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법인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본적으로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하나 다수의 조세유인이 시행되고 있음 - 감독기관에 의해 투명경영을 실천하는 조합법인으로 선정되는 경우 해당 과세연도에는 법인세를 비과세하고, 모든 소득은 조합원의 소득으로 배분되고 개인소득세로 과세(2006년 개편) - 2014년에 발생하는 조합법인 소득에 한해 조합원에게 배분되지 않고 2년간 유보하는 경우, 과세대상 소득에서 제외하고 3년째과세하는 과세이연제도 시행(2014 개편)

〈표 II -22〉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제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 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네덜란드 (Netherlands)	25.8	25.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법에 근거하여 협동조합이 설립되거나 구체적인 사항은 협동조합의 정관에 위임하고 있음 - 상호보험협동조합(cooperative insurance companies(mutual))에 대해서는 특정규제가 적용되거나 여타 특별법은 없음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과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에 한해 이용고에 따라 배당할 수 있으며 손금산입 허용 - 이용고 배당 이외의 회계장부상 이익이 발생한 연도로부터 1년 이내에 자연인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금액과 전기 오류 수정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에 따라 가능하며 일반법인과 동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용고 배당을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동일한 일반법인과 동일한 법인세 규정
뉴질랜드 (New Zealand)	28.0	28.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operative Company Act 1996에 따라 협동조합 요건을 갖춘 회사가 Company Act 1992에 의해 법인화된 경우 조합법인은 60%의 조합원이 현재 재화와 용역을 조합법인에 공급하거나 조합법인으로부터 구매하고 있어야 함 - 농업분야부터 택시까지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 	없음	아니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과 조합원 사이의 거래를 통해 발생한 이익으로 이용에 따라 조합원에게 주는 리베이트는 손금산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외의 조합법인의 과세는 일반법인과 동일 - 조합과의 거래에 따라 발생한 조합원의 리베이트는 개인소득세 과세

〈표 II -22〉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 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노르웨이 (Norway)	22.0	22.0	-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과 건물 및 주택조합과 상호보험회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이용고 배당, 투자 자금을 대한 보상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강제적 적립금에 관한 규정은 없음	없음 (기타 사항 참조)	아니오	- 과세대상 조합법인의 경우 이용고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특례	- 5년 만기 국채 이자율 보다 3%포인트 이상 높지 않은 이자율로 보상가능하며, 세무상 처분은 일반법인과 동일	- 영리조직으로 분 류됨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비영리조직 으로 구분되는 경 우 고유목적사업에 대해서는 비과세 하고 수익사업의 경우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폴란드 (Poland)	19.0	19.0	- 협동조합일반법과 신용조합, 은행 조합, 농업생산자단체, 주택조합, 사회적 조합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협동조합의 기본사항을 규정 - 협동조합은 법정 적립금을 관리하고 조합이 존재하는 기간 동안 조합 원들에게 분배할 수 없도록 규정	없음	아니오	- 협동조합 일반법 규정에 따라 이용 고배당이 가능하나 세계상 손금산입 특례는 없음	- 정관에 따라 가능하 나 세계상의 특례는 없음	- 일반법인과 동일 하게 과세
포르투갈 (Portugal)	30.0	31.5	- 회원의 경제, 사회, 문화적 필요에 따라 조직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가변적인 자본을 가짐(cooperative code 1996) - 활동영역은 소비, 교육, 농업, 신용, 주거, 생산 공예, 서비스, 문화, 교육,	없음	아니오	- 이용고 배당 여부는 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다름: 교육 협동조합의 경우 연간 이익의 50% 까지 가능하지만	- 배당금이 조합원의 거래로부터 발생한 연간이익의 30%를 넘지 못하는 일반적인 규정이 있으며, 일부 조합의 경우 배당이	- 세계상의 혜택은 조합원과의 거래로 인한 이익은 법인 세가 면제되며,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 20%만 면제

〈표 II -22〉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포함	지방 포함				이용고 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공공부조 등 다양			일부 협동조합의 경우(housing and social solidarity)배당이 불가능 - 그러나 세계상의 혜택은 없음	불가하며 세계상의 혜택은 없음	
슬로바키아 (Slovak Republic)	21.0	21.0	- 상법(Commercial code §221)에 의해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여타 특별법은 없음 - 최소 조합원 수를 5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법적 강제적립금 등이 규정되어 있음	없음	아니오	- 이용고 배당은 가능하나 손금산입 특례는 없음	- 정관에 따라 가능한 나 세계상의 특례는 없음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슬로베니아 (Slovenia)	19.0	19.0	- 협동조합에 관한 일반법(the Act on Cooperatives(Zakon o združgah))에 의해 최소 조합원 수 3명(법인 회원 포함)으로 설립가능하며 주로 농업분야에서 활동 - 조합원과의 거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비조합원과의 거래를 허용하고 있으며 투자자 조합원이 허용되고 회사채 발행 등의 재무 활동도 가능	없음	아니오	- 일반법 규정에 따라 이용고 배당은 가능하지만 손금산입 특례는 없음	- 일반법 규정에 따라 가능하지만 손금산입 특례는 없음	-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표 II -22〉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 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스페인 (Spain)	25.0	25.0	- 신용부문을 제외한 특정 협동조 합에 대한 특별법은 없으며 14개 자치지역에 적용되는 협동조합법과 특정지역으로 활동이 제한되지 않는 협동조합에 대한 일반협동조 합법(1999)에 근거하고 있음 - 조합원들이 원하는 모든 분야의 경제적 활동에 협동조합이 참여 할 수 있음	20.0 (기타 사항 참조)	아니오	- 법적 준비금으로 적립하고 남은 잉 여금은 조합원에게 이용고에 따라 배 분가능하나 세계상 특례는 없음	- 회계상 이익이 있는 경우 사전에 규정되 어있는 지급내역에 따라 연 6% 또는 법정이자를 한도로 지급가능	- 관련법에 따라 등록된 조합법인 의 이익은 1) 조합원 거래에 의한 이익과 2) 자본이득을 포 합한 조합원 이 외의 자와의 거 래에 의한이익 으로 구분 - 1)과 2)의 값이 음수이더라도 1)에 는 20%를 적용하 고, 2)에는 30%를 적용하여 산출된 세액을 합산
스웨덴 (Sweden)	20.6	20.6	- 협동조합에 관한 법률은 없으나, 모 든 협동조합들은 경제적 연합회에 관 한 법률(the law of economic associations) 에 의해 규제됨 - 협동조합 또는 경제적 연합회는 회원들의 참여를 통해 회원들의 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데 목적을 둔	없음	아니오	- 해당 조합원이 특 정 과세연도에 조 합법인 총회에서 투표를 행사한 경 우에 한하여 이용고 배당, 할인 금액의 손금산입 허용	- 일반법인과 동일	- 합산된 세액이 음수인 경우, 환 급되지 않는 10년간 이월 공제 받을 수 있음 - 일반법인과 동일 하게 과세

〈표 II -22〉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 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기타 사항
스위스 (Switzerland)	8.5	19.7	- 협동조합은 일반적으로 연방법 (Swiss Code of Obligations)에 의해 설립되지만 스위스 지방법에 따 라 설립되기도 함 - 자본금이나 조합원 수에 대한 규 정은 없으나, 조합원의 경제적 이 익을 도모하거나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없음	아니오	- 연방과 주의 법인 소득세 산정과정에 서 모두 이용고 배당 및 할인금액을 상 업적 경비로 인정 하여 손금에 산입	- 일반법인과 동일	- 이용고 배당 손금 산입 이외에 일반 법인과 동일하게 과세
터키 (Turkey)	23.0	230.	- 협동조합 일반법(the Cooperative Act)에 의해 설립되며, 주요 설립 목적은 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한 사업지원에 두고 있음 - 최소 7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설립 가능	없음	아니오	- 조합원과의 거래만 을 하고 적립금이나 여타 배당을 하지 않는 경우 이용고 에 따라 배분 가능 하고 손금산입	- 일반법인과 동일	- 조합원과의 거래 만을 하는 협동조 합에 한하여 이용 고배당 손금산입 이 가능함 - 이 외의 사항은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따름
영국 (United Kingdom)	19.0	19.0	- 조합법인에 관한 특별한 제약 없이 설립 가능	없음	아니오	- 조합원과 조합법인 사이의 거래량 또 는 금액에 따르는 이용고 배당, 할인, 리베이트 등은 손 금으로 산입됨	- 조합법인 규정에 따라 출자금에 대한 배당 은 가능하지만 이에 대한 세법상 특례는 없음	- 조합원만을 대상 으로 하는 협동 조합의 사업은 세 무목적상 이익창출 행위로 간주하지 않음

〈표 II -22〉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포함	지방 포함				이용고 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미국 (United States)	21.0	25.8	- 조합원을 위해 공동구매 및 판매 행위를 위해 조직된 법인으로 기본적으로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유지. 다만 이용고 배당 등 추가적 손금산입 항목으로 세제상의 혜택	없음	아니오	- 조합원이 해당 조합법인과 수행한 거래량 또는 금액을 기준으로 조합법인의 순이익에서 배당하는 이용고 배당을 손금으로 인정(IRC§1388(a)).	- 농업관련 협동조합에 한하여 출자금 또는 자본금에 대한 배당을 손금으로 허용 (IRC§1382(c)(1))	- 이 외에 단위당 자본적립 배당 (per unit retain allocation)은 해당 조합원을 대신해서 조합법인이 판매한 상품량에 기초하여 그 조합원에게 현금 또는 상환가능
								- Cooperative housing association의 회원이 조합법인에 지급한 월세(rent)와 조합이 조합원에게 지급한 이자는 세무상 무시하며 조합이 보유하고 있던 고정자산의 처분 이익도 과세대상에서 제외. 이 외의 사항은 일반법인과 동일한 과세체계를 따름

〈표 II -22〉의 계속

(단위: %)

국가	2022년 법인세율		조합법인 근거법 등	저울 과세 세율	당기 순이익 과세	세계상 특례		기타 사항
	중앙 지방 포함	이용고 배당				출자금에 대한 배당		
								증서로 배당하는 것으로 그 금액 을 손금산입 (IRC§1388(f)) - 미국정부 및 관련 기관을 위한 거래로 부터 발생한 이익 등 비조합원 거래로 부터 발생한 이익 은 과세대상이나, 농업관련 조합에 한하여 해당 이익 을 배당할 경우 손 금으로 처리 (IRC§1382(c)(2)) - 조합원들의 배당 소득은 과세대상 (IRC§1385)

주: 1. 칠레의 기본세율은 27.0%(중소기업 25.0%)이나 2020-2022년 동안 중소기업에 대해 법인세율 10% 적용
 2. 룩셈부르크 기본세율은 과세소득에 따라 15.0~17.0%이나 부가세를 고려할 경우 최고세율은 18.19%(지방세 고려 시 최고 24.94%)
 3. 포르투갈 기본세율은 21.0%이나 과세소득에 따라 부가세(surta)로 3~9%p 추가 과세

자료: OECD Statistics(<https://stats.oecd.org>), Statutory corporate income tax rate; 전병목·권성준(2020), pp. 74~90, <표 III-2>를 수정

Ⅲ. 타당성 분석



Ⅲ. 타당성 분석

1.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 도입 배경 및 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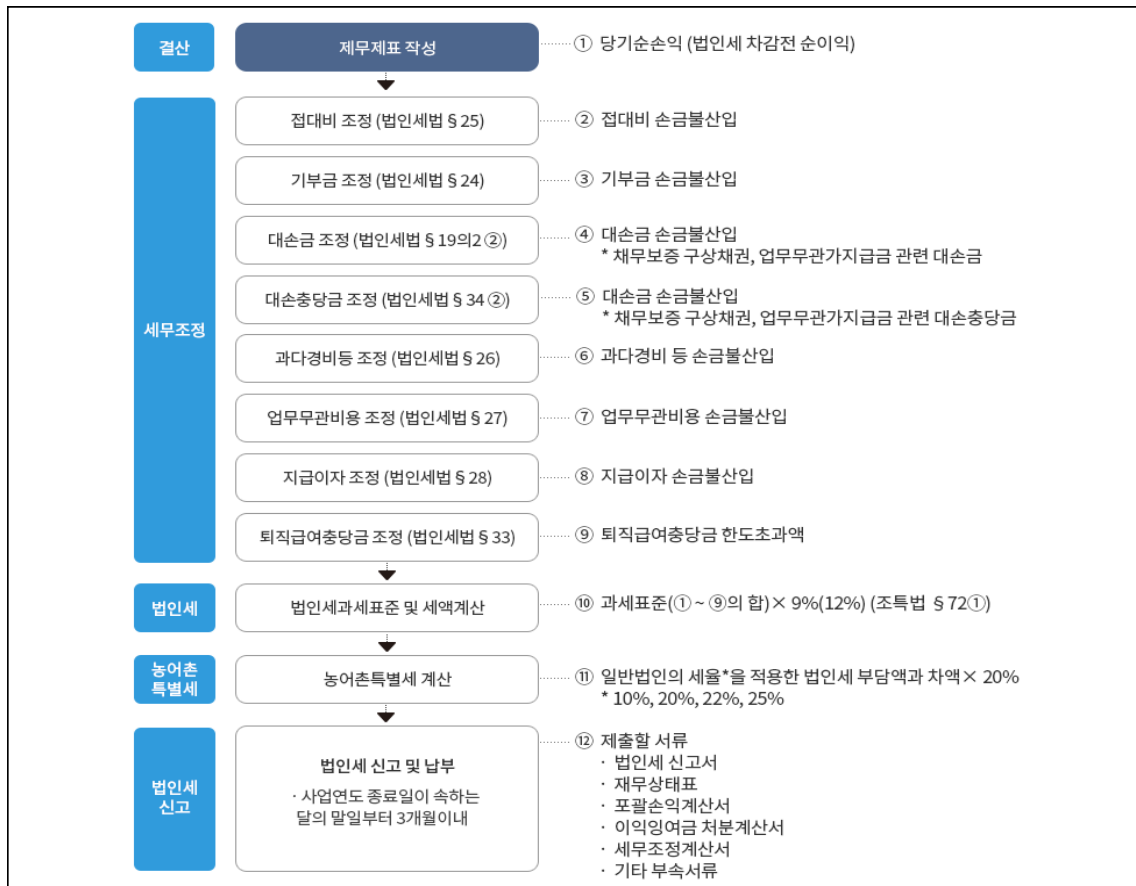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 도입
 - 1965년부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특례제도(세율 10%)로 운영되었던 제도가 당기순이익 기준 과세로 변경(1998. 12. 28.)되고 이후 일부 항목의 세무조정 추가(2000. 12. 29., 2013. 1. 1.) 등 제도 변화를 거쳐 현 제도로 발전
 - 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합법인들의 납세협력비용과 세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영리법인에 비해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조합법인들의 공익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 조합법인의 목적상 사업 가능 영역이 제한되어 있고 조직화 정도가 영리법인에 비해 취약하며, (중앙회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소규모의 관리조직으로 운영
 -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조정하여 조세를 부담시키는 것은 조합법인의 회계 부담을 증가시킴으로써 조합법인 활동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인식에 기초

가.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구조

-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우선 (i) 당기순이익 과세에 가깝게 법인세 과세 기준을 정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 차이 조정 관련 회계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ii) 낮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법인세 부담을 낮추는 2단계 조정을 통해 법인세 부담을 감경하는 구조
 - 조합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당해 법인의 결산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 8개 항목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 도출

- 세무조정(즉, 비용 불인정)항목은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 법인세액은 (법인세차감 전 당기순이익+ 8개 항목 세무조정) × (9%, 12%) + (농어촌특별세)에 따라 결정
 - 과세표준 20억원 이하는 9%, 초과분은 12% 세율 적용
 - 일반법인의 법인세율 체계는 2억원 이하/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3,000억원 초과로 구성(『법인세법』 제55조 ①항)
 - 당기순이익 과세법인 중 농어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단체가 아닌 법인*은 규정된 세율(10/20/22/25%)을 적용한 법인세 부담액과의 차액에 해당되는 금액에 세율(20%)를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농어촌특별세로 납부
 - * 신흥 및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의 경우는 농어업인 조합원 여부와 무관하게 농어촌특별세 납부 대상

[그림 III-1] 조합법인 과세금액 산출 및 신고 절차



자료: 국세청, 비영리법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0&cntntsId=7986>,
검색일자: 2022. 5.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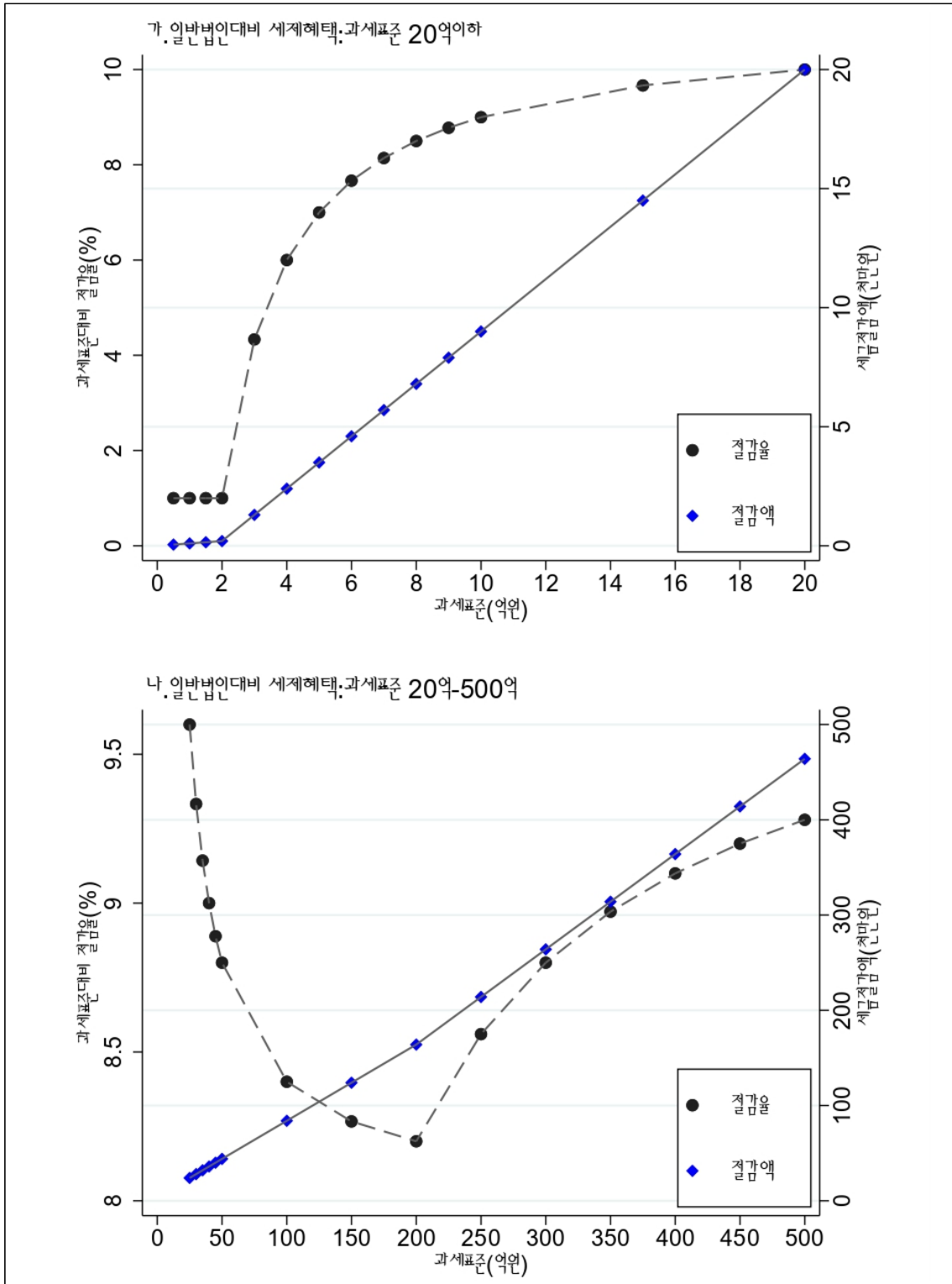
- 과표구간별로 보면 1%p(10%p - 9%p, 과표 2억원 이하)에서 11%p(20%p - 9%p, 2억~20억원), 8%p(20%p - 12%p, 20억~200억원), 10%p(22%p - 12%p, 200억~3,000억원), 그리고 최대 13%p(25%p - 12%p, 3,000억원 초과)까지 일반법인에 비해 1차산업 조합법인에 대한 한계세율 우대 혜택 제공
 - 전반적으로 조합법인의 매출 및 이익 규모가 클수록 동일 규모의 일반법인 대비 과세특례 크기(절감액)가 늘어나는 역진적 구조
 - [그림 III-2]의 상단 그림은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조합법인이 일반법인과 비교하여 과세특례로 인한 절감액과 절감률(과세표준 대비 절감액의 크기)를 제시
 - 절감액뿐만 아니라 절감률 기준에서도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과세특례의 크기가 역진적인 것을 확인함
 - [그림 III-2]의 하단그림은 과세표준 20억 초과 500억원 이하 조합법인²¹⁾의 과세특례로 인한 절감액과 과세표준 대비 절감률을 제시
 - 일반법인의 과세표준구간이 200억원에서 변화하기 때문에 절감액은 200억원을 기준으로 기울기가 변화함
 - 절감률의 크기는 200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억원을 초과 하면서 빠르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1차산업 외 조합법인의 경우 농어촌특별세로 인해 실효세율은 11% 정도²²⁾로 중소기업 실효세율²³⁾과 비교해 큰 격차가 나는 것은 아님

21) 500억원 이하로 과세표준을 한정된 것은 모든 조합법인의 과세표준이 500억원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임

22) 새마을금고 자료 기준(새마을금고중앙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일몰도래 국세 감면연장 건의」, 보도자료, 2022.)

23) 2020년 기준 13.3%(오윤, 「기업과세제도 개선방안」, 컨퍼런스 발표자료, 2021.

[그림 III-2] 과세표준금액에 따른 과세특례의 크기



주: 1차산업 조합법인의 일반법인 대비 과세특례의 크기를 제시
 자료: 저자 작성

나.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대상 및 규모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은 8개 유형으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으로 구성
 - 유형별로는 신용사업 관련으로는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 농수산업 관련으로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이 포함
 - 일반 생산활동 단체로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등이 있으며 소비자단체로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존재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로 인한 조세지출 규모는 2020년(잠정) 0.3조원(국회예산정책처, 2021 조세수첩)이며 이는 이후에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조합법인의 활성화, 대형화 등은 법인세 과세특례의 규모를 증가시키는 요인
 - 동 제도로 인한 조세지출 감면 규모는 법인세 감면항목 중 상위 7위에 해당
 - 이에 대해 현행과 같이 2단계로 세부담을 낮추어야 할 이유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존재(전병목·권성준, 2020)
 - 조합법인 활동을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 굳이 2단계의 법인세 부담 축소제를 시행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복잡성을 유발한다는 의견
 - 이와 같은 구조는 과거 당기순이익 과세에서 정상적인 세무 조정을 적용하려고 노력하는 중간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존재한다는 주장

2. 연구 목적 및 방법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에 의해 조세특례 심층평가 운용지침에 따른 의무심층평가 대상
 - 조세특례금액이 2021년 3,394억원, 2022년 3,693억원(전망)되어 의무심층평가 기준인 300억원을 초과하며, 지원액이 큰 제도로 평가 및 개선이 필요
 - 전병목·권성준(2020) 등 기존의 연구에서는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의 여러 문제점들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는 조합원들이 1차산업 종사자 등 정책적

지원 대상자라는 부분을 감안하여 제도가 유지되었음을 지적

- 현재 8개 유형의 조합법인(금융사업, 생산활동 등)에 적용되는 법인세 과세특례에 대하여 공익성에 대한 법적, 경제학적 근거와 조합원 지원에 대한 타당성을 기준으로 과세특례제도 정책목적의 타당성과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고, 향후 정부가 직접적으로 지원을 계속할 이유가 충분한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

□ 본 연구는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의 운영 제도의 정책목적에 바탕으로 정부 역할의 적절성, 지원 대상의 적절성, 지원 내용과 방식의 타당성, 제도 간 유사·중복성 여부 등을 법적, 경제학적 관점에서 분석

- 또한, 조합법인 종사자 및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 및 의견 청취를 통하여 조세당국 외 관련자들의 의견을 보완하고자 시도
- 인터뷰는 다음의 조합법인 관련자 및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수행
 - 농협, 수협, 신협 및 새마을금고 중앙회 소속 관련 실무 담당자
 - 농업경제학 전공 교수 및 관련연구기관 선임연구위원

3. 선행연구 검토

□ 국내 연구

- 전병목·권성준(2020),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심층평가』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분석결과, 조세지원의 타당성은 있으나 그 지원 수준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장 및 당기순이익 측면의 성과는 특례법인이 비교법인에 비해 낮아 조세 특례가 법인 성장 유인으로 작용하지 못함
 - 이에 따라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의 목적을 명확히 하고, 이에 기반한 개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제기
 - 조합원 지원제도로 발전시키고자 할 경우 보다 직접적인 조합원 지원제도로 제도를 조정할 필요성을 제안
- 전병목·류덕현(2017),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심층평가』
 - 영리활동을 영위하면서 활동분야에 제한이 거의 없어 공익활동과 연계성 약하며 조합원에 대한 지원 목적 운영

- 2014~2015년 기간 조합법인 순이익률 증가는 비교대상 법인보다 낮고, 수입 규모 100억원 이하 소규모 조합법인에서 두드러짐
- 당기순이익 과세의 일반과세 전환(단계적 세무조정 항목 확대), 이용고배당 손금산입 전환, 세무조정 항목 확대 방안 제안

□ 해외 연구

- Saz-Gil, I., Bretos, I., and Díaz-Foncea, M.(2021), “Cooperatives and Social Capital: A Narrative Literature Review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 협동조합이 지역 내부 사회적 자본을 창출하고 이를 지역에 확산하는지에 대하여 기존 연구 문헌들을 정리하였으며, 조직의 민주적 운영과 지역 밀착이라는 특성이 협동조합의 지역 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했다는 결론
- Garcia, A.V., M. Bastida, and M.A.V. Tain(2020), “Tax measures promoting cooperatives: a fiscal driver in the contex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 스페인 및 유럽에서 조합법인이 성장하는 데 있어 과세혜택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조합에 대한 과세혜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혜택을 일부 확장할 필요성을 제기함
- Caves, R. and B. Petersen(1986), “Cooperatives’ Tax Advantages: Growth, Retained Earnings, and Equity Rotation,”
 - 미국 상위 100개 조합의 재정데이터를 이용하여 조합을 위한 조세제도가 조합성장애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으며 1962~1980년 종합적인 세제혜택으로 저비용으로 자기자본을 확보할 수 있어 이들 조합이 큰 폭으로 성장

4. 정책목적 및 대상자 설정의 타당성

-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특례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과세를 소득이 발생한 시점에서 한 번만 할 것인가, 아니면 두 번(법인세 및 소득세) 할 것인가에 대하여 결정하는 문제와 유사
- 개인 수준에서 일어나는 경제행위를 협동조합에 위탁했다고 본다면 이는 내부적인 거래관계(즉,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가 아닌)로 볼 수 있고 그러한 한 번만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타당

- 조합법인 활동에서 창출되는 가치는 이윤(profit)이 아닌 잉여(surplus)의 개념이며, 가격에 의한 거래가 아니므로 사후정산을 통해 이익을 평가하기도 어렵고, 영리라는 개념을 적용하기도 어려움
 - 조합원과 조합과의 관계도 기업(고용/피고용 관계가 아님)과는 다르기 때문에 가령 중소기업과 매칭해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그런데,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지원 목적은 「조세특례제한법」상 법률 조항 등에서 명확히 규정된 바는 없음(전병목·권성준, 2020)
-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상 편제가 “공익사업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로 분류되어 있어 공익적 역할 수행을 목적의 하나로 간주할 수 있음
 - 법률적으로 조합법인의 공익적 기능 수행 여부는 조합법인을 규정한 개별법상 설립 취지와 기능(사업 내용)을 바탕으로, 조합법인의 목적이나 활동이 세법 등 기존 법률체계에서 정의된 공익기능에 부합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음
- 경제적으로는 조합법인의 활동이 과소 공급되는 공공재를 (중앙 혹은 지방)정부를 대신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공익적 역할에 포함할 수 있음
- 지역 사회에 특화된 투자들이 있고 타 사회적 기관과 더불어 사회적 기업에 포함이 되어 있으며 사회적 기업들 중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고 있음
 - Saz-Gil, I., Bretos, I., and Díaz-Foncea, M.(2021)은 조합이 지역 내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거나 혹은 사회적 자본이 조합의 발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내용의 연구들을 소개하면서 지역 사회에 특화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
 - 다만, 조합이 공공재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수행한다고 해서 반드시 지원이 필요한 공익사업이라고 결론내릴 수는 없음(가령 지역 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어느 수준까지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아야 하는가?)
 - 조합원에 대한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 또한 공익적 역할로 볼 수 있지만, 조합 구성원에 대한 제약적 규정이 있고, 정책에서 목표로 하는 지원 대상과의 조합과의 연계가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함
 - 조합원에 대한 자격은 제한되어 있으며, 조합원들은 동등한 의결권(1인 1표)을 보유함에 따라, 소액 투자 조합원들의 운영참여 인센티브를 강화
 - 자본 조달 측면에서도 출자금(equity) 외의 채권 등을 통한 방법은 불가능

- 다만, 준조합원 제도를 통해서 의결권을 제외하고는 조합원과 경제적으로 동등하게 출자 및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을 확장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지원 대상과 조합의 연계가 적절하지 않을 가능성도 존재

-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제시된 두 가지 정책목적, 즉 공익적 기능 수행과 조합원 지원을 기준으로 정책목적의 타당성과 달성 가능성을 평가
 - 조합원 지원 기능의 경우 조합원이 사회적으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 연계성도 점검

가. 법률적 검토

- 공익적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참조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은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세제혜택 대상 공익사업이 존재(전병목·권성준, 2020)
 -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는 공익법인의 정의를 “사회일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 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 규정
 - 즉 사회일반의 이익이라는 부분을 구체화하여 교육, 학술, 자선 등으로 공익사업의 범위를 축소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재산 이전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공익법인 등”을 규정하고 이곳에 출연한 재산에 대해서는 과세가액에 불산입
 -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에 불산입되는 “공익법인 등”은 종교, 자선, 학술 관련 사업을 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이 구체화(「상증세법 시행령」 제12조)
 - * 종교, 학교 및 유치원, 사회복지법인 사업, 의료법인 사업, 법정기부금 사업, 지정기부금단체의 고유목적사업, 지정기부금을 받은 자의 비친목 비영리 운영사업 등
- 전병목·류덕현(2017) 및 전병목·권성준(2020)은 조세특례 대상 조합법인의 설립 취지나 실질적 사업내용 등이 위의 관련 법률 규정에서 기술한 내용에만 의거할 경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제시
 - 이들은 또한 개별 조합법인 설립법을 보더라도 상호부조가 아닌 공익사업 수

행이 조합법인의 주된 설립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

- 현 시점에서 관련 법제가 특별히 변화한 부분은 없으며, 법률적인 검토 측면에서도 기존 연구들이 내린 결론과 동일한 결론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나. 경제적 검토

- 조합법인은 영업이익이 발생할 경우 배당 형태로 나가거나 개별법에서 정해진 사업 용도에만 투자 가능하고, 조합 외 여신 비중에 상한이 존재하는 등 효율성 추구에는 제약이 가해짐
 - 가령 여신 업무는 행안부 지도에 따르며, 조합원 대출이 우선이고 비조합원 대출은 예외적이며 취급 한도 존재. 또한, 동일 차주에 대한 한도도 존재함
 - 다만, 많은 여수신기관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조합원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 역할의 중요성이나 공익성이 이전과 같을 수 있을지는 의문의 여지
 - 반면, 금융기관들이 점차 지점을 줄여나가고 온라인화되는 상황에서는 금융 격차 해소를 위하여 대도시 지역이 아닌 곳에서 오프라인으로 영업하는 곳의 역할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시각도 존재하며(황순주, 2022), 인구 밀집지역이 아닌 곳에서의 대면서비스 제공이 갖는 공익성에 대해서 인정할 필요 있음
 - 또한, 조합법인 관련자 심층 면담 내용에 따르면 실제로는 재정이 투입되어야 할 (지방)정부의 사회 서비스나 지역사회 인프라 개선 사업도 협동조합을 통하여 수행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만, 해당 사업의 크기나 비중 등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은 비영리성 사업의 내용들에 대한 보다 자세한 회계 자료가 필요하며, 현재는 이를 확인하기 어려움
- 또한, 조합법인은 영리성 사업에 마음대로 진입할 수 없고, 개별 설립법에서 규정된 분야에서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 공익성을 강제받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음
 - 더욱이, 정부의 법인세 완화 추진이라는 기초를 고려한다면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정책적으로도 일관성이 결여됨

- 다만,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의 중요 목적 중 하나가 조합법인에 참여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한 간접적 지원(전병목·류덕현, 2017 및 전병목·권성준, 2020)이라고 해석한다면, 조합원 자격요건을 통해 지원 대상 계층과의 연계가 어느 정도 긴밀한지를 평가할 필요
 - 즉, 해당 과세특례의 목적을 조합법인 활동을 통해 참여 조합원의 경제상황을 개선시키는 조합원에 대한 지원제도로 인식할 수 있음
 -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조합법인 과세특례가 단순한 구성원에 대한 지원인지 정책적으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대상과 연계된 것인지 검토할 필요

다. 조합법인별 공익적 목적 수행 여부 및 구성원 자격요건과 지원 대상의 연계 정도 평가

- 개별 조합법인에 대한 공익 목적 수행 여부 및 구성원 자격요건-지원 대상 연계에 대한 평가는 전병목·권성준(2020)에서 자세하게 수행했으며 여기서는 각 조합법인별로 수행하는 공공서비스 사업의 일부 내용 소개를 중심으로 서술
 - (신용협동조합) 복지사업 및 조합원에 대한 금융 지원 기능이 중심이며, 세 가지 사회 복지사업의 수행 가능-어린이집, 장애인복지시설, 문화후생사업(취미교실, 체력단련 등)
 - (새마을금고) 회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이 설립 목표이며, 지역 사회개발사업(농자재 판매, 장학사업, 장의업 등), 소상공인 지원센터, 지역특화사업(전주 한지사업 등) 등이 사업 내용에 포함
 - 햇살론, 고용위기 지역 특별지원, 지역내 둘레길 조성, 도서관 설립, 취약계층 통학 및 제설차량 지원 등 공공재 성격이 강한 사업도 수행
 - (농업협동조합(축산업협동조합 포함)) 농업 및 축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 향상이며, 조합원들의 제조·가공·판매 등을 위한 교육지원, 경제, 및 신용 사업 등으로 농업(축산업)인의 경제적 활동을 지원
 - (수산업협동조합) 조합원을 위한 교육 지원사업, 경제사업, 신용사업 등이 중심이고 농협과 마찬가지로 경제적 활동 지원이 목적이지만, 해안환경 정비 등 원칙적으로 지자체가 수행하는 일들을 수협이 대신하는 경우도 존재하며, 종자 방묘 등 수산자원 유지 작업도 조합이 수행

- (중소기업협동조합) 설립 취지는 정책적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하는 것으로, 기존의 다양한 중소기업 우대정책의 연장선상으로 판단 가능
 - (산림조합) 설립 취지는 농협, 축협, 수협 등과 유사하게 산림 소유자와 임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
 -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설립 취지는 역시 1차산업인 잎담배 경작자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 향상이며 사업 내용 역시 잎담배 경작자 지원정책
 - 다만, 건강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및 그로 인한 비용을 고려한다면, 잎담배 국내경작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전반적 공익에 부합하는지는 검토 필요
 -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취지는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과 이로 인한 국민 복지 등 일반적인 목적
- 협동조합의 사업 영역에는 신용사업, 경제사업(가공, 유통 등), 교육지원사업(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모든 사업) 등이 있으며 공익성 부분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제외한 지도사업 혹은 교육지원사업 등이 대부분 포괄한다고 볼 수 있음
 - 예컨대 농협의 경우 조합원 복리후생을 위한 현물 지원(의료 등), 영농활동 지도사업비, 농기계나 농약, 주부 견학 및 평생교육 등이 있음
 - 조합들이 수행하는 다른 사업들과 달리 신용사업은 비조합원, 즉,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포괄하는 영리행위라는 점에서 차이
 - 신용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이 교육지원 사업 등 현금흐름이 발생하지 않는 공익사업의 비용을 지원해주게 되는 구조
 - 농협을 예로 들면 중앙회는 「상법」상 지주회사인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를 소유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지주는 주식회사지만 조합법인에 준하여 대우하는 것으로 「농협법」에 규정되어 있음
 - 이 경우 교육지원 사업은 비용처리를 해주는 반면, 일반기업의 경우는 영업활동에 수반하는 비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음
 - 즉, 교육지원사업 비중이 클수록 협동조합의 이익과 부과되는 세금의 크기가 줄

어떻게 된다는 의미

- 조합원 배당은 세금/세율이 적기는 하지만 비과세는 아님
- 교육지원 사업의 많은 부분이 공공성에 해당되기는 하지만, 비용처리를 해주고 다시 법인세에서 저과세로 가야 하는지의 문제는 남아있음

□ 결국, 조합법인에 대한 적절한 법인세율을 결정하는 것 외에도 “공익성을 인정받고 비용처리가 되는 교육지원 사업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가?” 또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됨

- 이에 대한 고려 없이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혜택을 일몰한다면, 1차산업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불필요한 교육지원사업 지출이 늘어날 수 있음
- 또한, 만일 해당 특례가 일몰될 경우 1차산업 외 협동조합들이 조세 혜택 크기에 따라서 납부하던 농어촌특별세가 지속될 근거도 사라지고, 이는 국가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또 다른 부담을 일으킴

□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의 목적 중 하나가 조합법인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이라는 입법 인식을 감안할 때, 조합원 요건의 타당성 또한 공익성 판단에 중요한 요인이며, 이 부분에서 조합법인들 사이에 차이점이 존재

- 농협, 수협, 산림조합, 엽연초조합의 경우 조합원 요건이 기존의 1차산업 종사자 지원제도와 유사한 정책 대상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조합원 요건 역시 중소기업 지원제도와 유사한 정책 대상을 포괄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반면, 신협,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협회의 경우 조합원 요건의 제한도 지역이나 소속기관 외에는 거의 없기 때문에 지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취약계층과의 정책적 연계성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음

□ 비조합원 대상 신용사업은 엄격하게 1/2 이하 규모로 제한을 두고 있지만 대부분의 조합에는 준조합원이 존재하며 준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도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간주함

- 「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원과 준조합원을 구분하고 있으며, 법체계상 준조합원은

선거권은 없지만 경제적으로는 조합원과 동등한 지위

- 그러나, 조합의 설립취지만을 고려한다면 준조합원에 대한 신용사업은 사실 비조합원 대상으로 간주되는 것이 보다 타당함

□ 그러나, 비조합원 대상 사업부분이 1/2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 제약하에서는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등의 문제로 인하여 조합원 수가 감소할 경우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도 있으며, 준조합원의 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조합의 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상황

- 가령 예탁액의 경우 농협이나 수협은 준조합원 예탁액이 80%를 넘어가며, 신탁도 50%를 초과(『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그런데, 준조합원에 대한 혜택은 사실상 원래 취지에 벗어난 혜택에 가까움
- 이로 인하여 갈수록 준조합원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문제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해관계에서 가장 큰 부분이자 더 복잡한 문제가 됨
- 준조합원 예탁에 대한 비과세 제도 일몰 같은 문제가 대표적으로 현재 3,000만 원까지 비과세인데 수익의 원천이 어떻게 조성되는가? 그것이 협동조합의 원칙에 맞는 활동의 결과인가? 등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 각 협동조합을 규율하는 모법에 따른 이익금 처분방식에도 조합들 사이에 차이가 존재

- 대표적 1차산업 생산자 단체인 농협, 수협, 산림조합의 경우 이익금 배당에 있어 사업이용실적에 따른 배당을 최우선 순위로 배당
 - 납입 출자금에 따른 배당은 정관에서 정한 비율 한도 내에서 시행하며, 3순위로 준조합원(협동조합 중앙회 직원 등)에 대한 사업이용실적 배당 시행
 - 이러한 사업이용실적 중시 배당방식은 조합법인의 수익 배분이 기존의 납입 출자액 격차보다 줄어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1조합원 1의사결정권 제도와 함께 납입 출자액이 적은 영세 조합원이 조합활동에 결속력을 가지도록 하는 요인이 될 수 있음
-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1차산업 생산자 협동조합과 유사한 이용실적 배당 활용을 강제하는 제도 운용

- 이용실적 배당을 총배당의 50% 이상으로 강제하면서 사실상 최우선순위 배당으로 규정하며, 납입 출자금에 대한 배당 수준은 시중금리 수준 이내로 제한하여 조합활동 활성화에 중점
-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경우, 납입 출자금 배당을 기본으로 하되 이용실적 배당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규정
 - 이는 앞서 사례들과 달리 조합법인에 대한 조세특례로 인한 수익성 개선 효과는 먼저 납입 출자금에 비례하여 배분된다는 의미
 - 이러한 납입 출자금 중심 배당구조는 납입 출자금에 관계없이 1조합원 1의 사결정권 구조를 채택하여 조합원 참여와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협동조합의 설립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음(전병목·권성준, 2020)

라. 정리

- 협동조합별 설립 취지와 사업 내용, 그리고 조합원 요건 등을 분석한 결과, 협동조합 유형에 따라 정책목적과 정책목적에 부합하는 대상 설정 타당성에 조금씩 차이가 존재
 - 8개 유형 조합법인들의 설립 취지 및 사업 내용 등이 「공익법인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설립 목적은 아니라고 보아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신협, 새마을금고 등 다수 조합법인은 돌봄이나 교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 교육 및 지도 사업, 산책길 정비 등의 소규모 인프라 개선 등과 같은 공공재 공급 등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사실
 - 산책길 정비 등과 같이 사업에 따라서는 정부 재정이 투입되어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를 대신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음
- 다만, 주로 교육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들 중 “공익성을 인정받고 비용 처리가 되는 사업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이 필요
 - 일반 기업과는 달리, 교육사업 등 협동조합의 공익성 사업들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가 되며, 이는 조합법인 과세특례 일몰이나 세율 조정을 시도하더라도 그에 따른 세수증대 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설립 취지를 고려한 비조합원 대상 사업의 크기가 1/2 이하로 유지되어야 하는 제약, 인구 감소 및 지방 소멸 등의 문제로 인한 조합원 수 감소 문제 및 준조합원 확장의 불가피성, 이로 인한 정책 취지를 벗어난 정책 수혜 대상에 대한 세제 지원 발생 등의 문제 발생
 - 조세 혜택 제공 대상의 타당성과 인구 구조 변화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는 (특히 1차산업) 조합법인의 공익적 활동 지원 사이에서 정책 목표가 상충될 수밖에 없는 상황

5. 정책수단 적절성

가. 공익적 활동 지원수단

- 협동조합들은 조합원 지원을 설립 취지로 하고 있고 사업 내용도 기본적으로는 이러한 조합원 활동 지원 등에 초점
 - 세법에서 정의하는 종교, 교육, 자선, 사회복지 등의 관점에 부합하는 조합법인의 활동은 많지 않으며, 이를 요구하는 것도 협동조합의 설립법 취지와는 맞지 않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공익적 관점에서 조합법인을 지원해야 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의견도 존재(전병목·권성준, 2020)
- 반면, 협동조합들은 개별법에서 정해진 사업 용도에만 투자 가능하고, 조합 외 여신 비중에 상한이 존재하는 등 효율성 추구에는 제약이 가해지게 되어 있으며,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이 중단된다면 이러한 제약 또한 완화되어야 함
 - 이 경우 지역 혹은 단체를 중심으로 조합원 간 상호부조를 통한 사회적,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조합법인의 설립 목적 자체가 퇴색될 가능성도 존재
 - 다수의 조합법인들의 사업이 정부 행정력의 상대적 사각지대에서 수행되고 있다는 측면도 존재. 가령 금융업의 경우 일반 금융기관은 60%가 수도권에 위치한 데 비해, 조합법인은 70%가 지방에 분포하고 있음
 - 이는 지방자치 및 최근 문제가 되는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른 금융소외 문제의 완화 측면에서라도 필요한 부분(황순주, 2022 등)

- 지원수단의 적절성 평가결과는 그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먼저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정책 측면에서 본다면 형평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문제점이 있는 제도라고 볼 수 있음
 - 조합법인 지원제도를 공익성을 갖는 1차산업에 대한 지원제도로 이해할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등에 비해 높은 수준의 조세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조세 형평성 문제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기재부가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축소를 적극 추진하는 원인으로 작용
 - 반면, 협동조합의 경우 사업영역이 제한되어 있으며, 단기 순익 과세 제도가 납세까지 과정을 편하게 해주는 효과는 있지만, 대신 영리법인에 적용되는 이월결손(loss carryforward)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과세 형평의 문제는 크지 않다는 반론도 존재
 - 위의 두 주장이 논리적으로는 모두 타당성이 있지만, 공익적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점에서 본다면 현 조세특례제도는 공익적 내용을 확인하는 수단(회계 등)이 결여되어 있으며, 공익사업 효율성에 대한 제고장치도 부족하다고 보아야 함

- 보다 장기적으로는 (세무) 회계 분리를 통하여 현행 순이익 과세 기본에서 중소기업 등과 유사한 과세 소득을 산출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성에 대하여 제고할 동기를 부여할 필요
 - 다만, 인터뷰를 수행한 전문가 및 관계자 중에서는 회계 분리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수행비용(complicance cost)에 비해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
 - 이 경우, 교육지원사업 지출액 전액이 아닌 적정 비율을 곱한 수준에서만 비용 처리를 인정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보편적 통신서비스 제공(KT에 부과됨) 역무가 유사한 방식을 취함

나. 조합원에 대한 지원수단

-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조세특례제도의 주요 목적 중 하나로 간주할 경우, 조합원이 국가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대상으로 적합하게 설정되어 있는지를 중심으로 전반

적인 정책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할 수 있음

- 1차산업(농림수산업) 종사자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 조합법인 지원은 경제활동의 균형이라는 국가 정책목표와 부합하는 지원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볼 수 있음
- 신협,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협 등 다른 유형의 조합법인들은 조합원 자격에 대한 설정에 있어서 기존 국가정책과의 관련성이 보다 떨어짐
- 앞서 말한대로 농협, 수협, 신협 등 다수의 조합에서, 경제적으로 조합원과 동등한 자격을 부여하지만 지원 대상과의 일치성은 떨어지는 준조합원의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런데, 지방의 인구감소 추세를 감안한다면 준조합원이 없다면 조합의 신용 활동 자체가 불가능해질 가능성도 있어서 쉽지 않은 문제이며, 실제로 2021년 준조합원의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에 대한 일몰 시도가 격렬한 반대에 부딪치면서 실패로 돌아감(2년 추가 연장 결정)

□ 조합원 배당정책의 기준 중 이익금에 기여한 활동 중심의 이용실적 비례배당이 단순 납입 출자액 기준의 배당에 비해 정책 지원의 대상과 수혜 대상 사이의 차이를 줄일 것이라고 기대할 수 있음

- 조합법인 자체는 영세 사업자들의 지원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는 협동조합을 규정한 모법에서 의사결정권을 납입 출자액 또는 출자구좌 수에 관계없이 1조합원 1표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
- 이러한 협동조합의 운영원리를 감안할 때 이익금에 대한 배당 역시 조합의 이익창출 활동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배당하는 이용실적 배당을 어느 정도 활용하는가에 따라 조합원 지원 기능을 평가할 수 있음
- 이용실적 비례배당은 공급자로서의 자본투자액보다 협동조합 활동의 수요자로서 당년도 이익 창출에 기여한 정도를 반영하는 배당으로, 영세 조합원을 배려하는 정책
 - 주요 선진국들도 협동조합의 이용실적 배당에 대해 세제혜택 제공
- 또한,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는 준조합원에 대한 경제혜택을 차등화함으로써 지원 대상을 정책방향과 보다 일치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6. 지원 수준의 적절성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병목·권성준(2020)의 연구와 비교해볼 때, 해당 결과가 도출된 상황이나 결론의 대부분이 현재에도 유지된다고 판단하며, 해당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서 정리 및 정책 제언만 제시

가. 공익적 활동 및 조합원 지원수단

- 조합활동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비영리 및 공익 관련 활동으로 규정된 법인에 대한 지원 수준보다 느슨하게 규율됨은 물론, 보다 큰 규모의 조합법인에게 유사한 크기의 기업 대비 혜택을 더 주는 구조라고 볼 수 있음
 - 비영리/공익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할 때,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일반법인과 동일하게 법인세 과세하는 반면, 조합활동으로 인한 수익에 대해서는 일반법인에 비해 법인세율 1%p(2억원 이하), 8%p(200억원 이하), 10%p(3천억원 이하), 13%p(3천억원 초과) 낮은 세율이 적용(전병목·권성준, 2020)
- 일반 영리법인 대비 협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금전적, 비금전적 지원 수준은 조합법인의 조합원들에 대한 지원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비교 및 검토할 수 있음
 - 비영리단체인 기부금 모금단체가 기부를 받을 경우, 기부자에게 소득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
 - 총소득의 일정 범위 내에서 기부금액의 15%를 세액공제하며, 1천만원 초과 시 초과분은 30% 공제
 - 금전적 지원 수준을 보여주는 조합법인의 배당성향은 일반 상장법인의 32.4%(코스닥)~41.3%(코스피)와 유사한 26.9%(산림조합)~44.0%(농협) 수준으로 나타남(전병목·권성준, 2020)
 - 조합원과의 거래에 비례하여 배당하는 이용실적 배당비율도 농협과 수협을 제외하고는 20% 미만으로 제한적으로 활용
 - 다만, 이는 제도의 문제라기보다는 조합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문제
 - 조합원의 경우 배당 및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1천만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로 14%p인 원천소득세율을 감면하며, 금액의 크기를 고려할 경우 개별 조합원에

대한 비과세 수준은 비영리, 공익 법인에 대한 지원과 크게 차이난다고 보기 어려움

- 조합원에 대한 재정지원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나라는 추가적으로 소액배당소득 및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제도를 유지
 - 구체적으로 조합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1천만원 이하)에 대한 비과세와 조합 등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2023년: 5% / 2024년~: 9% 예정 분리과세) 제도 운용 중
 - 해당 조합은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5개 유형
 - 해당 비과세 제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의한 일몰 시도와 그에 따른 반발 및 법제화 요구, 그리고 특례 2년 연장이라는 타협이 반복되는 상황

나. 정리 및 제언

-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 수준은, 국내 다른 공익단체와의 비교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지원 대상의 범위가 아닌 조합원에 대한 지원 수준 자체는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
 -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활동결과에 따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때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함
 -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세율 적용 이외에도 당기순이익 과세를 통해 세무조정 비용을 줄여주는 2단계 방식으로 조합법인 자체를 지원하는 부분이 존재
 - 조합원에 대한 지원 수준은 개별 조합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 명확한 비교는 어려움
 - 외국은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법인세를 면제하는 형태이므로, 법인세율 수준의 지원(즉 법인단계 세부담을 제거하는 방법으로)이 이루어짐
 - 반면 우리나라는 낮은 법인세율 적용으로 법인세 부담이 남아 있으나, 배당 및 이자에 대해 개인소득세 부담을 면제해 주고 있어 개인소득세 한계세율에 따라 지원 수준이 달라짐
- 만약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를 조합원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운용한다면 직접적이며 정책효과를 유도하기에 더 바람직한,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으로

단순화할 필요

- 현 조합법인 법인세 감면을 통한 조합원 지원은 조합의 이용실적 배당금 결정 관행 및 매커니즘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운영된다면, 그 수준은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한 다른 기관에 대한 지원과 비슷하게 유지할 필요
-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 분리를 통한 세무회계 적용, 조합원 외 대상 사업 이익에 대한 일반 법인세 적용, 공익사업의 효율화 제고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특히, 준조합원 및 비조합원 대상 사업에 대해서는 일반 영리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일반 기업에 준하여 회계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도 타당
 - 또한, 비조합원 대상 사업 크기를 1/2로 제한한 이유와 이로 인한 문제점(인구 감소로 인한 조합 지속 불가능성 문제를 비조합원 확대로 편법적 해결)을 현실적으로 타협한 방안
 - 이 외에도 전병목·권성준(2020)에서는 중소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조합법인에 대해 일반과세로 전환하는 것을 제안했으나, 이 경우 상대적으로 시/군/구 단위로 조합이 존재하는 수협이 읍/면/동 단위로 존재하는 다른 조합법인에 비해 정책 의도와 무관하게 불리하게 되는 상황
 - 다만, 현재의 조합법인 법인세 부과방식은 혜택이 유사 규모의 기업과 대비하면 역진적(즉, 조합법인이 클수록 유사규모 기업 대비 받는 혜택의 크기도 증가)으로 제공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세율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7.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성

- 정책 대상 측면에서 조합법인 법인세 특례와 유사한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재정 사업은 3건 정도로 파악
- 농림축산식품부의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지원(「조특법」 §121-23), 수협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조특법」 §121-25 제4항, 제7항, 제8항)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조특법」 §16) 등
 - 국회예산정책처(2021 조세수첩)에 따르면 감면액 규모는 2021년(전망) 기준 각

573억원(농협중앙회 구조개편) 및 50억원(수협중앙회 구조개편)

-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은 감면액 관련 자료가 없으나 2021년 출자액 6,278억원 중 개인 출자액 5,763억원, 출자자 수 16,781명 수준에(중소벤처기업부, 「21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실적 달성」 보도자료, 2022. 2. 8.)에 달한 점을 고려한다면 소득공제로 인한 감면액 규모가 1,2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

* 한계세율 24% 및 100% 공제액 한도인 3천만원을 모든 개인출자자들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여 추정하면 $0.24 \times 0.3 \times 16,781 = 1,208.2$ (억원)

- 농협중앙회 및 수협중앙회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등은 개별 조합이 아닌 중앙회가 대상이며, 중소기업창업투자 조합도 중소기업이 아닌 투자조합의 조합원에 대한 지원으로 기존 조세지원과 중복성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있음

- 농림축산사업부 사업은 농협의 사업구조조정 관련으로 협동조합 활성화 또는 조합원 지원의 조세지출 목적과의 상당한 거리가 있으며 사업구조 개편 시 부 족자본금 충당을 위해 발행한 농업금융채권 이자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지역조합 지원 또는 조합원 지원과의 연관성이 약함

-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특례 또한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투자 자에게 조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과세특례와는 정책 대상이 다름

- 식량안보 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농어업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 시행 중(「조 특법」 제66조, 제67조, 제68조)

- 필수적인 식량자원 확보 등을 위해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일정 수준 내의 농업, 어업소득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존재하므로, 높은 수준의 지원 필요성은 크지 않음

- 경쟁력 있는 농어업경영체 육성을 위해 제정된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과 그 외의 소득 중 일부에 대해서는 법인세를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 소득 중에서 조합원 1인당 연간 1,200만원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 면제
- 또한 조합원 배당소득에 대해서도 1,200만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하고, 그 이 상은 5%로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 영농조합법인을 농업회사법인(합명, 합자, 유한책임, 유한, 주식회사 등)으로 전환하더라도 식량작물재배업소득은 법인세를 감면하고, 그 외 소득은 5년까지 50% 감면, 그리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배당은 개인소득세 면제
- 영어조합법인에 대해서도 조합원 수 1인당 연간 1,200만원의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고, 조합원의 배당소득 역시 1,200만원까지 면세, 그 이후 5% 분리과세로 과세 종결
- 또한, 최근 국제정세 및 기후변화 등 외부적 여건 변화와 더불어 식량자급의 전략적 중요성이 증가했음을 감안한다면 식량작물재배업과 그 외 1차산업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에 대해 추가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존재

8. 정리 및 제언

- 협동조합에 대한 조세특례 자체는 전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전면적으로 거둬들이는 것은 이론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적절하지 않음
 - 개인의 수준에서 일어나는 경제행위를 협동조합에 위탁했다고 본다면 이는 내부적인 거래관계(즉,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경제행위가 아닌)로 볼 수 있으며, 조합법인 활동에서 창출되는 가치는 이윤(profit)이 아닌 잉여(surplus)의 개념이므로, 이익을 평가하기도 어렵고 따라서 영리 개념을 적용하기도 어려움
 - 조합원과 조합과의 관계도 기업과 종업원 간 관계와는 다르기 때문에 기업과 동일한 선상에서 보는 것이 적절하지 않음
 - 또한, 법인세를 감면하려는 신정부의 정책기조와도 일치하지 않음
- 조합원 외 대상 사업에서 얻는 이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를 적용하고,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 수준을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한 다른 기관에 대한 지원과 비슷하게 유지할 필요
 - 비조합원 대상 사업 크기를 1/2로 제한한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이로 인한 문제점(인구 감소로 인한 조합 지속 불가능성 문제를 준조합원 확대를 통해 우회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현실적으로 타협한 방안
 - 비조합원은 물론 준조합원 대상 사업의 경우도 조합법인의 설립취지를 감안한

다면 일반 영리사업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면 일반 기업에 준하여 회계 및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타당

- 또한, 현재의 조합법인 법인세 부과방식은 혜택이 유사 규모의 기업과 대비하면 역진적(즉, 조합법인 클수록 유사규모 기업 대비 받는 혜택의 크기도 증가)으로 제공되는 만큼, 이를 반영하는 조정이라는 점에서 타당

□ 보다 장기적으로는 (세무) 회계 분리를 통하여 현행 순이익 과세 기본에서 중소기업 등과 유사한 과세소득을 산출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성에 대하여 제고할 동기를 부여할 필요

- 다만, 인터뷰를 수행한 전문가 및 관계자 중에서는 회계 분리가 어려우며, 이루어진다고 해서 수행비용(complicance cost)에 비해 세수가 증가할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제기
- 대신, 전액이 아닌 적정 비율을 적용하여(가령 90%)에서만 비용 처리를 인정하는 등의 방식을 도입하여 공익사업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에 대한 지원 목적이 더 크다면 직접적이며 정책 효과를 유도하기에 더 바람직한,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으로 단순화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음

- 현 조합법인 법인세 감면을 통한 조합원 지원은 조합의 이용실적 배당금 결정 관행 및 방식(이용금액별 vs 납입금액별)에 따라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 필요하다면 비조합원에 대한 조세혜택을 이 부분에서 제공할 수도 있음

IV. 효과성 분석



IV. 효과성 분석

- 조합법인 조세지원 효과성 분석을 위한 성과지표 논의
 - (지원 취지)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합법인들의 납세협력비용과 세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영리법인에 비해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조합법인들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공익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
 - 원론적으로 조세지원이 효과적이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당 지원을 통해 이루어진 공익성 증진 여부를 살펴보아야 함
 - 김학수 외(2014)는 이러한 이유로 공익성 증진 여부를 전문가집단 심층면접(FGI)을 통해서 검토하였으나 공익성 개념의 포괄성 그리고 평가방법의 한계 등으로 조합원들의 공익성 증진 여부가 직접적으로 검토되지 못함(전병목·류덕현, 2017)

- 본 분석에서는 전병목·류덕현(2017)과 유사하게 조합법인들의 활동이 공익적²⁴⁾이라는 전제하에 공익적 활동의 증대를 위해 사용되는 Input(자본)을 성과지표로 정의함
 - 따라서 조합법인 조세지원이 지원받은 법인의 영업이익이 증가시켰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효과성 평가의 1차목표로 함
 - 이러한 접근방식은 조합법인의 활동이 공익적이라는 전제에 기반한 것이기 때문에 전제의 타당성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보완적으로 조합법인의 성과 변화가 조합원에게 미치는 효과를 검토하고자 함
 - 단 정량적 분석이 어렵기 때문에 설문조사를 통하여 조합법인의 경영성과 개선 등의 변화가 조합원의 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
 - 최종 정책 대상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조합법인의 경영성과 변화로 인한 조합원에 혜택에 대한 분석을 수행

24) 공익성은 타당성 분석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정의됨

- 전병목·류덕현(2017), 전병목·권성준(2020)은 조합법인 조세특례의 효과성 분석에서 수혜법인과 비수혜법인의 성과에 대한 횡단면 분석을 수행함
 - 두 연구는 수혜그룹의 비교대상인 비수혜그룹의 설정에서 차이가 존재하는데 전병목·류덕현(2017)은 조합법인 중에서 과세특례를 선택하지 않은 조합을 비교대상으로 설정
 - 전병목·권성준(2020)은 과세특례의 대상이 아닌 법인 중 유사업종·유사규모의 법인을 비교대상으로 설정

- 비교대상의 차이는 이용 가능한 자료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며 편의 없는 추정의 관점에서 두 방법의 장단점이 존재
 - 조합법인 중 과세특례를 선택하지 않는 조합을 비교대상으로 설정하면 동일한 업종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해당 특례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비교대상 법인의 관측가능하지 않는 특성이 해당 특례를 선택한 법인과 이질적일 가능성이 존재
 - 반면 조합법인이 아닌 법인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해당 법인들은 조세특례에 자격이 없기 때문에 선택편의 문제에서 보다 자유로울 수 있음
 - 단 조합법인과 비조합법인의 여러 측면에서의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두 그룹의 비교는 이러한 특성차이를 고려해야 함

- 따라서 선행연구에서는 수혜법인과 비수혜법인의 성과 비교 시 두 집단의 특성이 다름을 고려하기 위해 유사한 특성을 가진 업체들로 비교그룹을 한정함
 - 다만 관측가능하지 않는 특성 측면에서 두 그룹 간의 차이가 여전히 존재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세특례의 수혜법인과 비수혜법인 간의 횡단면적인 비교는 추정편의를 수반할 가능성이 존재함

- 본 분석에서는 법인의 고유한 특성을 제거하기 위해 패널데이터의 활용을 고려하였으며 패널데이터를 활용한 과세특례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 과세특례의 세율 인상 이벤트가 조합법인의 성과에 끼친 영향을 분석함
 - 전병목·권성준(2020)도 관측가능하지 않는 특성이 효과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고정효과 모형에 기반한 이벤트 스터디 분석을 추가로 수행함
 - 본 연구는 전병목·권성준(2020)과 다른 식별전략을 사용하여 세율 인상에 따른

법인의 성과를 분석하였고 세율 인하에 따른 법인의 성과 역시 추가분석함

1. 세율 인상이 조합법인의 성과에 미친 효과

- 2015년부터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세율이 기존 9% 단일세율에서 과세표준 20억원을 초과하는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12%로 인상하는 2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됨
 -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세율 인상이 조합법인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조합법인에 제공되는 과세특례가 조합법인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고자 함

가. 식별전략

- 선행연구는 2015년 세율 인상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조합법인의 성과지표와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비영리법인의 성과지표를 비교
 - 세율 인상에 따른 효과식별을 위해 해당 연구는 조합법인과 비조합법인 간의 세율 인상 전의 종속변수의 추세가 동일하다는 가정에 기반(공통추세 가정, Common Trend Assumption)
 - 비조합법인 중 조합법인과 적절한 비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유사업종 및 유사수입금액을 가진 대상을 비교법인으로 한정함
 - 다만 조합법인은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등 특수한 기능을 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비영리법인과 설립목적이 같다고 할 수 없음
 - 따라서 비록 유사업종(산업분류에 따른) 및 수입금액의 규모가 유사하더라도 비영리법인이 적절한 통제그룹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존재함
 - 본 분석에서는 선행연구와 달리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합법인 중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조합법인을 통제집단으로 설정하여 세율 인상에 따른 효과를 추정하고자 함
 - 선행연구와 다른 변이를 활용하여 식별하기 때문에 추정결과가 모형의 식별가정에 따라 유사하게 추정되는지 살펴볼 수 있음

- 수입금액 20억 이상 조합법인에 적용된 세율 인상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5년 기준 전후의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수식을 활용하여 분석함

$$\frac{y_{it} - y_{i2014}}{y_{i2014}} = \alpha_t + \beta_t \text{처치법인}_i + \gamma_t X_{i2014} + \epsilon_{it} \quad \text{식 (1)}$$

where $i = 2012, 2013, 2015, 2016$

- y_{it} 는 법인 i 의 연도별 종속변수의 값을 의미하며 수입금액, 결산서상 당기순손익, 산출세액을 포함
- $\frac{y_{it} - y_{i2014}}{y_{i2014}}$ 은 2014년 대비 종속변수 변화율이며, 극단치가 추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종속변수의 값이 하위 1%에서 상위 99%의 값을 가지도록 윈저화(winsorization)
 - 모형 (1)은 연도별로 2014년(2015년 세율 인상이 적용되기 직전 마지막 연도) 대비 사업체별 종속변수의 증가율의 차이가 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는 처치 집단 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

- 처치법인 i 은 사업체별 2012~2014년 과세표준금액의 평균값에 의해 결정됨
 - 본 분석에서 가장 선호하는 모형에서는 3년(2012~2014년) 평균 과세표준금액이 15억 미만인 조합법인을 통제집단으로, 3년 평균 과세표준금액이 25억원 이상인 조합법인을 처치집단으로 설정함
 - 3년 평균 과세표준금액이 15억 이상 25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조합법인을 분석 표본에서 제외한 이유는 해당 구간에 속한 조합 법인들은 세율 인상에 따른 비용 증가 부담에 대응하기 위해 과세표준금액을 조정할 유인이 존재함
 - 예를 들어, 3년 평균 과세표준금액이 19억원인 조합법인은 세율 인상에 따른 세액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표준금액을 20억원 이하로 유지할 인센티브가 존재함
 - 따라서 해당 조합법인은 명목상 과세표준 20억원 기준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나 과세표준 20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유인이 존재하기 때문에 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통제그룹으로 부적절함
 - 전병목·권성준(2020)의 세율 인상에 따른 효과가 과세표준 20억원 이하 조합법에서 일부 관측되는 것도 과세표준 20억원을 기준으로 과세구간이 분할

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모형에 따라 광역 고정효과 및 법인유형 고정효과를 추가로 통제함
 - 이중차분법 모형에서 광역 및 법인유형에 따른 연도 고정효과를 통제하는 것과 동일
 - 종속변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지역수준충격 혹은 산업수준충격을 통제

- (추정편의 논의) 본 연구는 2015년 세율 인상에 따른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조합 법인 중 과세표준이 특정 금액 이하인 통제집단과 특정 금액 이상인 처치집단 간의 종속변수의 추세가 세율 인상 전에 유사하였음을 가정하고 세율 인상에 따른 효과를 추정함
 - 공통추세 가정이 성립하는지 검토하기 위해 2012~2014년 과세표준금액에 따라 처치그룹과 통제그룹이 정해지면 해당 그룹들의 세율 인상 전의 추세가 동일한지 검토가 필요
 - 이벤트 스터디 모형을 통해 공통추세 가정이 성립하는지를 검토

나. 분석표본

- (표본 구축) 2014년을 기준으로 2012~2014년까지 3년간 존속한 법인을 기준으로 표본을 구축함
 - 제공받은 국세청 마이크로 데이터는 2012~2014년 사이에 13,051개의 사업체를 포함하였는데 위의 제약을 추가할 경우 9,135개의 사업체가 표본을 구성하게 됨
 - 3년간 존속 조건을 추가한 이유는 법인세 인상에 따른 영향을 받는 처치집단을 정의하기 위해 법인세 인상 전 과세표준을 활용하는데 연도별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3년간 평균값이 필요하기 때문
 - 법인세 인상에 따른 효과 추정을 위한 비교법인은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은 특례법인으로 한정하였으므로 조합법인이 아닌 비영리법인은 표본에서 제외함
 - 2012~2014년 사이에 2,902개의 사업체를 포함
 - 이 중 3년 과세표준 평균이 15억 이상 25억원 미만인 조합법인은 분석표본에서 제외함

- 최종적으로 분석에 사용된 표본은 사업체는 2,783개를 포함하고 있으며 13,747개의 관측치로 구성
 - 2,783개의 사업체 중 2015년과 2016년까지 존속한 사업체는 각각 2,719개, 2,679개
 - 법인세 인상에 따른 외연적 경로(extensive margin)는 표본에서 이탈한 조합법인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추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표본에서 이탈한 조합법인은 분석에서 제외한 추정치를 제시함²⁵⁾

□ (기초통계량) <표 IV-1>에서는 표본을 구성하고 있는 사업체들의 2014년 기준 기초통계량을 제시하였음

- 처치집단은 3년 평균 과세표준이 25억원 초과인 법인으로 94개의 조합법인을 포함하고 있으며 통제집단은 3년 평균 과세표준이 15억원 미만인 법인으로 총 2,689개의 법인을 포함
-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을 구분하였기 때문에 처치집단은 수입금액 등 모든 성과지표에서 통제집단과 비교해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남
- 처치집단의 평균 과세표준 값은 46.96억원이며 통제집단은 2.94억원으로 나타남
- (설명변수1) 처치집단에 해당하는 조합법인은 주로 경기도, 서울특별시, 울산광역시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세 지역에 위치한 조합법인은 처치집단의 49%에 해당
 - 반면 규모가 작은 통제집단에 속한 조합법인들은 지역적으로 골고루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남
- (설명변수2) 처치집단에 해당하는 조합법인은 농협,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에 속하는 경우가 96%에 다다른 반면 통제집단에 해당하는 조합법인은 상대적으로 다양한 조합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남
 - 조합법인의 유형을 고려하지 않는 경우 농협(처치집단)과 의료법인(통제집단)의 비교가 수행될 수 있기 때문에 조합법인 고정효과를 추가함으로써 동일한 조합법인 간의 비교가 필요

25) 외연적 경로를 고려하기 위해 이환웅·송경호(2021)과 유사하게 2015년과 2016년 표본에서 제외된 법인의 경우에 해당 연도의 종속변수의 값에 -1의 값을 부여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음. 예를 들어, 2016년 표본에서 제외된 사업체의 2016년 수입금액 증가율에 -1의 값을 부여한 것은 2014년과 비교 시 수입금액이 100% 감소하였음을 의미함.

<표 IV-1> 분석표본의 주요 통제변수 기초통계량(2014년 기준)

	처치집단	통제집단
종속변수		
수입금액(백만원)	52533.1	7643.5
결산서상당기순손익(백만원)	4158.2	270.7
사업연도소득금액(백만원)	4695.7	295.3
과세표준(백만원)	4695.7	293.5
산출세액(백만원)	449.5	33.0
설명변수(더미변수)		
강원도	0.02	0.05
경기도	0.30	0.09
경상남도	0.08	0.08
경상북도	0.06	0.10
광주광역시	0.04	0.03
대구광역시	0.04	0.06
대전광역시	0.01	0.03
부산광역시	0.08	0.07
서울특별시	0.10	0.13
세종특별자치시	0.00	0.00
울산광역시	0.09	0.01
인천광역시	0.04	0.03
전라남도	0.02	0.07
전라북도	0.01	0.08
제주특별자치도	0.00	0.03
충청남도	0.03	0.07
충청북도	0.08	0.06
정비사업조합		
농협	0.76	0.21
수협	0.00	0.00
신용협동조합	0.04	0.32
새마을금고	0.16	0.33
영농조합	0.00	0.01
영어조합	0.00	0.00
학교법인	0.00	0.00
의료법인	0.01	0.02
산학협력단	0.00	0.00
산림조합	0.00	0.02
인삼협동조합	0.00	0.00
소비자생활협동조합	0.00	0.02
기타조합법인	0.02	0.07
관측치	94	2,689

자료: 국세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다. 분석결과

- <표 IV-2>는 식 (1)을 이용하여 조합법인의 법인세율 인상이 법인의 성과지표에 끼친 영향에 대한 추정결과를 제시
- (1)열~(3)열은 2015년 법인세 인상이 성과지표에 미친 단기적인 효과를 제시함
 - 종속변수는 수입금액의 변화, 당기순이익의 변화, 산출세액의 변화를 포함
 - (4)열~(6)열은 일종의 플라시보 검정으로 동일한 모형을 활용하여 처치집단 여부가 2012년과 2014년 사이의 성과변수의 증가율에 끼친 영향을 추정함
 - (1)열과 (4)열은 처치집단 여부만을 통제된 모형
 - (2)열과 (5)열은 지역 고정효과를 추가한 모형
 - (3)열과 (6)열은 법인유형 고정효과를 추가한 모형

<표 IV-2> 법인세율 인상이 성과지표에 끼친 영향

	주 결과			플라시보 결과		
	2014년과 2016년 사이의 변화			2012년과 2014년 사이의 변화		
	(1)	(2)	(3)	(4)	(5)	(6)
가. 수입금액의 변화						
처치 여부	-0.04	-0.04	-0.04	-0.04	-0.04	-0.04
표준오차	(0.07)	(0.07)	(0.07)	(0.08)	(0.08)	(0.08)
관측치	2634	2634	2634	2737	2737	2737
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의 변화						
처치 여부	0.24	0.12	-0.21	-0.11	-0.13	-0.38
표준오차	(0.35)	(0.35)	(0.36)	(0.33)	(0.33)	(0.35)
관측치	2630	2630	2630	2732	2732	2732
다. 산출세액의 변화						
처치 여부	-0.09	-0.12	-0.09	-0.39*	-0.35*	-0.31
표준오차	(0.22)	(0.22)	(0.23)	(0.20)	(0.21)	(0.22)
관측치	2069	2069	2069	2121	2121	2121
처치 여부	Y	Y	Y	Y	Y	Y
지역 고정효과		Y	Y		Y	Y
법인유형 고정효과			Y			Y

주: 통계적 유의성은 다음과 같음. *** 1%, ** 5%, * 10%
 자료: 국세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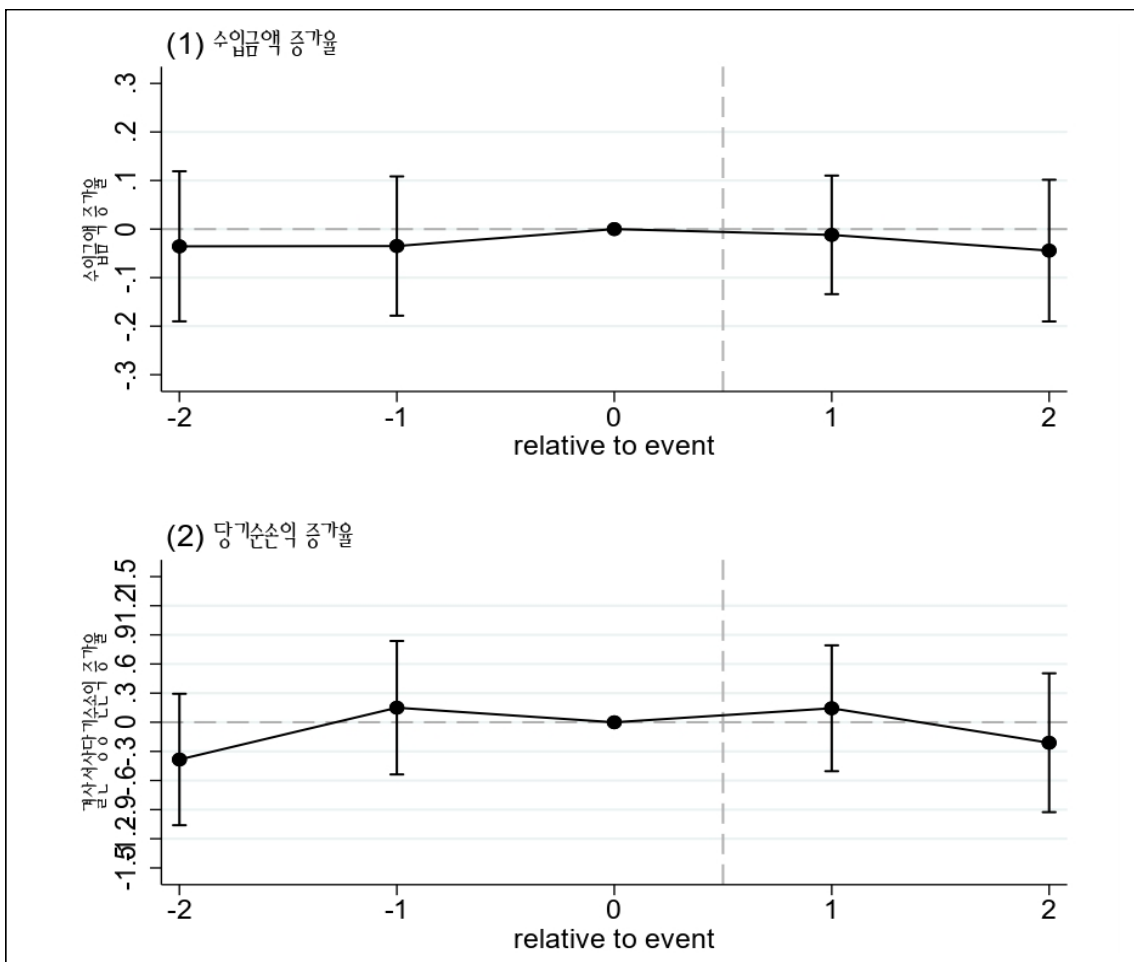
- (추정결과1: 수입금액의 변화) 선호하는 모형의 추정치는 (3)열에 제시하였는데 추정치는 -0.04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0과 다르지 않았음
 - 과세표준 2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은 조합법인의 성과지표 중에 하나인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악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에도 추정치 -0.04를 해석하자면 2014년 법인세율 인상은 수입금액을 4%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본 분석의 처치집단의 2014년 평균 수입금액이 약 525억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법인세 인상에 따른 2016년 수입금액의 감소는 21억원에 불과함
 - (플라시보 검정) (4)열과~(6)열의 플라시보 검정결과, 2012년과 2014년 사이의 수입금액의 변화는 조합법인의 처치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추정치의 크기도 0에 가깝게 추정됨(-0.04)
 - 과세표준에 따라 정의되는 처치그룹과 통제그룹 간의 법인세 인상 전 추세의 차이가 관측되지 않음을 의미
 - (공통추세 가정) [그림 IV-1]는 법인세 인상이 조합법인의 성과지표에 끼친 효과를 연도별로 제시하고 있음
 - 예를 들어, 2014년 직전연도(-1)의 검은색 점은 2013년과 2014년 사이의 수입금액 증가율을 종속변수로 처치 여부를 설명변수로 하는 회귀분석 추정치임
 - 법인세 인상 전의 처치집단과 통제집단의 차이는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추정치의 크기는 경제적으로 작게 추정되었으며 통계적으로 0과 다르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음
 - 다만 법인세 인상 전의 처치집단과 통제집단 사이에 존재하는 추세가 법인세 인상 후에도 존속되었다고 가정한다면 <표 IV-2>의 추정치 -0.04(3열)은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함
 - 법인세 인상에 영향을 받는 조합법인의 성과가 악화되었을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함을 의미하는데, 다만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더라도 추정치는 경제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것으로 판단됨

- (추정결과2: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변화) 패널 나에서는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법인세 인상에 따른 조합법인의 성과 변화를 추정함
 - 모형에 따라 당기순손익의 변화는 최소 -0.21[(3)열]에서 최대 0.24[(1)열]로 추정되었으나 모든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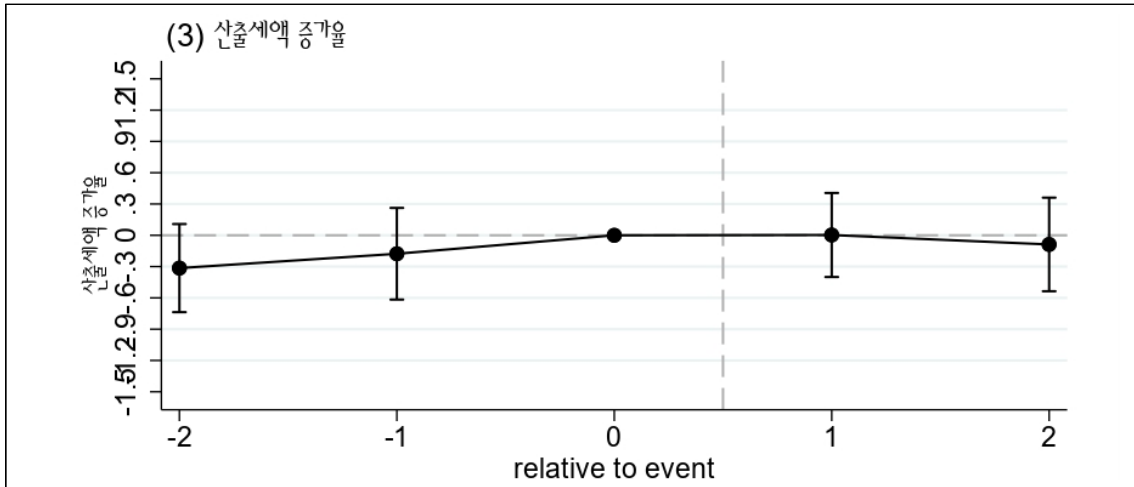
- 추정치의 표준오차가 크게 추정되어(모형의 검정력이 좋지 못함) 법인세 인상
따른 당기순손익의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면 본 통계 모형을 통해서 효과를
인식하기가 어려움
 - 선호하는 모형 (3)열을 기준으로 추정치 -0.21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에도)을
해석하자면 2014년 법인세율 인상은 처치집단의 당기순손익을 21%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본 분석의 처치집단의 2014년 평균 당기순손익이 약 42억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법인세 인상에 따른 2016년 당기순손익의 감소는 9억원에 불과함
 - 전병목·권성준(2020)의 추정결과와 비교하면 해당 연구에서는 법인세 인상에
따른 평균 당기순이익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19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플라시보 검정) (4)열~(6)열의 플라시보 검정결과, 2012년과 2014년 사이의 당
기순손익의 변화는 조합법인의 처치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됨
 - [그림 IV-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인세 인상 전의 처치그룹과 통제그룹의
당기순손익의 변화는 일정한 패턴이 관측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공통추세
가정이 위반된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음
- (추정결과3: 산출세액의 변화) 법인세 인상에 따른 조합법인의 세수부담의 증가는
법인세율의 변화에 따른 효과와 당기순손익의 변화에 따른 효과로 분해해서 생
각할 수 있음
- 법인세율의 변화에 따른 산출세액의 증가 가능성은 당기순손익의 변화에 따라
실제로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 있음
 -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에 따라 산출세액의 변화는 최소 -0.12 에서 최대
 -0.09 로 통계적으로 0과 다르다는 증거는 찾을 수 없었지만 모형과 상관없이
강건하게 추정됨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에도 추정치 -0.09 를 해석하자면 2014년 법인세율
인상은 산출세액을 9%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본 분석의 처치집단의 2014년 산출세액이 약 4.5억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법인세
인상에 따른 2016년 산출세액은 0.4억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됨
 - 법인세 인상에 따른 조합법인이 부담하는 세액의 변화는 통계적으로 0과 다르
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으며 추정치 역시 경제적으로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플라시보 검정) (4)월~(6)월의 플라시보 검정결과, 2012년과 2014년 사이의 산출세액의 변화는 조합법인의 처치 여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되었으나 추정치의 크기가 큰 것을 확인함[(6)월 - 0.31]
- [그림 IV-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법인세 인상 전(2012~2014년) 처치그룹의 산출세액은 통제그룹과 비교하여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2013년 1월 기준 과세방법의 보완에 따른 조합법인의 세무조정 대상 확대(기부금·접대비 등 6개 항목)가 처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영향을 준 것이 이러한 추정결과에 기인한 것으로 보임
- 만약 법인세 인상 전에 관측된 추세가 인상 후에도 지속되었다면 수식 (1)을 활용한 추정치(-0.09)는 절댓값을 기준으로 과소 추정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그림 IV-1] 법인세 인상이 성과지표에 미친 효과의 연도별 변화



[그림 IV-1]의 계속



자료: 국세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 (이질성 분석) 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신용사업을 병행하는 조합법인과 그 외 조합법인 간의 조세특례가 성과에 미치는 효과가 이질적인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질성 분석을 실시함
 - 조합법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전체 데이터에서 86%를 차지)에서 동일한 조합법인 간의 비교를 위해 해당 조합법인에 속한 사업체만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
 - 추정결과는 <표 VI-3>에 제시함
 - <표 VI-2>와 비교하여 질적으로 유사하게 추정되었으나 추정치의 절대적인 크기는 이전 결과와 비교하여 적게 추정됨
 - 당기순손익 기준 전체조합법인 대상 추정결과는 -0.21, 3대 조합법인으로 한정된 추정결과는 -0.14
 - 본 분석에서는 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를 제외한 조합법인들을 대상으로 처치효과를 제시하지 않았는데, 이는 기타 조합법인들의 경우 대부분이 과세표준기준 규모가 적기 때문임
 - 즉, 처치집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조합법인의 수가 현저히 작아서 통계방법론을 활용한 효과추정이 적절하지 않음

〈표 IV-3〉 법인세율 인상이 성과지표에 끼친 영향:
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로 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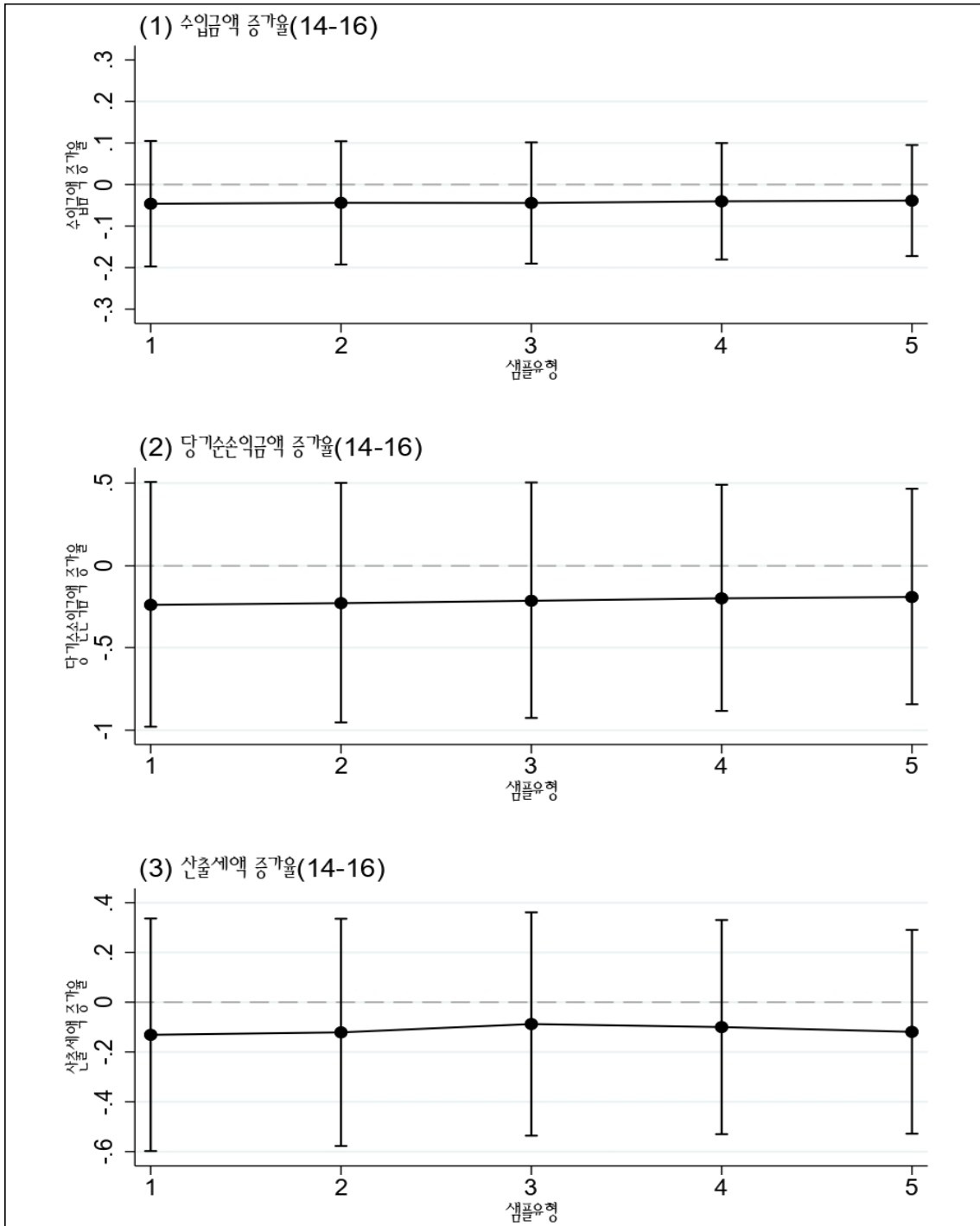
	주 결과			플라시보 결과		
	2014년과 2016년 사이의 변화			2012년과 2014년 사이의 변화		
	(1)	(2)	(3)	(4)	(5)	(6)
가. 수입금액의 변화						
처치 여부	-0.03	-0.03	-0.05	-0.04**	-0.06**	-0.02
표준오차	(0.02)	(0.02)	(0.03)	(0.02)	(0.02)	(0.03)
관측치	2309	2274	2274	2372	2336	2336
나.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변화						
처치 여부	0.30	0.25	-0.14	0.06	0.04	-0.18
표준오차	(0.32)	(0.32)	(0.33)	(0.31)	(0.32)	(0.33)
관측치	2309	2274	2274	2372	2336	2336
다. 산출세액의 변화						
처치 여부	-0.01	-0.01	-0.05	-0.35*	-0.31	-0.32
표준오차	(0.20)	(0.20)	(0.21)	(0.19)	(0.20)	(0.20)
관측치	1881	1852	1852	1915	1885	1885
처치 여부	Y	Y	Y	Y	Y	Y
지역 고정효과		Y	Y		Y	Y
법인유형 고정효과			Y			Y

주: 통계적 유의성은 다음과 같음. *** 1%, ** 5%, * 10%
자료: 국세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 (강건성 분석) 메인분석에서는 처치그룹과 통제그룹의 설정 시 과세표준 기준 15억 이상 25억원 미만 구간에 속한 조합법인은 분석에서 제외함
- 표본에서 제외시킨 구간의 하한선 및 상한선의 정의에 따라 추정치가 민감하게 변화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하한선 및 상한선을 재정의하고 수식 (1)을 재추정함
 - 표본에서 제외시키는 구간의 크기를 13~27억원, 14~26억원, 15~25억원, 16~24억원, 17~23억원으로 줄여가면서 추정치의 민감도를 살펴봄
 - 본 연구에서 선호하는 모형 (3)만을 사용해서 추정결과를 제시
 - 샘플유형1은 과세표준기준 13~27억원 구간의 조합법인을 분석표본에서 제외하였으며, 샘플유형2는 14~26억원 구간, 샘플유형3은 15~25억 구간, 샘플유형4는 16~24억원 구간, 샘플유형5는 17~23억원 구간의 조합법인을 분석표본에서 제외
 - 샘플유형에 따른 추정치는 [그림 VI-2]에 제시함

- 분석표본과 관계없이 추정치는 강건한 것으로 나타남
- 분석에서 제외시킨 조합법인의 과세표준 구간의 정의와 관계없이 추정치가 강건함을 의미

[그림 IV-2] 과세표준구간 정의에 따른 추정치의 강건성 검정



자료: 국세청 마이크로데이터를 활용하여 저자 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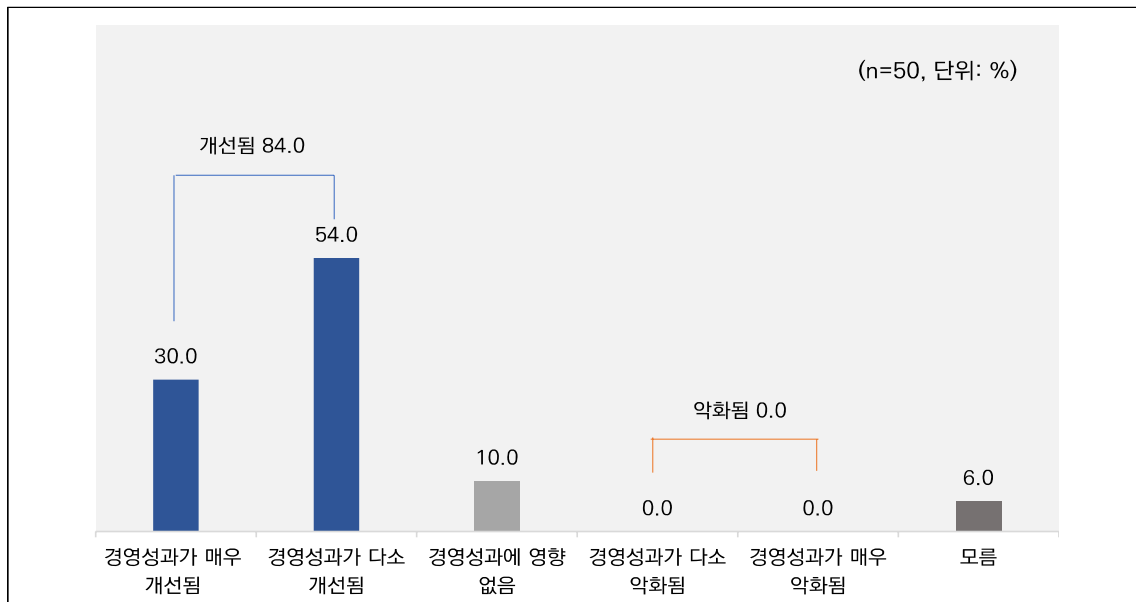
라. 설문조사 결과와의 비교

- 조합법인 담당자 50명 및 조합원 300명을 대상으로 과세특례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통한 조사를 실시함²⁶⁾

귀하는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합법인 담당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을 때, ‘개선됨’이라는 응답이 84.0%(‘경영성과가 매우 개선됨’ 30.0% + ‘경영성과가 다소 개선됨’ 54.0%)로 가장 높았고, ‘경영성과에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은 10.0%로 나타남
- ‘악화됨’에 해당하는 응답(‘경영성과가 다소 악화됨’ + ‘경영성과가 매우 악화됨’)은 없었음
 - 응답의 평균²⁷⁾을 구해보면 전체 평균은 4.2이며, 조합유형별로는 ‘새마을금고’와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4.5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에서 3.5로 가장 낮았음

[그림 IV-3] 과세특례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합법인 담당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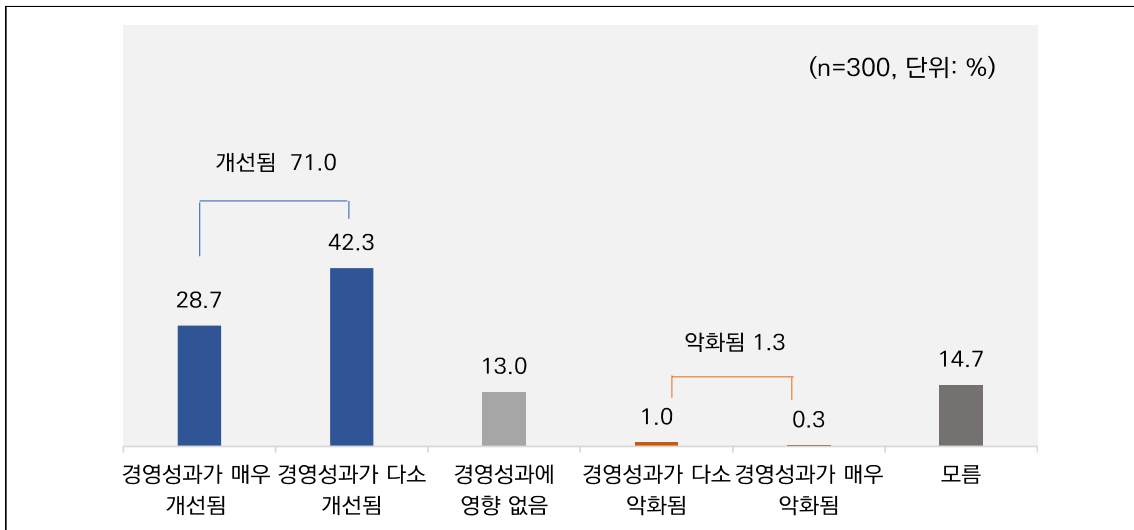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6) 조사대상 및 조사내용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다음 절 조사개요를 참조바람

27) ‘경영성과가 매우 악화됨’ 1점~‘경영성과가 매우 개선됨’ 5점으로 하여 평균을 계산함

- (조합원)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개선됨’이라는 응답이 71.0%(‘경영성과가 매우 개선됨’ 28.7% + ‘경영성과가 다소 개선됨’ 42.3%)로 가장 많았음
- 그다음으로는 ‘경영성과에 영향 없음’(13.0%)으로 나타났고 ‘악화됨’이라는 응답은 1.3%(‘경영성과가 다소 악화됨’ 1.0% + ‘경영성과가 매우 악화됨’ 0.3%)로 매우 적었음
- 응답의 평균²⁸⁾을 구해보면 전체 평균은 4.1이며, 조합유형별로 ‘신용협동조합’에서 4.6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에서 3.7로 가장 낮았음

[그림 IV-4] 과세특례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조합원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조합원 담당자 및 조합원 모두 과세특례제도가 경영성과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음
 -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율 인상이 조합의 성과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앞선 실증분석의 결과와 상반됨
 - 조세특례제도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설문조사 외 실증분석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28) ‘경영성과가 매우 악화됨’ 1점~‘경영성과가 매우 개선됨’ 5점으로 하여 평균을 계산함.

2. 조합법인의 성과 변화가 조합원에게 미치는 효과 분석

- 조세특례제도가 조합에 대한 지원보다 조합원에 대한 지원목적이 크다면 조세특례제도가 조합원 지원에 끼친 영향에 대한 분석이 필요함
 - 단, 실증분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효과성 분석에서는 이를 2단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있음
 - 1단계는 조세특례제도가 조합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는 제1절에서 검토함

- 그다음 2단계는 조합의 성과가 조합원에 복지에 미치는 효과로, 본 절에서는 설문 조사를 활용해서 조합법인의 경영성과 개선 등의 변화가 조합원의 복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질적 분석을 수행함
 - 최종 정책 대상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조합법인의 경영성과 변화로 인한 조합원에 혜택에 대한 분석을 수행

가. 조사개요

- 조사 대상은 8개 조합²⁹⁾의 조합법인 담당자 50명, 조합원 300명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함
 - 온라인 설문조사 특성상 적극적인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결과를 주의 깊게 해석해야 할 필요성이 존재함

- 조합법인 담당자 및 조합원 특성은 아래 표에서 제시함
 - 소규모 조합법인의 의견 역시 균등하게 수집하기 위해 조합유형별로 일정수의 응답자를 확보함
 - 조합원의 경우 연령기준 40대, 50대가 응답자의 50.4%를 차지하여 가장 많았으며 성별로는 남성이 69.3%를 차지함
 - 거주지역은 경기(22.3%), 경북(17.0%), 충남(7.7%), 전북(7.7%) 순으로 나타남

29)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업연초생산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 실제 조합원들의 지역적 분포를 활용한 층화추출 설문조사³⁰⁾가 아니기 때문에 특정지역의 응답자들이 실제 거주비율보다 높은 값을 기록한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설문조사를 활용한 통계분석은 부적절하며 참고자료로 활용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표 IV-4> 응답자 특성: 조합

(단위: 명, %)

		빈도	비율
전체		50	100.0
조합유형	신용협동조합	7	14.0
	새마을금고	6	12.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12.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14.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6	12.0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12.0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12.0
	연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12.0

자료: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표 IV-5> 응답자 특성: 조합원

(단위: 명, %)

		빈도	비율
전체		300	100.0
연령대	20대	30	10.0
	30대	47	15.7
	40대	74	24.7
	50대	77	25.7
	60대	60	20.0
	70대 이상	12	4.0
	성별	남성	208
여성		92	30.7

30) 현재 조합법인의 조합원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하는 자료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조합원의 지리적 분포를 활용한 층화추출은 불가능하며, 조합원을 대상으로 과세특례 효과성 분석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됨

<표 IV-5>의 계속

(단위: 명, %)

		빈도	비율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5	11.7
	고졸	106	35.3
	학사	150	50.0
	석사	7	2.3
	박사 이상	2	0.7
거주 지역	서울	13	4.3
	부산	4	1.3
	대구	13	4.3
	인천	22	7.3
	광주	3	1.0
	대전	2	0.7
	울산	10	3.3
	세종	1	0.3
	경기	67	22.3
	강원	19	6.3
	충북	19	6.3
	충남	23	7.7
	전북	23	7.7
	전남	16	5.3
	경북	51	17.0
	경남	14	4.7
조합유형	신용협동조합	38	12.7
	새마을금고	36	12.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8	12.7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13.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39	13.0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35	11.7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13.7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	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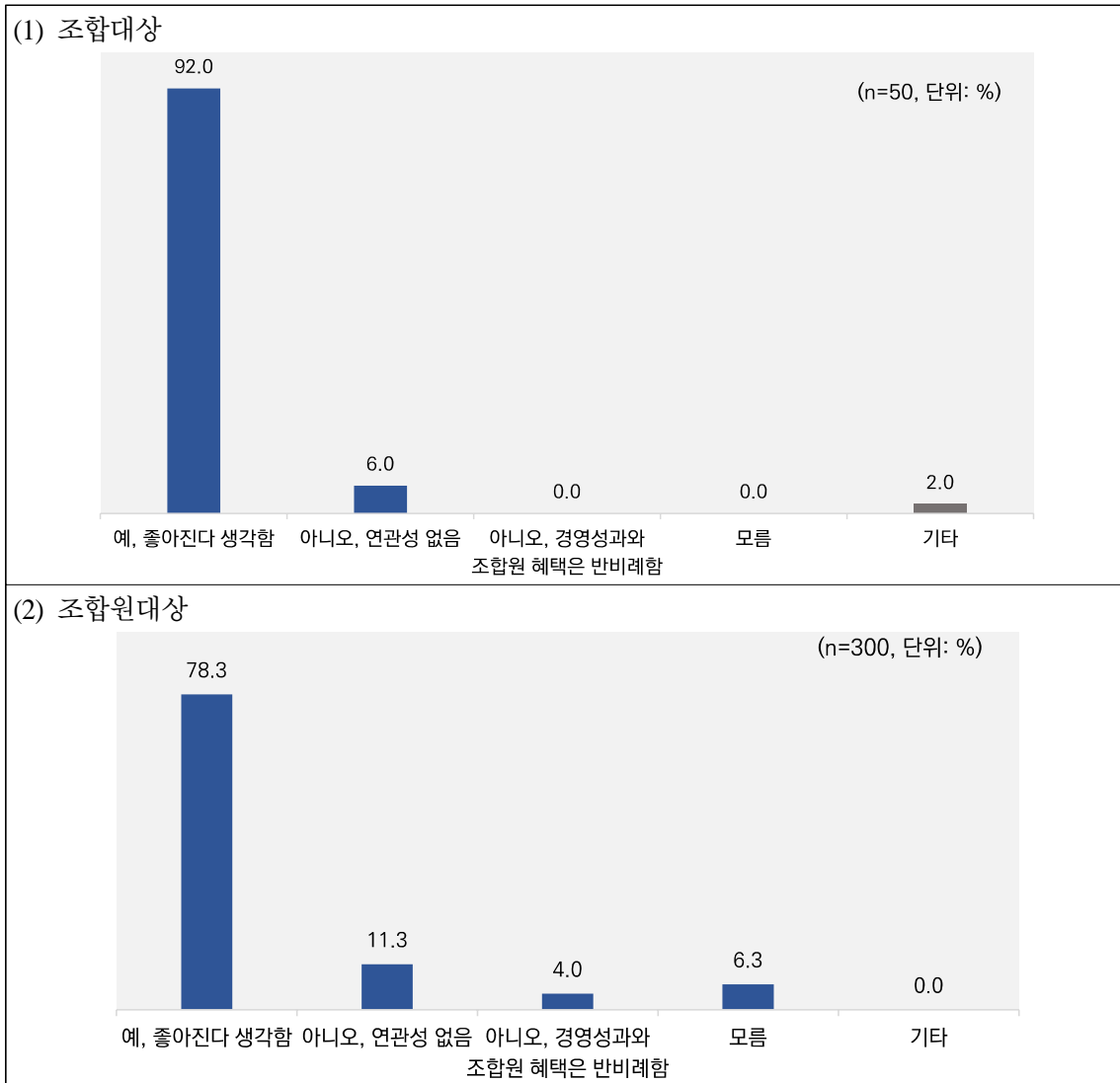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나. 조사결과

- [그림 VI-5]는 조합의 경영성과와 조합원의 혜택 간의 연관성에 대해 조합 및 조합원의 응답을 제시함

- (질문) 귀하는 조합의 경영성과가 좋아질 경우, 조합원의 수혜 혜택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응답결과: 조합법인 담당자) 조합의 경영성과가 좋아질 경우, 조합원의 수혜 혜택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예, 좋아진다고 생각함’이라는 응답이 92.0%로 가장 많았음
- (응답결과: 조합원) 조합의 경영성과가 좋아질 경우 조합원의 수혜 혜택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예, 좋아진다고 생각함’이라는 응답이 78.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아니오, 연관성 없음’(11.3%), ‘모름’(6.3%)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5] 경영성과와 수혜 혜택 간의 연관성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조합법인 담당자 및 조합원 모두 조합의 경영성과가 개선될 경우 조합원의 혜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 <표 VI-6>은 조합법인 유형별 조합원의 응답이 이질적인지 살펴보았는데, 농협 조합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의 경우 좋아진다고 응답한 사람이 각각 60.5%, 66.7%에 불과하여 조합법인별 응답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남

<표 IV-6> 경영성과와 수혜 혜택 간의 연관성: 조합법인 유형별

(단위: 명, %)

		사례 수	예, 좋아진다고 생각함	아니오, 연관성 없음	아니오, 경영성과와 조합원 혜택은 반비례함	모름	기타
전체		(300)	78.3	11.3	4.0	6.3	0.0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38)	86.8	2.6	2.6	7.9	0.0
	새마을금고	(36)	77.8	2.8	0.0	19.4	0.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8)	60.5	26.3	10.5	2.6	0.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78.0	7.3	0.0	14.6	0.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39)	66.7	20.5	12.8	0.0	0.0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35)	82.9	5.7	5.7	5.7	0.0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97.6	2.4	0.0	0.0	0.0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	75.0	25.0	0.0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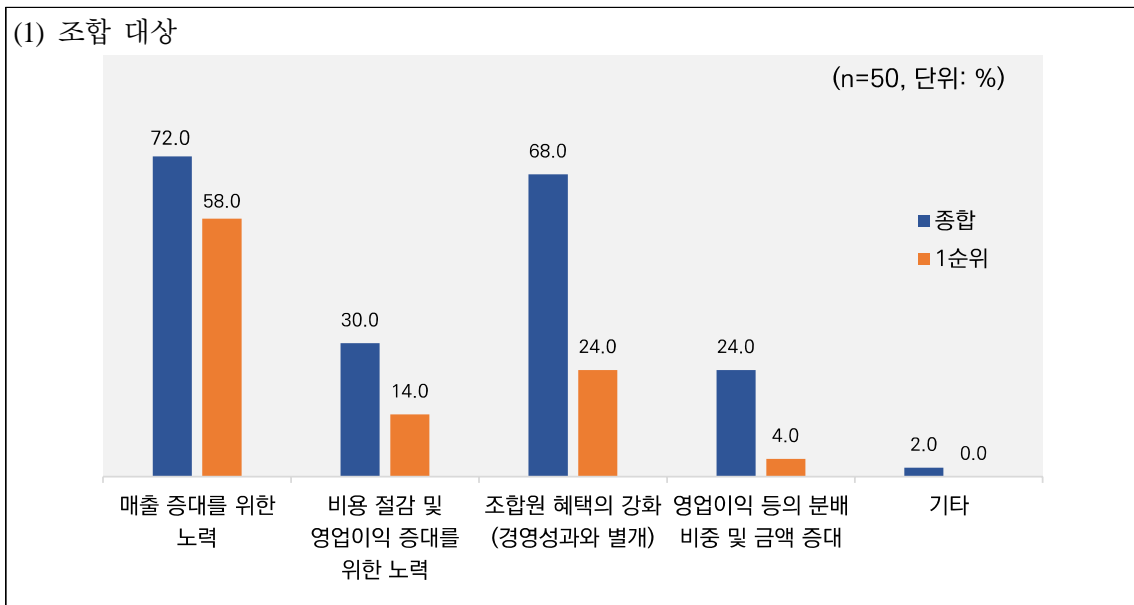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내용을 토대로 저자 작성

- 한편, [그림 VI-6]에서는 조합의 설립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에 대한 응답결과를 제시하였음
 - (응답결과: 조합법인 담당자) 조합 설립 및 운영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1, 2순위로 선택하게 한 후 응답을 종합한 결과
 -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이라는 응답이 72.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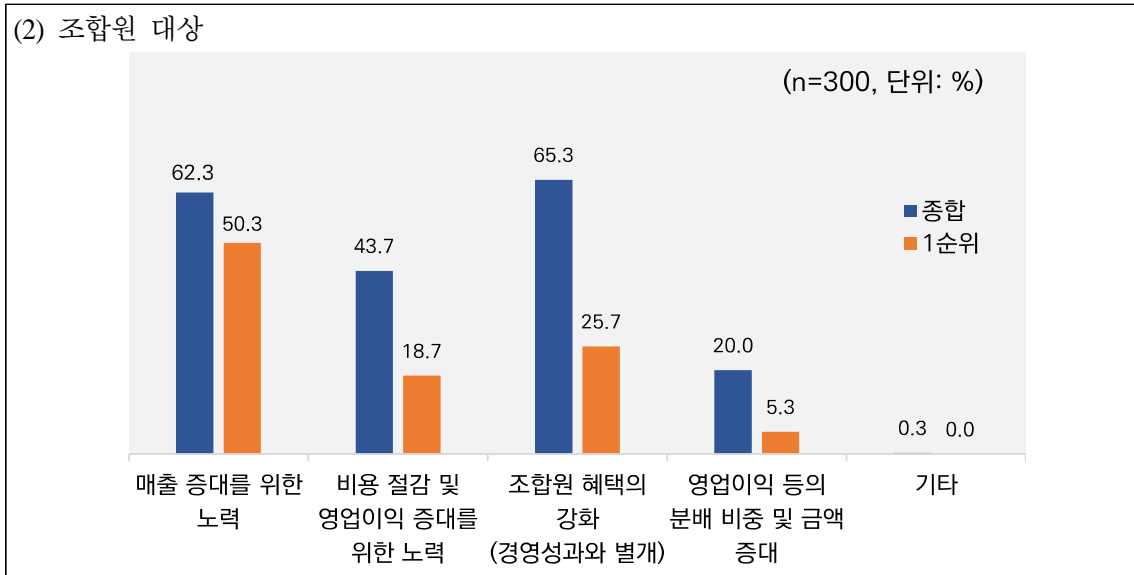
‘조합원 혜택의 강화(경영성과와 별개)’(68.0%), ‘비용 절감 및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30.0%), ‘영업이익 등의 분배 비중 및 금액 증대’(24.0%) 순으로 나타남

- (응답결과: 조합원) 조합이 설립 및 운영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1, 2순위로 선택하게 한 후 응답을 종합한 결과
 - ‘조합원 혜택의 강화(경영성과와 별개)’라는 응답이 65.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62.3%), ‘비용 절감 및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43.7%) 순으로 나타남
- 종합하자면 조합원의 경우 경영성과와 별개로 조합원 혜택의 강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 만약 매출액의 증대가 자연스럽게 조합원의 혜택 강화로 이어진다면 매출액 증대를 조합의 설립목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우선시되는 것으로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이러한 응답결과는 매출액 증대가 자연스레 조합원의 혜택의 증대로 이어진다는 앞선 응답결과와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응답을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그림 IV-6] 조합의 설립목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



[그림 IV-6]의 계속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설문조사 결과의 종합) 본 절에서는 조합법인의 경영성과 개선이 조합원의 복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에 착안하여 해당 질문에 대한 조합법인과 조합원의 인식에 대하여 조사함
 - 조사결과, 조합법인과 조합원 모두 조합법인의 매출 증대가 혜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단, 일부 응답 간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문조사 응답의 해석에는 주의가 필요함
 - 따라서 만약 조합법인 조세특례제도가 조합법인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조합원의 혜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함
 - 다만 제1절 실증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은 조합법인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³¹⁾ 조세특례제도가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만약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에 대한 지원 목적이 더 크다면 직접적인 혜택 제공이 가능한,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으로 단순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31) 물론 본 연구의 실증분석은 조합법인 과세특례의 폐지에 따른 조합법인의 성과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 인하 정도의 변화가 성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것이기 때문에 해석에 주의가 필요함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V. 요약 및 정책적 시사점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 공익적 역할을 수행하는 조합법인들의 납세협력비용과 세 부담을 낮춰줌으로써, 영리법인에 비해 경영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는 조합법인들의 경영 효율성을 높이고 공익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제도임
 - 본 특례의 일환으로 조합법인 등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하여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기부금과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액 등 8개 항목의 세무조정 후 과세표준을 도출함
 - 또한 과세표준 20억원 이하는 9%, 초과분은 12%의 법인세율을 적용함

- 본 연구는 조합법인의 공익사업 지원을 위하여 도입된 본 제도의 타당성과 효과성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고,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수행하였음

1. 타당성 분석

-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는 공익사업 지원을 위한 제도로 도입
 - 조합법인의 경우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공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지원

- 전병목·류덕현(2017) 및 전병목·권성준(2020)은 조세특례대상 조합법인의 설립 취지나 실질적 사업내용 등이 위의 관련 법률 규정에서 기술한 내용에만 의거할 경우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의견 제시
 - 이들은 또한 개별 조합법인 설립법을 보더라도 상호부조가 아닌 공익사업 수행이 조합법인의 주된 설립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는 의견을 제시

- 반면, 조합법인은 영리성 사업에 마음대로 진입할 수 없고, 개별 설립법에서 규정된 분야에서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그 내용에 있어서도 제약을 받는다는 점에서 이미 어느 정도 공익성을 강제받고 있다는 반론도 제기할 수 있음
 - 현재 신탁, 새마을금고 등 다수 조합법인은 돌봄이나 교육 등과 같은 사회 서비스, 교육 및 지도 사업, 산책길 정비 등의 소규모 인프라 개선 등과 같은 공공재 공급 등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관련 사업을 수행하는 것도 사실임

- 주로 교육사업 형태로 이루어지는 공익사업들 중 “공익성을 인정받고 비용처리가 되는 사업의 인정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가?” 또한 중요한 문제
 - 일반 기업과는 달리, 교육사업 등 협동조합의 공익성 사업들은 모두 비용으로 처리됨
 - 이는 2단계로 이루어지는 조합법인 과세특례가 과도한 혜택이라는 지적과 조합원에 대한 지원임에도 비용처리가 되지 않는 배당과 대비되며, 세율 조정에 따른 세수 증대효과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무엇보다도 지원 대상으로서의 타당성이 부족함에도 경제적으로는 조합원과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준조합원의 비중이 높아지게 되는 상황이며, 이는 특히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에서 강하게 나타날 수밖에 없으며, 향후 조합 활동에 있어서 큰 문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음

-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 수준은, 국내 다른 공익단체와의 비교 등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나, 조합원에 대한 지원 수준은 그렇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함
 - 주요국의 사례를 보면, 일본을 제외하고는 협동조합 자체에 대한 지원보다는 활동결과에 따른 이익금을 조합원에게 배당할 때 세제상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택함
 - 조합원에 대한 지원 수준은 개별 조합원의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외국과의 명확한 비교는 어려움

- (종합) 따라서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조세특례제도가 운영된다면, 그 수준은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한 다른 기관에 대한 지원과 비슷하게 유지할 필요

- 또한, 회계 분리를 통한 세무회계 적용, 조합원 외 대상 사업 이익에 대한 일반 법인세 적용, 공익사업의 효율화 제고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현재의 조합법인 법인세 부과방식은 혜택이 유사 규모의 기업과 비교하면 역진적으로 제공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는 세율 조정도 필요

2. 효과성 분석

- 본 분석에서는 전병목·류덕현(2017)과 유사하게 조합법인들의 활동이 공익적이라는 전제하에 공익적 활동 증대를 위해 사용된 자본(Input)을 성과지표로 사용
 - 따라서 조합법인 조세지원이 지원받은 법인의 영업이익을 증가시켰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효과성 평가의 1차 목표로 함
- 보완적으로 최종 정책 대상자인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경영성과 변화로 인한 조합원에 혜택에 대한 분석을 현재 수행 중
- (세율 인상 효과 추정) 2015년부터 법인세 과세특례 조합법인의 세율이 기존 9% 단일세율에서 과세표준 20억원을 초과하는 조합법인에 대해 법인세율을 12%로 인상하는 2단계 누진세율 체계로 전환됨
 - 본 분석에서는 이러한 세율 인상이 조합법인의 성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조합법인에 제공되는 과세특례가 조합법인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가늠하고자 함
 - (식별방법)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 되는 조합법인 중 과세표준이 2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조합법인을 통제집단으로, 20억원을 초과한 조합법인을 처치집단으로 정의하고 세율 인상에 따른 효과를 추정함
 - 세율 인상에 명확히 영향을 받지 않는 조합법인을 설정하기 위해 3년(2012~2014년) 평균 과세표준금액이 15억원 미만인 조합법인을 세율 인상에 영향을 받지 않는 통제집단으로 정의함
- (추정결과1: 수입금액의 변화) 추정결과, 과세표준 20억원 이상 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은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악화시키지 않는 것으로 추정됨

-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에도 추정된 추정치 -0.04를 해석하자면 2014년 법인세율 인상은 수입금액을 4% 감소시키는 것으로 해석 가능
 - 처치집단의 2014년 평균 수입금액이 약 525억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법인세 인상에 따른 2016년 수입금액의 감소는 21억원에 불과함
- (추정결과2: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변화) 결산서상 당기순손익의 변화를 종속변수로 사용하여 법인세 인상에 따른 조합법인의 성과 변화를 추정한 결과 모형에 따라 당기순손익의 변화는 최소 -0.21에서 최대 0.24로 추정되었으나 모든 추정치는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았음
- (추정결과3: 산출세액의 변화) 법인세 인상에 따른 조합법인의 세수부담의 증가는 법인세율의 변화에 따른 효과와 당기순손익의 변화에 따른 효과로 분해해서 생각할 수 있음
- 법인세율의 변화에 따른 산출세액의 증가 가능성은 당기순손익의 변화에 따라 실제로 증가할 수도 감소할 수 있음
 - 추정결과를 살펴보면 모형에 따라 산출세액의 변화는 최소 -0.12에서 최대 -0.09로 통계적으로 0과 다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설문조사) 조합법인의 경영성과 개선이 조합원의 복지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조합법인과 조합원의 인식에 대하여 설문사를 통하여 조사함
- 조사결과, 조합법인과 조합원 모두 조합법인의 매출 증대가 혜택 증가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남
 - 따라서 만약 조합법인 조세특례제도가 조합법인의 성과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면 조합원의 혜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도 존재함
 - 또한 조합 설립 및 운영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1, 2순위로 선택하게 한 후 응답을 종합한 결과, 조합 담당자의 경우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72.0%), ‘조합원 혜택의 강화(경영성과와 별개)’(68.0%), ‘비용 절감 및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30.0%), ‘영업이익 등의 분배 비중 및 금액 증대’(24.0%) 순으로 응답함
 - 조합원에게 조합이 설립 및 운영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

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1, 2순위로 선택하게 한 후 응답을 종합해 결과, ‘조합원 혜택의 강화(경영성과와 별개)’(65.3%),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62.3%), ‘비용 절감 및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43.7%) 순으로 응답함

- 즉, 조합원의 경우 경영성과와 별개로 조합원 혜택의 강화가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응답을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남
 - 만약 매출액의 증대가 자연스럽게 조합원의 혜택 강화로 이어진다면 매출액 증대를 조합의 설립목적의 효과적 수행을 위해 우선시되는 것으로 대답하였을 가능성이 존재함
 - 따라서 이러한 응답결과는 매출액 증대가 자연스레 조합원의 혜택의 증대로 이어진다는 앞선 응답결과와 일부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설문조사의 응답을 해석할 때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나아가 제1절 실증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조합법인에 대한 법인세율 인상은 조합법인의 성과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조세특례제도가 조합원들의 복리 증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그러므로 만약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에 대한 지원 목적이 더 크다면 직접적인 혜택 제공이 가능한,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 등으로 단순화할 필요성이 제기됨

3.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 조합법인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에 대한 지원 목적이 더 크다면 직접적이며 정책효과를 유도하기에 더 바람직한, 이용실적 배당에 대한 손금산입으로 단순화할 필요가 있음
- 만약 현재와 같이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조세특례제도를 운영한다면, 다른 법인과의 형평성, 투명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고려할 수 있음
 - 첫째, 조합원 외 대상 사업에서 얻는 이익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를 적용하고, 조합법인에 대한 지원 수준을 공익적 기능 수행을 위한 타 기관에 대한 지원과

비슷하게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둘째, 세무회계 분리를 통하여 현행 순이익 과세 기본에서 중소기업 등과 유사한 과세기준을 산출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성에 대하여 제고할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셋째, 만약 단기적으로 당기순이익 과세 폐지가 어렵다면 차선책으로 다음 두 가지 방향의 개선방안을 고려할 수 있음
 - 세무조정 항목들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회계적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자산 평가손실의 손금불산입, 자산 평가이익의 익금불산입 항목의 편입을 고려할 수 있음³²⁾
 - 대규모 조합법인에 대한 세율 인하 관련 지원의 축소 혹은 배제
 - 중소기업 등 다른 법인과 과세 형평성의 고려가 필요
 - 현 세율구조하에서 큰 규모의 조합법인은 작은 법인과 비교해서 세율 인하 혜택이 역진적으로 증가함
 - 또한 과세표준 20억원 이상을 초과하는 조합법인에 대한 세율 인상이 법인의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실증 증거를 찾을 수 없음

32) 세무조정의 복잡성과 조정사항의 발생빈도 등을 고려 시 이미 적용되는 8개의 조항항목 외 대부분의 조항항목은 실익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 국회예산정책처, 『2021 조세수첩』, 2021.
- 기획재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김수환, 『협동조합 해외선진사례 및 도입방안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2009.
- 김완석·심태섭, 「협동조합 관련 조세지원제도 개정방안」, 『조세연구』 제12권 제2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2.
- 새마을금고중앙회,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일몰도래 국세 감면연장 건의」, 2022.
- 성연옥·배성필, 「이탈리아 협동조합의 법 제도와 사례연구」, 『산업진흥연구』 Vol. 5 No. 3, 산업진흥원, 2020.
- 손원익·송은주·홍성열, 『협동조합 과세제도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3.
- 오윤, 「기업과세제도 개선방안」, 컨퍼런스 발표자료, 2021.
- 이환웅·송경호, 「최저임금이 기업행태에 미치는 효과 분석 및 일자리 재정정책에의 함의」, 연구보고서, 2021.
- 전병목·류덕현, 『2017 조세특례 심층평가(VI)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 전병목·권성준, 『2020 조세특례 심층평가(IV)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0.
- 중소벤처기업부, 「21년 개인투자조합 역대 최대실적 달성」, 보도자료, 2022. 2. 8.,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288&bcIdx=1031779>, 검색일자: 2022. 5. 18.
- 황순주, 「디지털 지급서비스 시장의 전면적인 개방: 기대효과, 우려요인, 제도개선 방안」,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발표 논문, 2022. 6. 10.
- 홍범교·김진영, 『2018 조세특례 심층평가(III)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기획재정부·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8.
- 국세청, 비영리법인 신고 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560&cntntsId=7986>, 검색일자: 2022. 5. 18.

Caves, R. and B. Petersen, “Cooperatives’ Tax Advantages: Growth, Retained Earnings, and Equity Rotation,” *American Journal Agricultural Economics*, 68(2), 1986.

Garcia, A.V., M. Bastida, and M.A.V. Tain, “Tax measures promoting cooperatives: a fiscal driver in the context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European Research on Management and Economics*, 26(3), 2020.

Saz-Gil, I., Bretos, I., and Díaz-Foncea, M., “Cooperatives and Social Capital: A Narrative Literature Review and Directions for Future Research,” *Sustainability*, 13, 2021.

OECD Statistics, <https://stats.oecd.org>

부 록



< 부 록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보고서**

2022. 6.

< 목 차 >

제1장. 조사개요	151
1. 조사목적	152
2. 조사 대상	152
3. 조사진행 경과	152
4. 조사내용	152
5. 응답자 특성	153
제2장. 조사결과	155
1. 조합	156
1)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156
2) 조합 제공 혜택 충분성	158
3) 늘려야 할 조합 지원	160
4) 전년 대비 조합 혜택 증감	161
5) 전년 대비 경영성과	162
6) 경영성과 좋아질 경우 수혜 혜택	164
7)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165
8) 과세특례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166
9)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	168
10) 조합이 목적 달성을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170
11)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한 노력	172
2. 조합원	175
1) 조합으로부터 받는 혜택	175
2) 조합으로부터 받는 혜택의 충분성	176
3) 늘려야 할 조합 지원	178
4) 전년 대비 조합 혜택 증감	180

5) 전년 대비 경영성과	181
6) 경영성과 좋아질 경우 수혜 혜택	182
7)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183
8) 과세특례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184
9)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	186
10) 조합의 설립 및 운영 목적 인지	188
11) 조합이 목적 달성을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189
12)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	1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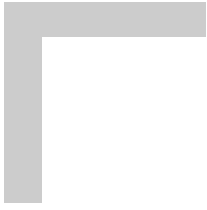
< 표목차 >

<표 1> 응답자 특성(조합)	153
<표 2> 응답자 특성(조합원)	153
<표 3>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157
<표 4> 조합 제공 혜택 충분성	159
<표 5> 늘려야 할 조합 지원	160
<표 6> 전년 대비 조합 혜택 증감	161
<표 7> 전년 대비 경영성과	163
<표 8> 경영성과 좋아질 경우 수혜 혜택	164
<표 9>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165
<표 10> 과세특례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167
<표 11>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	169
<표 12> 조합이 목적 달성을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171
<표 13>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한 노력(종합순위)	173
<표 14>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한 노력(1순위)	173
<표 15>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한 노력(2순위)	174
<표 16> 조합으로부터 받는 혜택	175
<표 17> 조합으로부터 받는 혜택의 충분성	177
<표 18> 늘려야 할 조합 지원	179
<표 19> 전년 대비 조합 혜택 증감	180
<표 20> 전년 대비 경영성과	181
<표 21> 경영성과 좋아질 경우 수혜 혜택	182
<표 22>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183
<표 23> 과세특례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185
<표 24>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	187
<표 25> 조합의 설립 운영 및 목적 인지	188
<표 26> 조합이 목적 달성을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190

<표 27>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종합순위)	192
<표 28>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1순위)	192
<표 29>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2순위)	193

< 그림목차 >

[그림 1]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156
[그림 2] 조합 제공 혜택 충분성	158
[그림 3] 늘려야 할 조합 지원	160
[그림 4] 전년 대비 조합 혜택 증감	161
[그림 5] 전년 대비 경영성과	162
[그림 6] 경영성과 좋아질 경우 수혜 혜택	164
[그림 7]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165
[그림 8] 과세특례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166
[그림 9]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	168
[그림 10] 조합이 목적 달성을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170
[그림 11]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한 노력	172
[그림 12] 조합으로부터 받는 혜택	175
[그림 13] 조합으로부터 받는 혜택의 충분성	176
[그림 14] 늘려야 할 조합 지원	178
[그림 15] 전년 대비 조합 혜택 증감	180
[그림 16] 전년 대비 경영성과	181
[그림 17] 경영성과 좋아질 경우 수혜 혜택	182
[그림 18]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183
[그림 19] 과세특례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184
[그림 20]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	186
[그림 21] 조합의 설립 및 운영 목적 인지	188
[그림 22] 조합이 목적 달성을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189
[그림 23]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	191



제1장.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조사 대상
3. 조사진행 경과
4. 조사내용
5. 응답자 특성

1. 조사목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조합법인과 조합원을 대상으로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인식을 묻고 이에 대한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함

2. 조사 대상

- 8개 조합³³⁾의 조합법인 담당자 50명, 조합원 300명

3. 조사진행 경과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음
- 2022년 6월 3일 ~ 6월 14일까지 진행되었음

4. 조사내용

분류	항목	내용
조합	조합 유형 및 조합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 조합 제공 혜택 충분성 • 늘려야 할 조합 지원 • 전년 대비 조합 혜택 증감 • 전년 대비 경영성과 • 경영성과 좋아질 경우 수혜 혜택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및 조합의 설립, 운영 목적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 과세특례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 • 조합이 목적 달성을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한 노력
조합원	조합 유형 및 조합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으로부터 받는 혜택 • 조합으로부터 받는 혜택의 충분성 • 늘려야 할 조합 지원 • 전년 대비 조합 혜택 증감 • 전년 대비 경영성과 • 경영성과 좋아질 경우 수혜 혜택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및 조합의 설립, 운영 목적에 대한 생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 과세특례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 • 조합의 설립 및 운영 목적 인지 • 조합이 목적 달성을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

33)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업연초생산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5. 응답자 특성

〈표 1〉 응답자 특성(조합)

(단위: 명, %)

		빈도	비율
전체		50	100.0
조합유형	신용협동조합	7	14.0
	새마을금고	6	12.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12.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14.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6	12.0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12.0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12.0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12.0

〈표 2〉 응답자 특성(조합원)

(단위: 명, %)

		빈도	비율
전체		300	100.0
연령대	20대	30	10.0
	30대	47	15.7
	40대	74	24.7
	50대	77	25.7
	60대	60	20.0
	70대 이상	12	4.0
성별	남성	208	69.3
	여성	92	30.7
최종 학력	중졸 이하	35	11.7
	고졸	106	35.3
	학사	150	50.0
	석사	7	2.3
	박사 이상	2	0.7
거주 지역	서울	13	4.3
	부산	4	1.3
	대구	13	4.3
	인천	22	7.3
	광주	3	1.0

〈표 2〉의 계속

(단위: 명, %)

		빈도	비율
거주 지역	대전	2	0.7
	울산	10	3.3
	세종	1	0.3
	경기	67	22.3
	강원	19	6.3
	충북	19	6.3
	충남	23	7.7
	전북	23	7.7
	전남	16	5.3
	경북	51	17.0
	경남	14	4.7
	조합유형	신용협동조합	38
새마을금고		36	12.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8	12.7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13.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39	13.0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35	11.7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13.7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	10.7



제2장. 조사결과

1. 조합
2. 조합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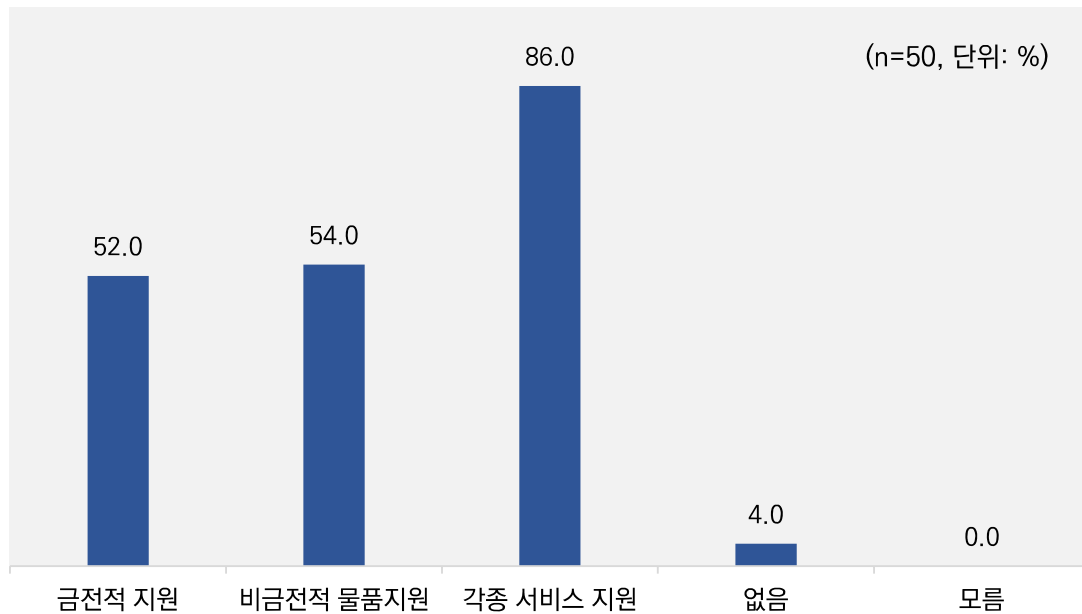
1. 조합

1)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귀 조합은 조합원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습니까? (모두 선택)

- 조합이 조합원들에게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모두 선택하도록 했을 때, ‘각종 서비스 지원’이라는 응답이 86.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비금전적 물품지원’(54.0%), ‘금전적 지원’(52.0%), ‘없음’(4.0%) 순으로 나타났다
- ‘각종 서비스지원’이라는 응답은 조합유형별로 ‘새마을금고’와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금전적 지원’이라는 응답은 조합유형별로 ‘새마을금고’와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비금전적 물품지원’이라는 응답은 조합유형별로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1]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표 3〉 조합원에게 제공하는 혜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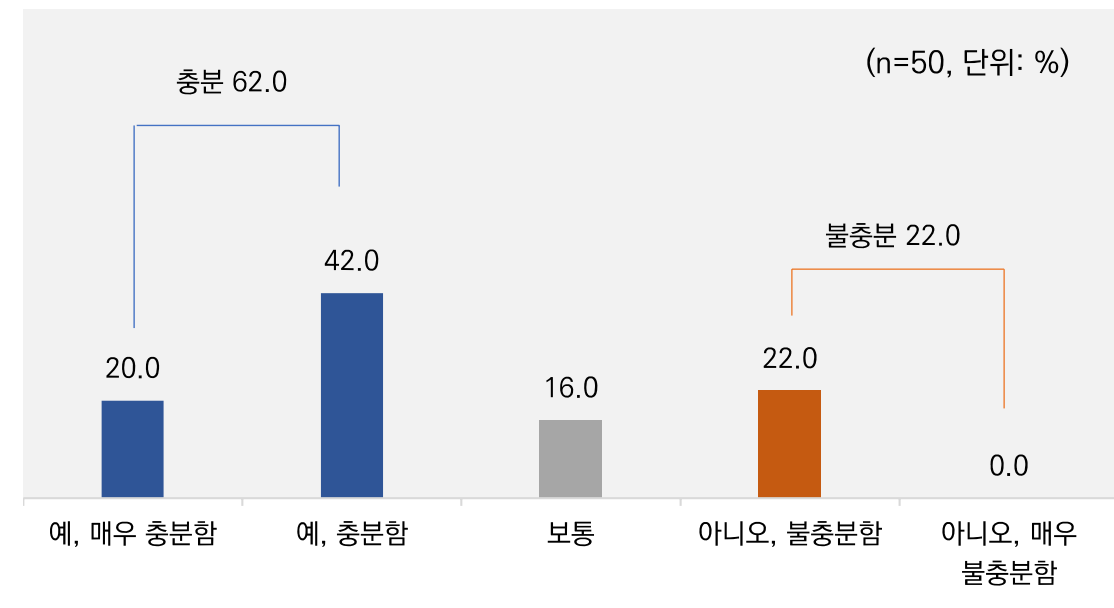
		사례 수	금전적 지원	비금전적 물품지원	각종 서비스 지원	없음	모름
전체		(50)	52.0	54.0	86.0	4.0	0.0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7)	57.1	85.7	85.7	0.0	0.0
	새마을금고	(6)	83.3	83.3	100.0	0.0	0.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83.3	50.0	66.7	16.7	0.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42.9	71.4	100.0	0.0	0.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6)	33.3	0.0	83.3	0.0	0.0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0.0	33.3	83.3	16.7	0.0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66.7	66.7	83.3	0.0	0.0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50.0	33.3	83.3	0.0	0.0

2) 조합 제공 혜택 충분성

귀 조합은 조합원에게 주는 혜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합이 조합원에게 주는 혜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충분하다'는 응답이 62.0%('매우 충분' 20.0% + '충분' 42.0%)로 '불충분하다'는 응답(22.0%, '매우 불충분' 0% + '불충분' 22.0%)보다 많았다
- 응답의 평균³⁴⁾을 구해보면 전체 평균은 3.6이었다. 조합유형별로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4.2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에서 2.8로 가장 낮았다

[그림 2] 조합 제공 혜택 충분성



34) '매우 불충분' 1점~'매우 충분' 5점으로 하여 평균을 계산함.

〈표 4〉 조합 제공 혜택 충분성

(단위: 명,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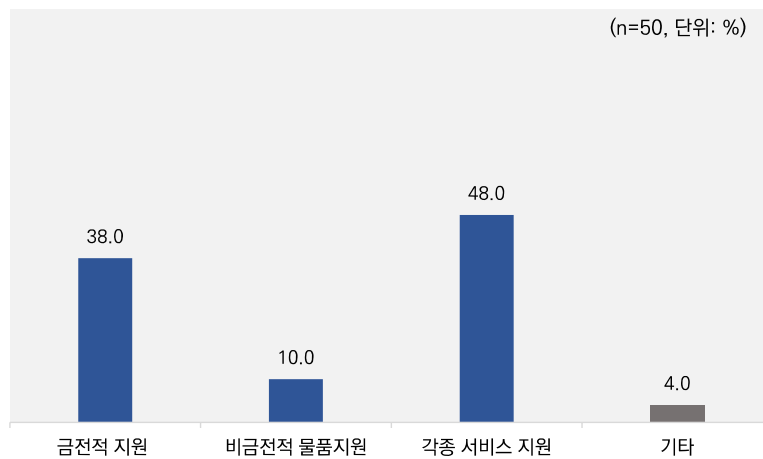
	사례 수	예, 매우 충분함	예, 충분함	보통	아니오, 불충분함	아니오, 매우 불충분함	평균	
전체	(50)	20.0	42.0	16.0	22.0	0.0	3.6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7)	42.9	42.9	0.0	14.3	0.0	4.1
	새마을금고	(6)	0.0	50.0	33.3	16.7	0.0	3.3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50.0	33.3	0.0	16.7	0.0	4.2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28.6	57.1	14.3	0.0	0.0	4.1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6)	0.0	33.3	16.7	50.0	0.0	2.8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16.7	33.3	16.7	33.3	0.0	3.3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16.7	50.0	16.7	16.7	0.0	3.7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0.0	33.3	33.3	33.3	0.0	3.0

3) 늘려야 할 조합 지원

조합이 지원을 늘릴 경우, 어떤 성격의 지원을 가장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합이 지원을 늘릴 경우, 어떤 성격의 지원을 가장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각종 서비스 지원'이라는 응답이 48.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금전적 지원'(38.0%), '비금전적 물품지원'(10.0%) 순으로 나타났다
- '각종 서비스 지원'이라는 응답은 조합유형별로 '신용협동조합'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림 3] 늘려야 할 조합 지원



<표 5> 늘려야 할 조합 지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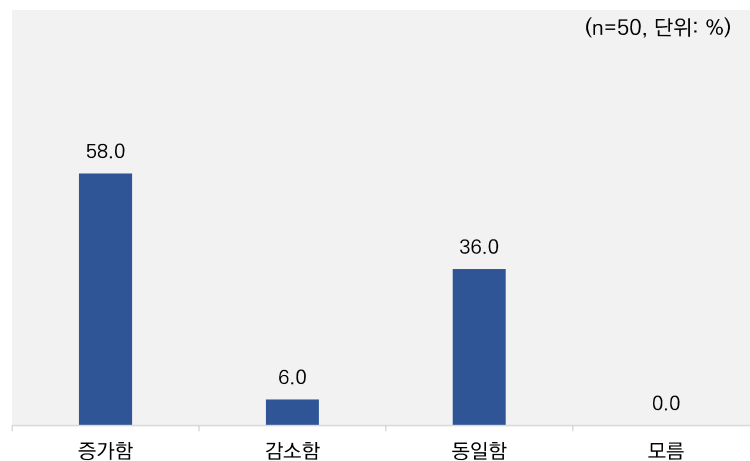
		사례 수	금전적 지원	비금전적 물품지원	각종 서비스 지원	기타
전체		(50)	38.0	10.0	48.0	4.0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7)	14.3	0.0	71.4	14.3
	새마을금고	(6)	50.0	0.0	50.0	0.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50.0	0.0	50.0	0.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28.6	28.6	42.9	0.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6)	33.3	0.0	66.7	0.0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50.0	16.7	16.7	16.7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33.3	16.7	50.0	0.0
	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50.0	16.7	33.3	0.0

4) 전년 대비 조합 혜택 증감

귀 조합이 2021년 조합원에게 준 혜택은 그 전년(2020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까?

- 조합이 2021년 조합원에게 준 혜택이 그 전년(2020년)에 비해 증가하였는지 물었을 때, '증가함'이라는 응답이 58.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동일함'(36.0%), '감소함'(6.0%) 순으로 나타났다
- '증가함'이라는 응답은 조합유형별로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감소함'이라는 응답은 조합유형별로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4] 전년 대비 조합 혜택 증감



<표 6> 전년 대비 조합 혜택 증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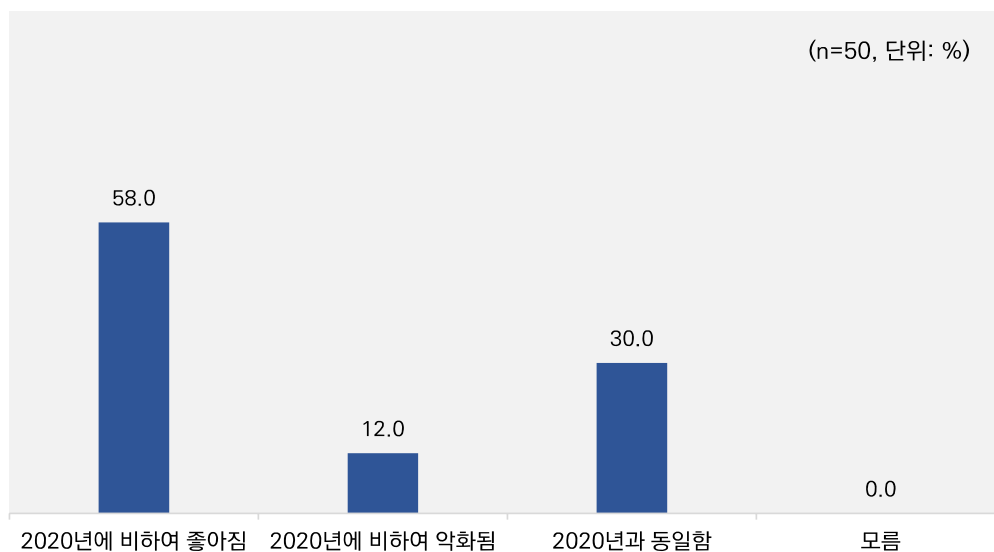
		사례 수	증가함	감소함	동일함	모름
전체		(50)	58.0	6.0	36.0	0.0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7)	57.1	0.0	42.9	0.0
	새마을금고	(6)	33.3	16.7	50.0	0.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83.3	0.0	16.7	0.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100.0	0.0	0.0	0.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6)	33.3	0.0	66.7	0.0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50.0	0.0	50.0	0.0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83.3	0.0	16.7	0.0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16.7	33.3	50.0	0.0

5) 전년 대비 경영성과

귀 조합의 2021년 경영성과는 그 전년(2020년)과 비교하여 어떠합니까?

- 조합의 2021년 경영성과가 그 전년(2020년)과 비교하여 어떤지 물었을 때, '2020년에 비하여 좋아짐'이라는 응답이 58.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020년과 동일함'(30.0%), '2020년에 비하여 악화됨'(12.0%)순으로 나타났다
- '2020년에 비하여 좋아짐'이라는 응답은 조합유형별로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과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새마을금고'와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2020년에 비하여 악화됨'이라는 응답은 조합유형별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5] 전년 대비 경영성과



〈표 7〉 전년 대비 경영성과

(단위: 명, %)

		사례 수	2020년에 비하여 좋아짐	2020년에 비하여 악화됨	2020년과 동일함	모름
전체		(50)	58.0	12.0	30.0	0.0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7)	85.7	0.0	14.3	0.0
	새마을금고	(6)	16.7	16.7	66.7	0.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66.7	0.0	33.3	0.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100.0	0.0	0.0	0.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6)	33.3	0.0	66.7	0.0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33.3	33.3	33.3	0.0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100.0	0.0	0.0	0.0
	염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16.7	50.0	33.3	0.0

6) 경영성과 좋아질 경우 수혜 혜택

귀하는 조합의 경영성과가 좋아질 경우, 조합원의 수혜 혜택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합의 경영성과가 좋아질 경우, 조합원의 수혜 혜택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예, 좋아진다고 생각함'이라는 응답이 92.0%로 가장 많았다

[그림 6] 경영성과 좋아질 경우 수혜 혜택



<표 8> 경영성과 좋아질 경우 수혜 혜택

(단위: 명, %)

		사례 수	예, 좋아진다고 생각함	아니오, 연관성 없음	아니오, 경영성과와 조합원 혜택은 반비례함	모름	기타
전체		(50)	92.0	6.0	0.0	0.0	2.0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7)	100.0	0.0	0.0	0.0	0.0
	새마을금고	(6)	100.0	0.0	0.0	0.0	0.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83.3	16.7	0.0	0.0	0.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100.0	0.0	0.0	0.0	0.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6)	66.7	33.3	0.0	0.0	0.0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83.3	0.0	0.0	0.0	16.7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100.0	0.0	0.0	0.0	0.0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100.0	0.0	0.0	0.0	0.0

7)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귀하는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예'라는 응답이 90.0% 가장 많았고, '아니오, 전혀 모름'이라는 응답은 10.0%였다

[그림 7]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표 9>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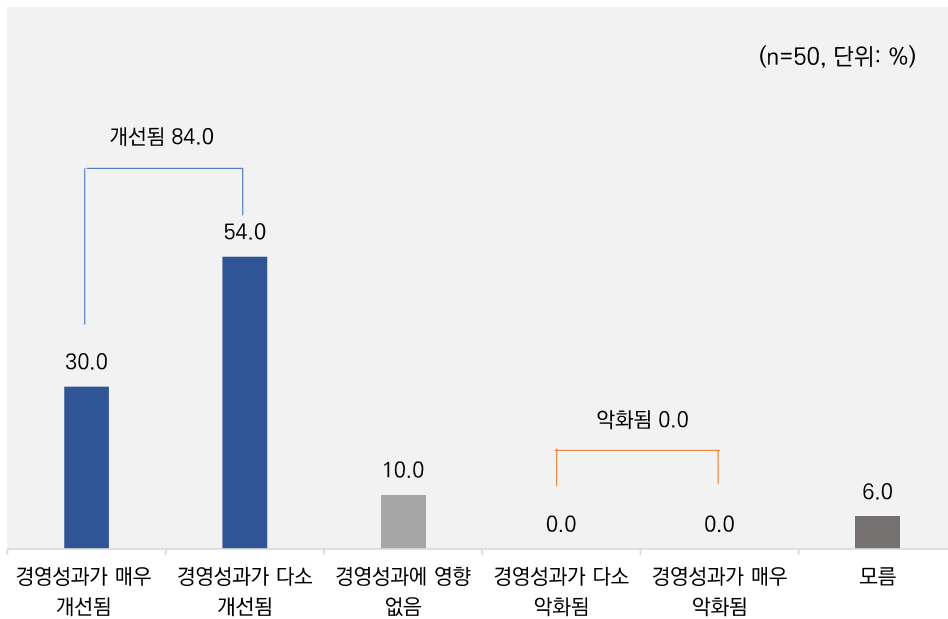
		(단위: 명, %)			
		사례 수	예	아니오, 전혀 모름	기타
전체		(50)	90.0	10.0	0.0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7)	100.0	0.0	0.0
	새마을금고	(6)	100.0	0.0	0.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83.3	16.7	0.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100.0	0.0	0.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6)	66.7	33.3	0.0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83.3	16.7	0.0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100.0	0.0	0.0
	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83.3	16.7	0.0

8) 과세특례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귀하는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물었을 때, '개선됨'이라는 응답이 84.0%('경영성과가 매우 개선됨' 30.0% + '경영성과가 다소 개선됨' 54.0%)로 가장 높았고, '경영성과에 영향 없음'이라는 응답은 10.0%로 나타났다. '악화됨'에 해당하는 응답('경영성과가 다소 악화됨' + '경영성과가 매우 악화됨')은 없었다
- 응답의 평균³⁵⁾을 구해보면 전체 평균은 4.2였다. 조합유형별로 '새마을금고'와 '수산업 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4.5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에서 3.5로 가장 낮았다

[그림 8] 과세특례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35) '경영성과가 매우 악화됨' 1점~'경영성과가 매우 개선됨' 5점으로 하여 평균을 계산함.

〈표 10〉 과세특례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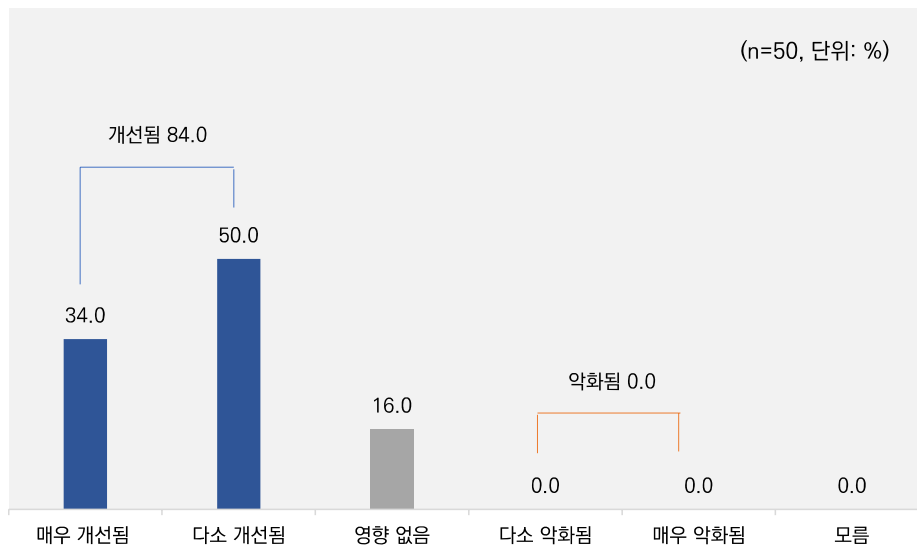
		사례 수	경영성과가 매우 개선됨	경영성과가 다소 개선됨	경영성과에 영향 없음	경영성과가 다소 악화됨	경영성과가 매우 악화됨	모름	평균
전체		(50)	30.0	54.0	10.0	0.0	0.0	6.0	4.2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7)	28.6	57.1	0.0	0.0	0.0	14.3	4.3
	새마을금고	(6)	50.0	50.0	0.0	0.0	0.0	0.0	4.5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33.3	33.3	33.3	0.0	0.0	0.0	4.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42.9	42.9	0.0	0.0	0.0	14.3	4.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6)	0.0	50.0	50.0	0.0	0.0	0.0	3.5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16.7	66.7	0.0	0.0	0.0	16.7	4.2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50.0	50.0	0.0	0.0	0.0	0.0	4.5
	엽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16.7	83.3	0.0	0.0	0.0	0.0	4.2

9)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

귀하는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 수혜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 수혜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개선됨'이라는 응답이 84.0%('매우 개선됨' 34.0% + '다소 개선됨' 50.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영향 없음'(16.0%)으로 나타났다. '악화됨'이라는 응답('다소 악화됨' + '매우 악화됨')은 없었다
- 응답의 평균³⁶⁾을 구해보면 전체 평균이 4.2였다. 조합유형별로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4.7로 가장 높았고,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에서 3.8로 가장 낮았다

[그림 9]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



36) '매우 악화됨' 1점~'매우 개선됨' 5점으로 하여 평균을 계산함

〈표 11〉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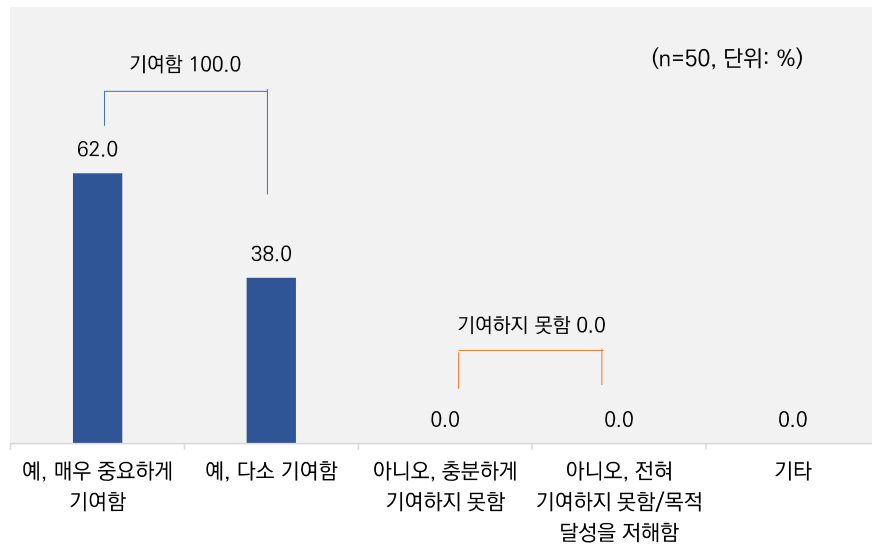
		사례 수	매우 개선됨	다소 개선됨	영향 없음	다소 악화됨	매우 악화됨	모름	평균
전체		(50)	34.0	50.0	16.0	0.0	0.0	0.0	4.2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7)	28.6	71.4	0.0	0.0	0.0	0.0	4.3
	새마을금고	(6)	33.3	16.7	50.0	0.0	0.0	0.0	3.8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50.0	33.3	16.7	0.0	0.0	0.0	4.3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42.9	42.9	14.3	0.0	0.0	0.0	4.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6)	0.0	83.3	16.7	0.0	0.0	0.0	3.8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16.7	66.7	16.7	0.0	0.0	0.0	4.0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66.7	33.3	0.0	0.0	0.0	0.0	4.7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33.3	50.0	16.7	0.0	0.0	0.0	4.2

10) 조합이 목적 달성을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귀하는 조합이 설립 및 운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합이 설립 및 운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기여함'이라는 응답이 100.0%(‘예, 매우 중요하게 기여함’ 62.0% + ‘예, 다소 기여함’ 38.0%)로 가장 많았다. ‘기여하지 못함’이라는 응답(‘아니오, 충분하게 기여하지 못함’ + ‘아니오, 전혀 기여하지 못함/목적 달성을 저해함’)은 없었다
- 응답의 평균³⁷⁾을 구해보면 전체 평균이 3.6이었다. 조합유형별로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3.9로 가장 높았고, ‘새마을금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에서 3.3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10] 조합이 목적 달성을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37) ‘아니오, 전혀 기여하지 못함/목적 달성을 저해함’ 1점~‘예, 매우 중요하게 기여함’ 5점으로 하여 평균을 계산함

〈표 12〉 조합이 목적 달성을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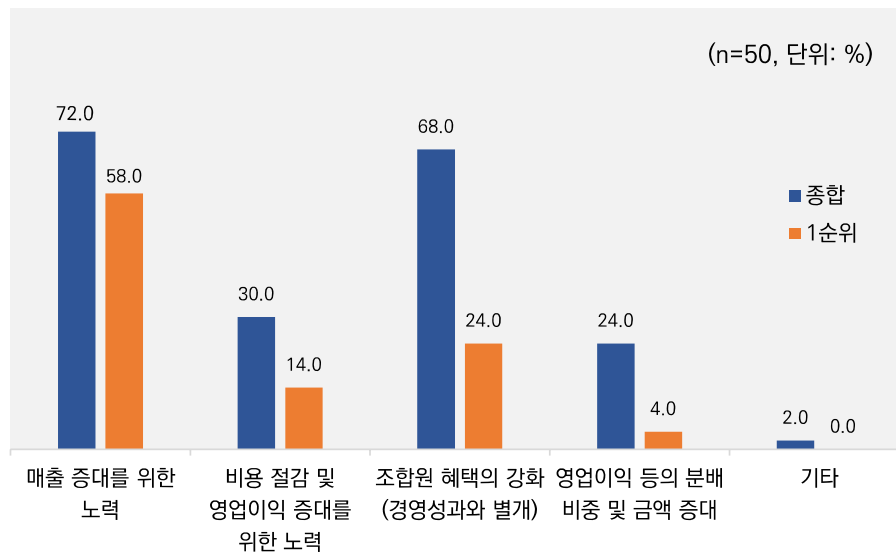
		사례 수	예, 매우 중요하게 기여함	예, 다소 기여함	아니오, 충분하게 기여하지 못함	아니오, 전혀 기여하지 못함/ 목적 달성을 저해함	기타	평균
전체		(50)	62.0	38.0	0.0	0.0	0.0	3.6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7)	57.1	42.9	0.0	0.0	0.0	3.6
	새마을금고	(6)	33.3	66.7	0.0	0.0	0.0	3.3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83.3	16.7	0.0	0.0	0.0	3.8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85.7	14.3	0.0	0.0	0.0	3.9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6)	33.3	66.7	0.0	0.0	0.0	3.3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50.0	50.0	0.0	0.0	0.0	3.5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83.3	16.7	0.0	0.0	0.0	3.8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66.7	33.3	0.0	0.0	0.0	3.7

11)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한 노력

다음 중 조합이 설립 및 운영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조합 설립 및 운영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1, 2순위로 선택하게 한 후 응답을 종합해 보면,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이라는 응답이 72.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조합원 혜택의 강화(경영성과와 별개)'(68.0%), '비용 절감 및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30.0%), '영업이익 등의 분배 비중 및 금액 증대'(24.0%) 순으로 나타났다
- 1순위 응답만 살펴보면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이라는 응답이 58.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조합원 혜택의 강화(경영성과와 별개)'(24.0%), '비용 절감 및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14.0%), '영업이익 등의 분배 비중 및 금액 증대'(4.0%) 순으로 종합 순위와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림 11]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한 노력



〈표 13〉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한 노력(종합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	비용 절감 및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	조합원 혜택의 강화 (경영성과와 별개)	영업이익 등의 분배비중 및 금액 증대	기타	
전체	(50)	72.0	30.0	68.0	24.0	2.0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7)	71.4	28.6	42.9	42.9	0.0
	새마을금고	(6)	66.7	50.0	50.0	33.3	0.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66.7	16.7	66.7	50.0	0.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71.4	57.1	57.1	14.3	0.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6)	100.0	0.0	100.0	0.0	0.0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66.7	33.3	66.7	0.0	16.7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66.7	16.7	83.3	33.3	0.0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66.7	33.3	83.3	16.7	0.0

〈표 14〉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한 노력(1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	비용 절감 및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	조합원 혜택의 강화 (경영성과와 별개)	영업이익 등의 분배비중 및 금액 증대	기타	
전체	(50)	58.0	14.0	24.0	4.0	0.0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7)	71.4	14.3	14.3	0.0	0.0
	새마을금고	(6)	66.7	16.7	16.7	0.0	0.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50.0	16.7	16.7	16.7	0.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42.9	28.6	28.6	0.0	0.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6)	100.0	0.0	0.0	0.0	0.0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6)	50.0	16.7	33.3	0.0	0.0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50.0	16.7	16.7	16.7	0.0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33.3	0.0	66.7	0.0	0.0

〈표 15〉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한 노력(2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	비용 절감 및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	조합원 혜택의 강화 (경영성과와 별개)	영업이익 등의 분배비중 및 금액 증대	기타	
전체	(48)	14.6	16.7	45.8	20.8	2.1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6)	0.0	16.7	33.3	50.0	0.0
	새마을금고	(6)	0.0	33.3	33.3	33.3	0.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16.7	0.0	50.0	33.3	0.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7)	28.6	28.6	28.6	14.3	0.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6)	0.0	0.0	100.0	0.0	0.0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5)	20.0	20.0	40.0	0.0	20.0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6)	16.7	0.0	66.7	16.7	0.0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6)	33.3	33.3	16.7	16.7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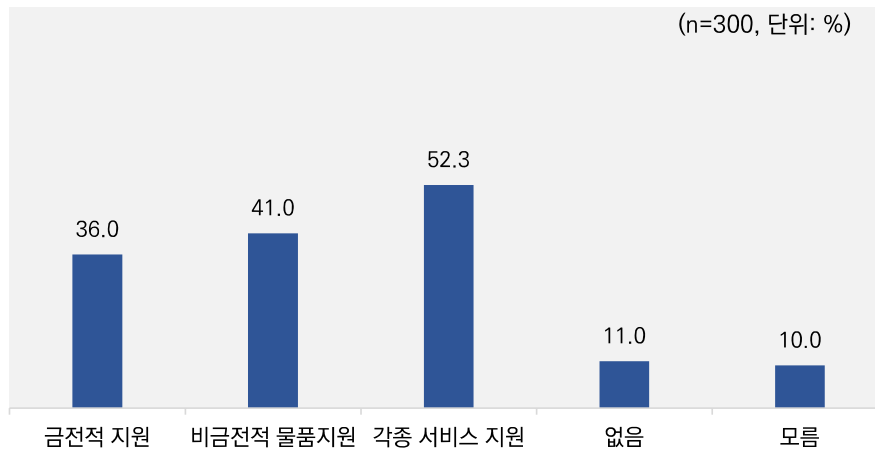
2. 조합원

1) 조합으로부터 받는 혜택

귀하는 귀하가 속한 조합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계십니까? (모두 선택)

- 조합원들이 속한 조합으로부터 어떤 혜택을 받고 있는지 모두 선택하라고 했을 때, '각종 서비스 지원'이라는 응답이 52.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비금전적 물품지원'(41.0%), '금전적 지원'(36.0%)순으로 나타났다
- '각종 서비스 지원'이라는 응답은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새마을금고'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림 12] 조합으로부터 받는 혜택



<표 16> 조합으로부터 받는 혜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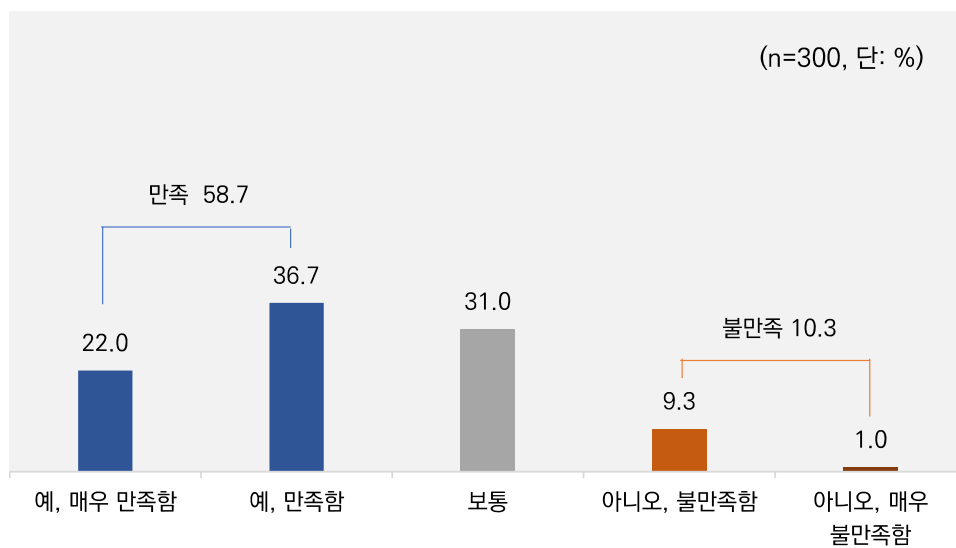
		사례 수	금전적 지원	비금전적 물품지원	각종 서비스 지원	없음	모름
전체		(300)	36.0	41.0	52.3	11.0	10.0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38)	36.8	42.1	50.0	5.3	13.2
	새마을금고	(36)	25.0	22.2	27.8	22.2	19.4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8)	44.7	36.8	68.4	21.1	0.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46.3	31.7	34.1	2.4	26.8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39)	15.4	2.6	56.4	25.6	5.1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35)	8.6	57.1	80.0	5.7	5.7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58.5	48.8	53.7	4.9	7.3
	연원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	50.0	96.9	50.0	0.0	0.0

2) 조합으로부터 받는 혜택의 충분성

귀하는 조합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합으로부터 받는 혜택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만족'이라는 응답 58.7% ('예, 매우 만족함' 22.0% + '예, 만족함' 36.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보통'(31.0%)로 나타났다. '불만족'이라는 응답 10.3%('아니오, 불만족함' 9.3% + '아니오, 매우 불만족함' 1.0%)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 응답의 평균³⁸⁾을 구해보면 전체 평균은 3.7이었다. 조합유형별로 '신용협동조합'에서 4.1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에서 2.9로 가장 낮았다.

[그림 13] 조합으로부터 받는 혜택의 충분성



38) '아니오, 매우 불만족함' 1점~'예, 매우 만족함' 5점으로 하여 평균을 계산함

〈표 17〉 조합으로부터 받는 혜택의 충분성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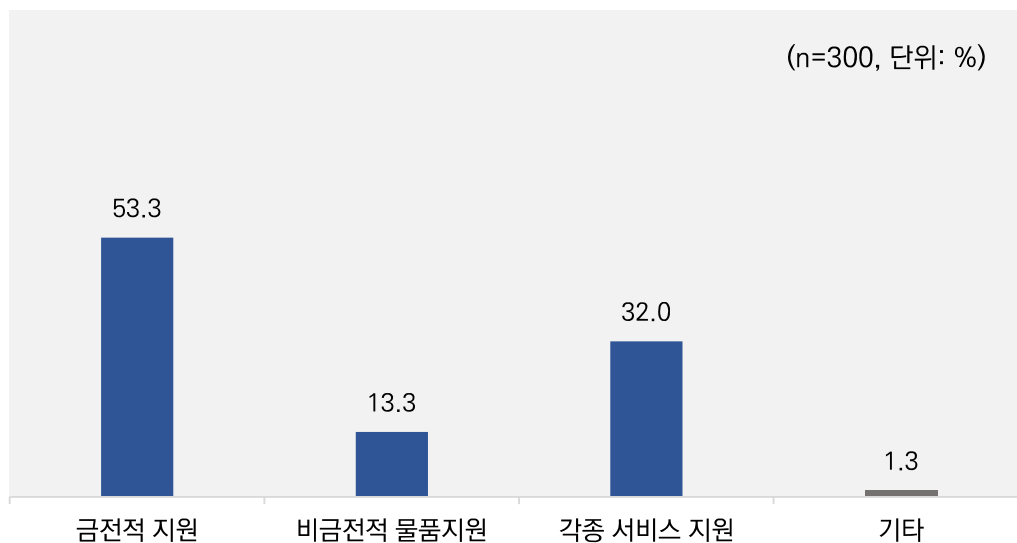
		사례 수	예, 매우 충분함	예, 충분함	보통	아니오, 불충분함	아니오, 매우 불충분함	평균
전체		(300)	22.0	36.7	31.0	9.3	1.0	3.7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38)	42.1	36.8	15.8	2.6	2.6	4.1
	새마을금고	(36)	19.4	19.4	52.8	8.3	0.0	3.5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8)	10.5	50.0	34.2	5.3	0.0	3.7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36.6	31.7	26.8	4.9	0.0	4.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39)	2.6	28.2	33.3	30.8	5.1	2.9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35)	14.3	40.0	34.3	11.4	0.0	3.6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26.8	46.3	24.4	2.4	0.0	4.0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	21.9	40.6	28.1	9.4	0.0	3.8

3) 늘려야 할 조합 지원

귀하는 조합이 지원을 늘릴 경우, 어떤 성격의 지원을 가장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합이 지원을 늘릴 경우, 어떤 성격의 지원을 가장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금전적 지원'이라는 응답이 53.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각종 서비스 지원'(32.0%), '비금전적 물품지원'(13.3%) 순으로 나타났다
- '금전적 지원'이라는 응답은 조합유형별로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각종 서비스 지원'이라는 응답은 조합유형별로 '새마을금고'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림 14] 늘려야 할 조합 지원



〈표 18〉 늘려야 할 조합 지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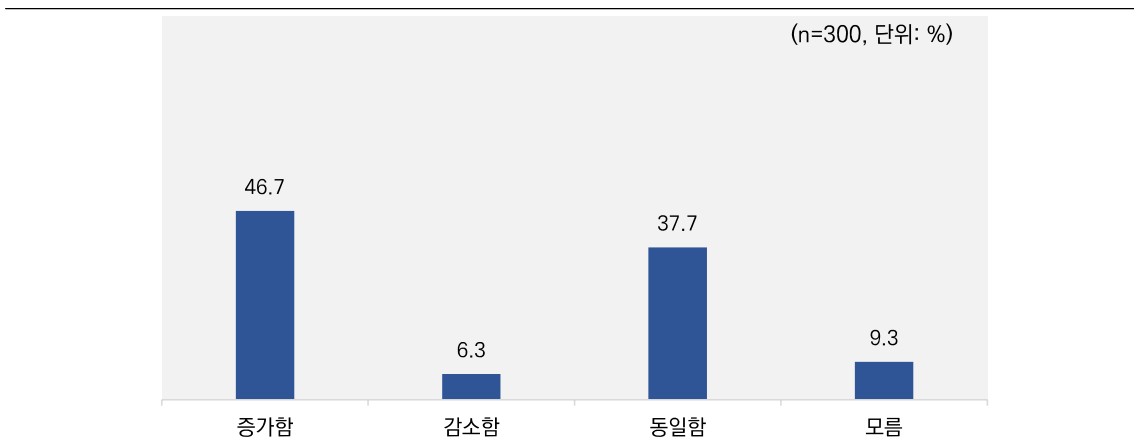
		사례 수	금전적 지원	비금전적 물품지원	각종 서비스 지원	기타
전체		(300)	53.3	13.3	32.0	1.3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38)	42.1	15.8	36.8	5.3
	새마을금고	(36)	47.2	8.3	44.4	0.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8)	50.0	21.1	28.9	0.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53.7	12.2	31.7	2.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39)	51.3	7.7	41.0	0.0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35)	62.9	11.4	22.9	2.9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41.5	17.1	41.5	0.0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	84.4	12.5	3.1	0.0

4) 전년 대비 조합 혜택 증감

귀하가 2021년 조합에서 받은 혜택은 그 전년(2020년)에 비하여 증가하였습니까?

- 2021년 조합에서 받은 혜택이 그 전년(2020년)에 비하여 증가하였는지 물었을 때, '증가함'이라는 응답이 46.7%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동일함'(37.7%)으로 나타났다
- '증가함'이라는 응답은 조합유형별로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감소함'이라는 응답은 조합유형별로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15] 전년 대비 조합 혜택 증감



<표 19> 전년 대비 조합 혜택 증감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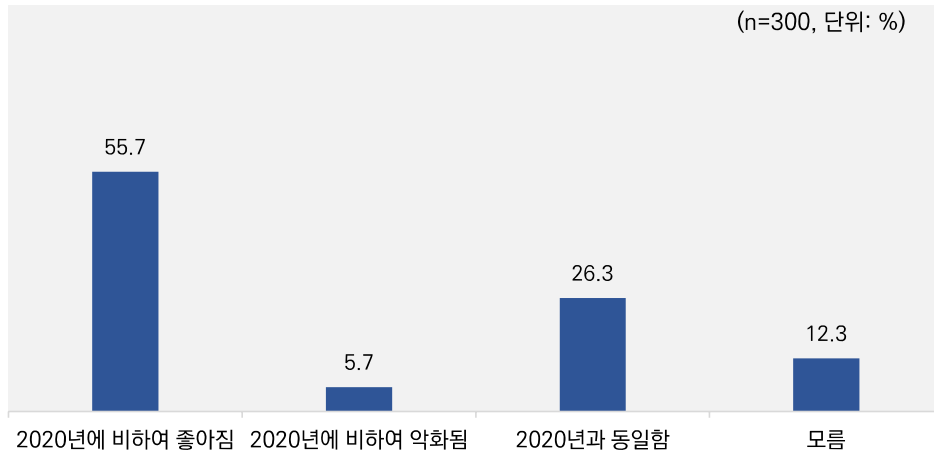
		사례 수	증가함	감소함	동일함	모름
전체		(300)	46.7	6.3	37.7	9.3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38)	60.5	2.6	21.1	15.8
	새마을금고	(36)	36.1	8.3	30.6	25.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8)	42.1	0.0	55.3	2.6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53.7	7.3	19.5	19.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39)	15.4	2.6	79.5	2.6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35)	37.1	20.0	40.0	2.9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85.4	0.0	9.8	4.9
	연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	37.5	12.5	50.0	0.0

5) 전년 대비 경영성과

귀하가 속한 조합의 2021년 경영성과가 그 전년(2020년)과 비교하여 어떤지 알고 계십니까?

- 조합원이 속한 조합의 2021년 경영성과가 그 전년(2020년)과 비교하여 어떤지 알고 있냐고 물었을 때, '2020년에 비하여 좋아짐'이라는 응답이 55.7%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2020년과 동일함'(26.3%)으로 나타났다
- '2020년에 비하여 좋아짐'이라는 응답은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림 16] 전년 대비 경영성과



<표 20> 전년 대비 경영성과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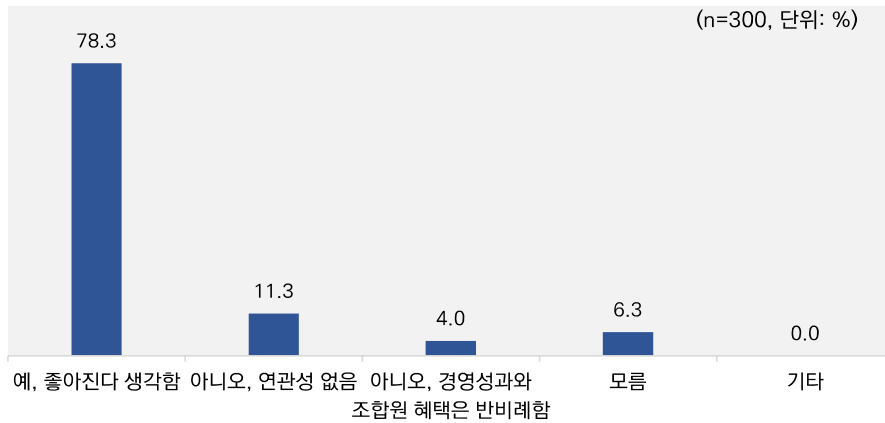
		사례 수	2020년에 비하여 좋아짐	2020년에 비하여 악화됨	2020년과 동일함	모름
전체		(300)	55.7	5.7	26.3	12.3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38)	76.3	0.0	5.3	18.4
	새마을금고	(36)	58.3	5.6	2.8	33.3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8)	50.0	2.6	44.7	2.6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63.4	22.0	2.4	12.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39)	30.8	10.3	56.4	2.6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35)	37.1	2.9	45.7	14.3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85.4	0.0	4.9	9.8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	37.5	0.0	56.3	6.3

6) 경영성과 좋아질 경우 수혜 혜택

귀하는 조합의 경영성과가 좋아질 경우, 조합원의 수혜 혜택이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합의 경영성과가 좋아질 경우 조합원의 수혜 혜택이 좋아진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예, 좋아진다고 생각함'이라는 응답이 78.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아니오, 연관성 없음'(11.3%), '모름'(6.3%) 순으로 나타났다
- '예 좋아진다고 생각함'이라는 응답은 조합유형별로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아니오, 연관성 없음'이라는 응답은 조합유형별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과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림 17] 경영성과 좋아질 경우 수혜 혜택



<표 21> 경영성과 좋아질 경우 수혜 혜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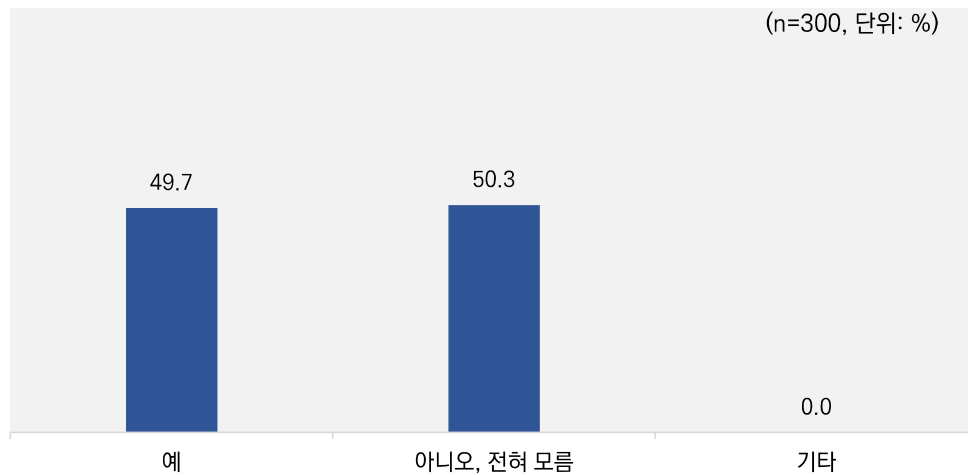
		사례 수	예, 좋아진다고 생각함	아니오, 연관성 없음	아니오, 경영성과와 조합원 혜택은 반비례함	모름	기타
전체		(300)	78.3	11.3	4.0	6.3	0.0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38)	86.8	2.6	2.6	7.9	0.0
	새마을금고	(36)	77.8	2.8	0.0	19.4	0.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8)	60.5	26.3	10.5	2.6	0.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78.0	7.3	0.0	14.6	0.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39)	66.7	20.5	12.8	0.0	0.0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35)	82.9	5.7	5.7	5.7	0.0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97.6	2.4	0.0	0.0	0.0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	75.0	25.0	0.0	0.0	0.0

7)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귀하는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에 대해 대략적으로 알고 있는지 물었을 때, '아니오, 전혀 모름'이라는 응답이 50.3%, '예'라는 응답이 49.7%로 나타났다
- '아니오, 전혀 모름'이라는 응답은 조합유형별로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상대적으로 많았고, '신용협동조합'에서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림 18]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표 22>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 인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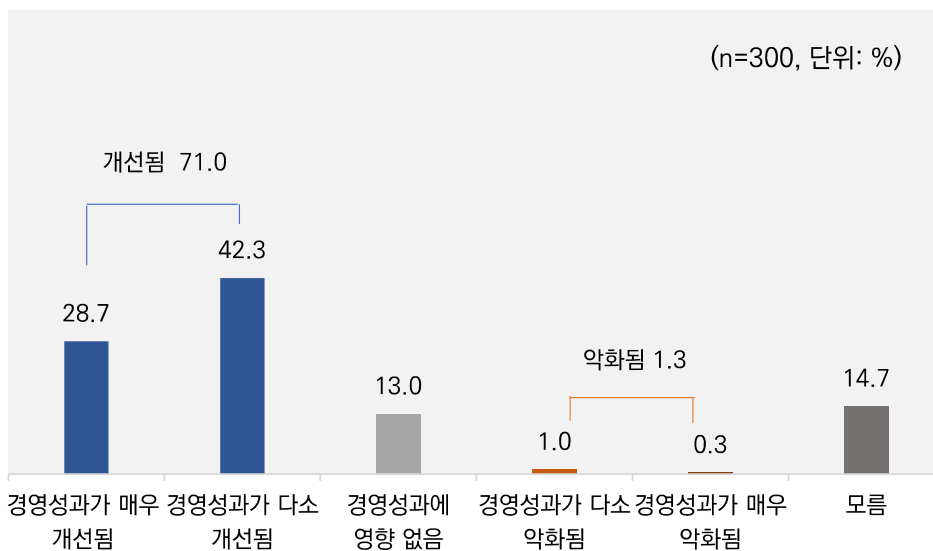
		사례 수	예	아니오, 전혀 모름	기타
전체		(300)	49.7	50.3	0.0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38)	63.2	36.8	0.0
	새마을금고	(36)	50.0	50.0	0.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8)	34.2	65.8	0.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48.8	51.2	0.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39)	48.7	51.3	0.0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35)	60.0	40.0	0.0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58.5	41.5	0.0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	31.3	68.8	0.0

8) 과세특례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귀하는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의 경영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개선됨’이라는 응답이 71.0%(‘경영성과가 매우 개선됨’ 28.7% + ‘경영성과가 다소 개선됨’ 42.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경영성과에 영향 없음’(13.0%)으로 나타났다. ‘악화됨’이라는 응답은 1.3%(‘경영성과가 다소 악화됨’ 1.0% + ‘경영성과가 매우 악화됨’ 0.3%)로 매우 적었다
- 응답의 평균³⁹⁾을 구해보면 전체 평균은 4.1이었다. 조합유형별로 ‘신용협동조합’에서 4.6으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에서 3.7로 가장 낮았다

[그림 19] 과세특례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39) ‘경영성과가 매우 악화됨’ 1점~‘경영성과가 매우 개선됨’ 5점으로 하여 평균을 계산함.

〈표 23〉 과세특례제도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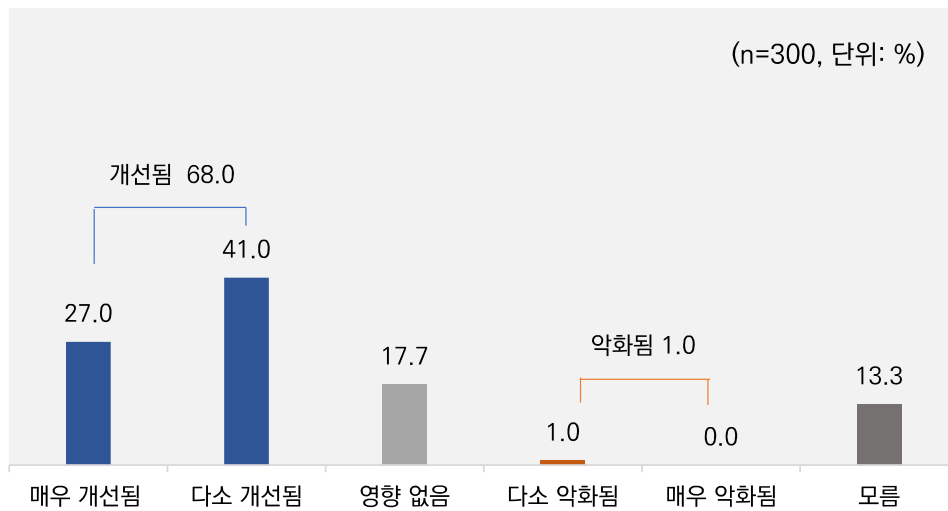
		사례 수	경영성과가 매우 개선됨	경영성과가 다소 개선됨	경영성과에 영향 없음	경영성과가 다소 악화됨	경영성과가 매우 악화됨	모름	평균
전체		(300)	28.7	42.3	13.0	1.0	0.3	14.7	4.1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38)	44.7	28.9	2.6	0.0	0.0	23.7	4.6
	새마을금고	(36)	27.8	50.0	0.0	2.8	0.0	19.4	4.3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8)	15.8	44.7	36.8	0.0	0.0	2.6	3.8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43.9	22.0	4.9	2.4	2.4	24.4	4.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39)	5.1	61.5	33.3	0.0	0.0	0.0	3.7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35)	17.1	40.0	22.9	0.0	0.0	20.0	3.9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48.8	36.6	2.4	2.4	0.0	9.8	4.5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	21.9	59.4	0.0	0.0	0.0	18.8	4.3

9)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

귀하는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 수혜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 수혜 혜택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개선됨'이라는 응답이 68.0%('매우 개선됨' 27.0% + '다소 개선됨' 41.0%)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영향 없음'(17.7%), '모름'(13.3%)로 나타났고, '악화됨'이라는 응답은 1.0%('다소 악화됨' 1.0% + '매우 악화됨')로 매우 적었다
- 응답의 평균⁴⁰⁾을 구해보면 전체 평균은 4.1이었다. 조합유형별로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4.5로 가장 높았고,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에서 3.6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20]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



40) '매우 악화됨' 1점~'매우 개선됨' 5점으로 하여 평균을 계산함.

〈표 24〉 과세특례제도가 조합원 수혜 혜택에 미치는 영향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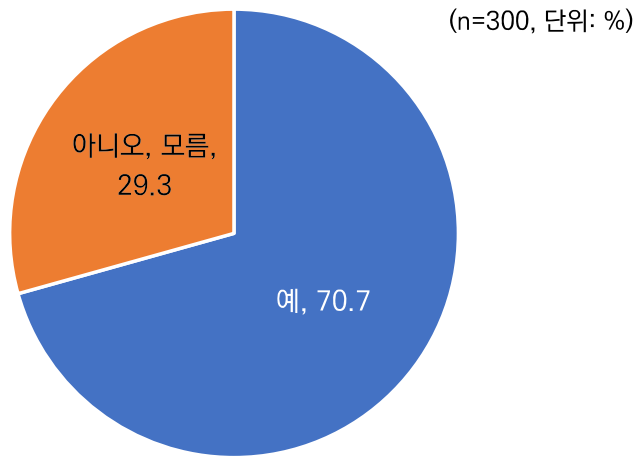
		사례 수	매우 개선됨	다소 개선됨	영향 없음	다소 악화됨	매우 악화됨	모름	평균
전체		(300)	27.0	41.0	17.7	1.0	0.0	13.3	4.1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38)	39.5	34.2	2.6	0.0	0.0	23.7	4.5
	새마을금고	(36)	27.8	44.4	8.3	2.8	0.0	16.7	4.2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8)	18.4	44.7	36.8	0.0	0.0	0.0	3.8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36.6	26.8	4.9	0.0	0.0	31.7	4.5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39)	5.1	53.8	41.0	0.0	0.0	0.0	3.6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35)	17.1	42.9	28.6	0.0	0.0	11.4	3.9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51.2	31.7	2.4	2.4	0.0	12.2	4.5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	15.6	53.1	18.8	3.1	0.0	9.4	3.9

10) 조합의 설립 및 운영 목적 인지

귀하는 귀하가 속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 조합원이 속한 조합의 설립 및 운영 목적이 무엇인지 알고 있냐고 물었을 때, '예'라는 응답이 70.7%, '아니오, 모름'이라는 응답이 29.3%로 나타났다
- '예'라는 응답은 조합유형별로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에서 100.0%로 나타났다

[그림 21] 조합의 설립 및 운영 목적 인지



<표 25> 조합의 설립 운영 및 목적 인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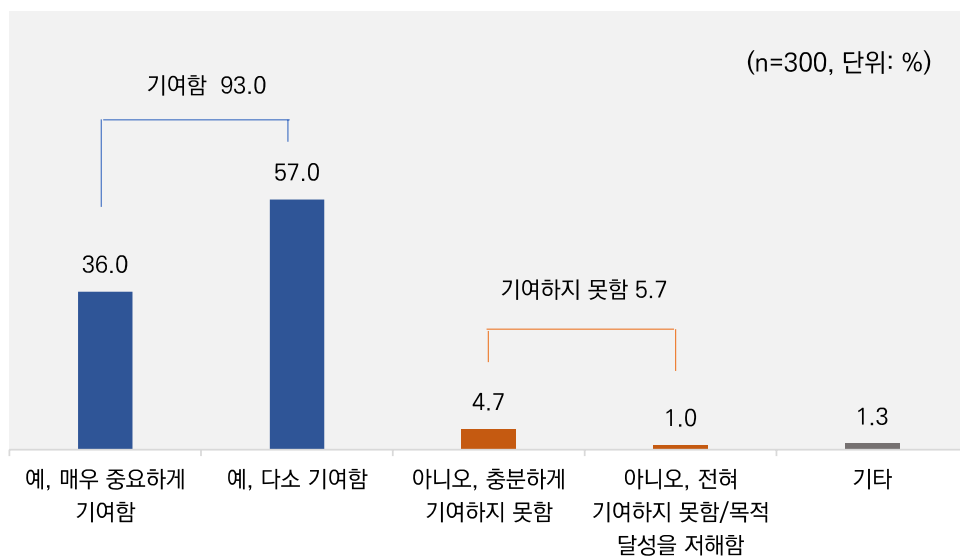
		사례 수	예	아니오, 모름
전체		(300)	70.7	29.3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38)	52.6	47.4
	새마을금고	(36)	63.9	36.1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8)	60.5	39.5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53.7	46.3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39)	71.8	28.2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35)	91.4	8.6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78.0	22.0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	100.0	0.0

11) 조합이 목적 달성을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귀하는 조합이 설립 및 운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조합이 설립 및 운영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을 때, '기여함'이라는 응답이 93.0%('예, 매우 중요하게 기여함' 36.0% + '예, 다소 기여함' 57.0%)로 가장 많았다. '기여하지 못함'은 5.7%('아니오, 충분하게 기여하지 못함' 4.7% + '아니오, 전혀 기여하지 못함/목적 달성을 저해함' 1.0%)로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 응답의 평균⁴¹⁾을 살펴보면 전체 평균은 3.3이었다. 조합유형별로 '신용협동조합'에서 3.6으로 가장 높았고,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3.0으로 가장 낮았다

[그림 22] 조합이 목적 달성을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41) '아니오, 전혀 기여하지 못함/목적 달성을 저해함' 1점~'예, 매우 중요하게 기여함' 5점으로 하여 평균을 계산함.

〈표 26〉 조합이 목적 달성을 위한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하는지 여부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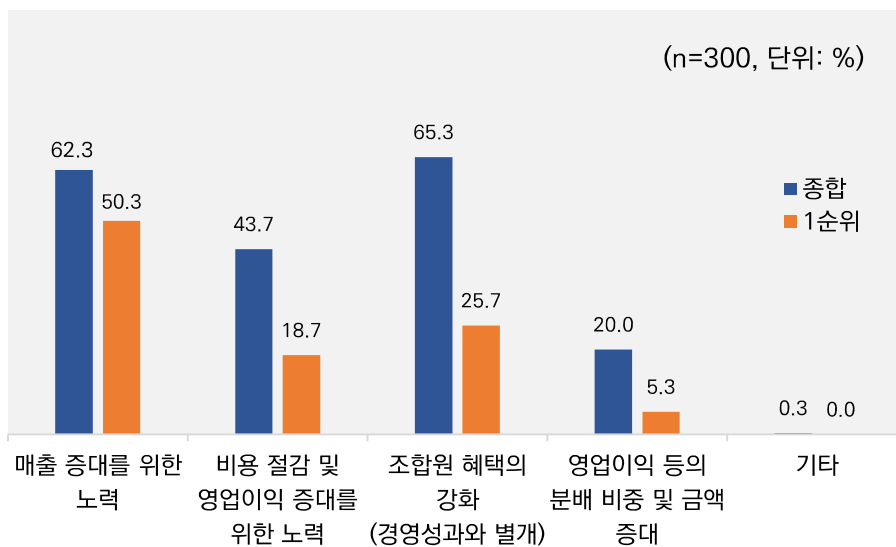
		사례 수	예, 매우 중요하게 기여함	예, 다소 기여함	아니오, 충분하게 기여하지 못함	아니오, 전혀 기여하지 못함/목적 달성을 저해함	기타	평균
전체		(300)	36.0	57.0	4.7	1.0	1.3	3.3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38)	57.9	34.2	0.0	2.6	5.3	3.6
	새마을금고	(36)	25.0	61.1	13.9	0.0	0.0	3.1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8)	13.2	76.3	10.5	0.0	0.0	3.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48.8	36.6	4.9	4.9	4.9	3.4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39)	12.8	82.1	5.1	0.0	0.0	3.1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35)	34.3	65.7	0.0	0.0	0.0	3.3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48.8	48.8	2.4	0.0	0.0	3.5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	46.9	53.1	0.0	0.0	0.0	3.5

12)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

다음 중 조합이 설립 및 운영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조합이 설립 및 운영 목적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 무엇인지 1, 2순위로 선택하게 한 후 응답을 종합해 보면, ‘조합원 혜택의 강화(경영성과와 별개)’라는 응답이 65.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62.3%), ‘비용 절감 및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43.7%) 순으로 나타났다
- 1순위 응답만 살펴보면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이라는 응답이 50.3%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는 ‘조합원 혜택의 강화(경영성과와 별개)’(25.7%), ‘비용 절감 및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18.7%)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



〈표 27〉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종합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	비용 절감 및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	조합원 혜택의 강화 (경영성과와 별개)	영업이익 등의 분배비중 및 금액 증대	기타	
전체	(300)	62.3	43.7	65.3	20.0	0.3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38)	36.8	47.4	65.8	31.6	2.6
	새마을금고	(36)	61.1	58.3	33.3	30.6	0.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8)	78.9	23.7	65.8	18.4	0.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70.7	48.8	48.8	22.0	0.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39)	82.1	25.6	82.1	10.3	0.0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35)	57.1	45.7	88.6	8.6	0.0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63.4	46.3	58.5	22.0	0.0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	43.8	56.3	84.4	15.6	0.0

〈표 28〉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1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	비용 절감 및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	조합원 혜택의 강화 (경영성과와 별개)	영업이익 등의 분배비중 및 금액 증대	기타	
전체	(300)	50.3	18.7	25.7	5.3	0.0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38)	21.1	31.6	34.2	13.2	0.0
	새마을금고	(36)	52.8	13.9	22.2	11.1	0.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8)	68.4	13.2	18.4	0.0	0.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61.0	12.2	22.0	4.9	0.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39)	64.1	10.3	20.5	5.1	0.0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35)	48.6	25.7	25.7	0.0	0.0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41)	51.2	14.6	26.8	7.3	0.0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	31.3	31.3	37.5	0.0	0.0

〈표 29〉 조합의 설립 목적 효과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것(2순위)

(단위: 명, %)

	사례 수	매출 증대를 위한 노력	비용 절감 및 영업이익 증대를 위한 노력	조합원 혜택의 강화 (경영성과와 별개)	영업이익 등의 분배비중 및 금액 증대	기타	
전체	(275)	13.1	27.3	43.3	16.0	0.4	
조합 유형	신용협동조합	(32)	18.8	18.8	37.5	21.9	3.1
	새마을금고	(30)	10.0	53.3	13.3	23.3	0.0
	농협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3)	12.1	12.1	54.5	21.2	0.0
	수산업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7)	10.8	40.5	29.7	18.9	0.0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협동조합	(39)	17.9	15.4	61.5	5.1	0.0
	사업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35)	8.6	20.0	62.9	8.6	0.0
	산림조합 및 조합공동사업법인	(37)	13.5	35.1	35.1	16.2	0.0
	업연초생산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32)	12.5	25.0	46.9	15.6	0.0